第2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 '93. 3. 19～3. 23 ）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　會議錄

（’93. 3. 19.）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3

2.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3

3.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149

4. 부 록

가) 의사일정(안).....189

나)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93

다)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197

라)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203

마)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207

바)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211

사)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안.....275

아)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281

자)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311

차)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393

카)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297

5. 별 책 부 록

o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o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제 21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개 회 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3년 3월 19일 (금요일) 11시 00분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5. 개회사(의장 김영세)
6. 인사말씀(교육감 정인영)
7. 폐 식

(11시 00분 개식)

● 의사과장 이영규

지금부터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 주악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

·바 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전주에 따라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 념

(녹음 주악)

·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존경하는 교육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본도 교육위원회 제21회 임시회가 개최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육감의 금년도 교육계획과 각종 교육시책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감께서 애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부의 왜곡된 교육의 본질을 바로잡고 교육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며 기필코 충북교육의 선진화를 이룩함으로써 신한국 창조의 선두에 서고 교육의 중차대한 국가적 소임에 다시 한번 굳은 결의와 다짐으로 부여된 임무의 수행에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삶에 대한 가치와 의의를 바르게 부여하고, 그 질을 향상시켜 주며, 전인교육을 통하여 인간성의 회복을 시도하고 인간의 생명과 생명, 인격과 인격 그리고 정신과 정신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성을 창조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육도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함으로써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새 한국인, 새 충북인을 육성하자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사설학원설치조례의개정안 등 본도 교육개선에 따른 몇 개의 교육조례개정을 위한 의안이 상정될 것입니다.

특히 집행청에 대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각급 학교도 새학년을 맞는 중요 시점인만큼 다각도로 심도있게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한 밀도있는 심의와 의결, 그리고 교육정책에 대한 질

문은 교육자치의 정착과 교육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본도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큰 활력소가 되어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육청 관계관께서도 교육위원회가 150만 도민의 교육의사를 대표하는 기구임에 유의하시고 보다 진지한 자세로 참여해 주기 바라며,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심의·의결하는 의안과 정책질의가 본도 교육의 발전은 물론 신한국창조의 힘이 된다는 높은 긍지를 갖으시고 이번 임시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이어서 정인영 교육감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교육감 정인영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1일자로 우리 교육청에 과장급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소집된 본회의에서 새로이 임용된 중등교육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교육국 중등장학과장 송대헌 장학관입니다.

(중등장학과장 송대헌, 위원석 앞으로 나와 인사후 들어감)

다음에는 역시 중등교육국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장학관입니다.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위원석 앞으로 나와 인사후 들어감)

다음에는 중등교육국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장학관입니다.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위원석 앞으로 나와 인사후 들어감)

다음에는 역시 중등교육국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장학관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위원석 앞으로 나와 인사후 들어감)

늘 존경하는 김영세 의장님과 교육위원님, 따뜻한 봄과 함께 희망찬 '93학년도의 신학기를 맞이 하였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뜨거운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

다.

본인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변모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이 앞장서서 인도하여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본인은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93년도 교육시책을 말씀드리면서 점진적인 교육체제의 개선을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북교육이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노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학교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학교장의 소신있는 교육철학과 지도성이 발휘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학교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자율행정이 이루어지고, 서로 존경하고 협력하는 인간관계속에서 교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민주행정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학교예산의 공개와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단합된 분위기가 조성되고, 사명감 넘치는 교사들과 깨끗하고 존경받는 교직풍토에서 교육발전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교사다운 교사, 학교다운 학교, 그리고 교육다운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의 학문적 수준을 이끌어 올리고 가치관과 태도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자기연찬이 이루어져 질높은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자치 시대에는 학생들이 더욱 질높은 교육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교사가 무성의하게 학생을 가르친다며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로부터 배척당한다는 사실을 교직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의식전환과 함께 선각자적인 신사고와 발전적인 안목으로 교육을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

을 위한 전인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과 함께 수업형태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되고, 논리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도덕적 심성을 심어주고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는 교육이어야만 합니다.

절제교육이 강화되고 기본생활규범을 체질화, 습관화하며 자치활동과 수련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의 국제화 사회를 주도 할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교육에 힘쓸 것입니다.

다가 오는 미래사회는 복잡하고도 다양화된 고도의 산업사회, 국제경쟁사회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실의 안주에서 벗어나 사회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할 줄 아는 미래투시적 안목과 세계시민적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은 개개인의 소질을 찾아내고 잠재된 능력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며, 개인차를 존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겠기에 모든 학교가 경쟁적으로 특색있게 발전·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교육의 도약없이는 국제경쟁사회에서 살아 남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사회발전의 원동력이 자원과 자본중심에서 지식과 기술중심으로 전환되고 국가간의 기술경쟁이 날로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과학·기술의 선진화와 국제인을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임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과학영재의 체계적인 지도와 질높은 과학교육 교구 및 시설설비를 확충하여 밀도있는 과학·기술교육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조국의 앞날을 생각하

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인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시켜 통일의지를 심어주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습활동에 도움을 주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는 양질의 학습기자재와 우수하고 편리한 시설·설비가 확보되어야 하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교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과 재배치, 그리고 학교신설계획 등을 무리 없게 추진하여 교육적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를 정비하고 교실의 증·개축이나 노후시설의 교체·정비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잉여교실의 활용과 교실의 다기능화를 추진하여 열린 교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이 어려운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액을 지원하여 공·사립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일선학교의 행정장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원업무경감과 근무여건 개선에도 힘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학생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시대적 소명을 느끼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내 일선의 교단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과 밤낮없이 학구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극히 소수의 조작된 여론이나 비교육적 의견에 흔들림이 없이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으로 교육현장의 이들에게 항상 도움이되는 일을 생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도내 만여 교직자는 단합된 모습과 굳은 사명감으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항상 곁에서 우리 교육을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이 격려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3년도 신학기를 맞는 인사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이상으로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폐식)

제 21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 1 호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3년 3월 19일 (금요일) 11시 17분

의 사 일 정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판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9.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판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10.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2.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1시 17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 18분)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입니다.

3월 10일 교육청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교육위원회 공고 4호로 3월 11일 공고되어 오늘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두번째로 지난 20회 의결안건 도의회에서의 처리결과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 10일 개최된 제87회 충청북도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월중에 공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번째로 금회 처리안건입니다.

모두 교육청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을 이번 21회 회의중에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 발의사항으로는 이상일위원님 외 세분 위원님께서 3월16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홍신희위원님께서 오늘 개최되는 전국 총학장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오늘은 불참하시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20분)

2.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 의사일정안에 의하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그 중간에 3월 20일과 21일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겠으며, 22일과 23일에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여 5일간으로 하여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0, 21일 2일간을 휴회하기로 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시다시피 본건은 전회기에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으나, 집행기관의 형편상 질문을 하지 못한 것과 금회기에 추가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상일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위원 사회대로 나옴)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본인 외 3인 위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93년 3월 22일 11시로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교육감, 부교육감과 각 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이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4.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첨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기재 생략)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잠깐,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상정된 제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만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다른 조례안은 내용이 간단하므로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외의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직접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금 제안설명들으신 연구원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토론 및 의결은 제3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5.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중등교육국 소관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과학교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중등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단재교육원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첨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기재생략)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직전에 보시며는 각 시·도교육청에 참고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첨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기재생략)

이상으로서 간단히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첨 "충청북도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기재생략)

이상으로서 간단히 수영장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고, 신·구대조표를 참고로 해주시며는 1조서부터 3조까지는 현행과 같고, 4조에 "수영장에 장장을 두되 장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이것을 4조에"충북체육고등학교장이 겸임토록한다"고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설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첨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기재생략)

자세한 개정내용은 2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범위가 좀 큰 사항이라서 주요골자만 말씀을 올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제안설명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의 개정조례안들에 대한 질의·토론 및 의결은 제3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드린 바와 같이 김광수위원, 홍신희위원, 김응복위원, 박병해위원, 장충호위원님 등 다섯분을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수위원, 홍신희위원, 김응복위원, 박병해위원, 장충호위원님 다섯분이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9.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10.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의장 김영세

다음은 같은 부서소관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과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8호 의안인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첨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과 같으므로 기재생략)

이상으로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호 의안인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첨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같으므로 기재생략)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지금 8호, 9호 제안설명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들에 대한 질의·토론 및 의결도 제3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11.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0호 안건인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예년보다 일찍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이 교부되어 이를 대부분 시설사업에 계상하고 조기에 발주하여 회계년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328억 4,492만원으로 당초예산 4,152억 9,290만원보다 4.2%인 175억 5,202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0억 584만원, 지방교육양여금 7억 6,595만원, 국고지원금이 감 17억819만원 등 180억 6,36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새마을유아원 폐원 등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금 2,973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18억 8,815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600만원, 잡수입 감 23억 7,600만원 등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4억 8,1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세입액은 175억 5,2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운영비는 13억 1,861만원이고, 사학지원비는 12억 1,830만원이며, 행정비 및 사업비는 감 29억 3,622만원, 시설비는 166억 9,91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12억 5,2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첫

째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93년 책의 해를 맞이하여 독서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중·고 각급 학교의 도서구입비로 2억 7,8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직원 당직근무부담 경감을 위한 당직보완시설비 3억 5,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쾌적한 수업환경을 조성하여 학생과 교사들이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교실개축 등 교육여건개선비 127억2,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과학·기술교육의 충실을 위하여는 '93년도 과학교육의 해와 대전엑스포 '93을 맞이하여 지역교육청 자료실 기자재 확충비 3억 3,250만원과 과학 교육의 해 행사비 692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확충비 43억 4,543만원과 사립고교의 컴퓨터 구입 지원비 1억 3,5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네번째로 국고보조금 사업을 위하여는 비진학 청소년 기술계학원 위탁교육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 고 중점종목 육성비 1,017만원, 진로교육자료제작비 667만원, 교수·학습 평가방법개선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가자녀 학자금지원비는 지원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34억 9,2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을 해오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여건개선비, 직업교육확충비 등에 대부분 투자하여 쾌적하고도 편리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밀도높은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편성한 점을 이해하시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제안설명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건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제안된 대로 이상일 위원, 이재회위원, 이근수위원, 김사수위원, 권혁풍위원님 등 다섯분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일, 이재회, 이근수, 김사수, 권혁풍위원님 등 다섯분이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동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8분)

12.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영세

그러면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재회, 박병해 두분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이재회, 박병해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수 : 10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회,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o 출석공무원 : 18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총무과장 고일영,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송대헌,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헌동, 시설과장 박성근.

o 의사일정(안) : 별첨1.

o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2.

o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3.

o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4.

o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5.

o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6.

o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 별첨 7.

o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별첨 8.

o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별첨9

제 21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 2 호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3년 3월 22일(월요일) 11시 00분

의 사 일 정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 의 된 안 건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 충주 교통사고 학생돕기 의연금 갹출의 건(긴급동의)
3.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11시 03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바에 따라 판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3월 19일 도교육청에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본도 순방 업무보고에 따른 사전 준비차 정인영 교육감님께서 오늘 참석하실 수 없음을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송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 19일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

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동일자에 예산·결산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회, 20회 회의에서 이월된 내용과 금회 다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사항에 대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1시 05분)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의 질문은 전 회기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으나, 집행기관 형편에 의하여 이번 회기로 이월된 것과 또 금회기에 다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답변 진행은 일괄 질문 후에 교육청 직제순에 따라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보충질의시에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좌석 순대로 김광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광수

김광수 위원입니다.

질문요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으로 봐서는 21일이 되겠습니다 충주 학생 사건으로 인해서 건널목에서 학생이 네명이 사망하고 다섯명이 부상했다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고를 접하고 죽은 학생과 그 부형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그냥 이것을 하나의 사고로 해서 이렇게 넘겨야 할 문제인가, 우리 교육계에서 이것을 재 조명하고 한번 생각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00시 30분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은 밤 12시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남아서 보충수업 내지 자율학

습을 했다는 이러한 증거라고 봐집니다.

이것이 비단 충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도내에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 교육계에서 또는 사회에서 입시문제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입시위주 교육이 돼 있다' 이 입시교육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정서문제나 인간교육이 또는 전인교육이 되지 않고, 파행적인 그러한 일방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것이 현실에 상당히 비판을 가져오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입시교육의 일환으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사고가 생겼다고 보겠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 하면 뭐합니까?

학생이 중간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 이러한 사고가 생겼다고 할 적에 우리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이러한 밤 늦게까지 자율학습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반성을 해야 되겠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차제에 우리 충북 교육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 봐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보충수업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벌써 중학교 입학을 중학교 1학년 입학함과 동시에 보충수업이 따르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보충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입시교육에 문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것이 아닌가 봐져서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예 보충수업을 근본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어떨까 봐집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본도만이 보충수업을 철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은 교육감 회의에서 이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진정해서 아주 책임지는 일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도에서 보충수업을 하며는 그 도에 교육감이 책임지고 또는 그 군에서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며는 학교장이 책임을 진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이것을 해나가서 학생은 오로지 밝고 명랑하게 공부하는 그런 학생으로서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져서 이것을 질문에 앞서서 교육당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문요지에 들어가서 제가 질문한 것은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의 과별 모집정원과 입학생수의 현황을 물었습니다.

그것이 자료가 준비가 돼 있으며는 그 준비된 것을 저좀 한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고 할 적에 영동농고 같은 경우 정원이 244명인데 입학생은 148명 부족학생 96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축산이나 원예 같은 데는 절대 학생이 응시를 안하고, 거기에 모집을 안했습니다.

축산과 같은 경우 48명 정원에 3명만이 입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48명에 3명이 입학을 하고 45명이 지원을 안한 결과, 또는 원예과 같은 데는 48명에 17명만이 입학을 했습니다.

또 보은같은 경우도 축산과 48명에 16명, 원예과 48명에 20명이 이렇게 입학이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 이농 현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 학생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농업계 계통의 학생들이 이와같이 희망을 안한다고 할 경우 앞으로의 농업학교의 존립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지금 현재 농업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이 농업분야 계통의 학생들이 희망을 하지 않고 또는 그 농업학교가 존립까지 문제가 왔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농토는 국토의 상당 분야를 차지하고 있

고, 또 농업인구는 농본국가로서의 80%이상이 농민이었던 것이 지금은 30%니 뭐니 이렇게 합니다마는 농업계 계통에 학생이 가서, 또는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일부는 농업을 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이 갈 태고, 또 일부는 지도자가 돼서 공무원이 된다든가 해서 농업정책도 입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농업학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해야 할 것인가의 대책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농업학교가 순수하게 농업학교가 아니고 농공고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업계의 교장이 있으면 교감은 공업계 교감으로 있다든가, 또는 교장은 농업계나 공업계나 있으면서 교감을 둘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는 농업계의 교감, 하나는 공업계의 교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얼마만큼 농공고로 했을 적에 유효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0학년도 취학아동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읍단위 이하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시단위 이상만이 인구도 증가되고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옥천군의 같은 경우 '91년도 취학아동이 918명이었고, '92년도에는 845명, '93년도 금년에는 689명으로 작년보다 156명이 줄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20명 이하가 되는 학교수는 23개교 였었는데 2개교가 분교가 돼서 21개교 분교가 내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20명 이하가 15개 학교가 됩니다.

학생들이 갑자기 취학아동 1학년 입학하는 학생이 줄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에 있는 국민학교는 1면 1교정도로 밖에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동향과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분교를 만드는데 분교를 만드는 것 보다는 학생의 교육에 대한 그러한 효과적인 면으로 볼 적에 아주 폐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예산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인 교육문제도 그렇고 지방의 본교 학교가 있던 것을 분교로 하는 것도 뭣한데 폐교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 지역 또는 사회에 문제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학버스를 운영을 할 것 같으며는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학생들의 학습 향상에도 훨씬 효과가 오지 않겠는가 봐서 그것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분교나 폐교가 되는 학교에 시설문제입니다.

우선 당장에 교실이 노후화 하고, 또는 거기에 시설을 가해야 할 것인데 앞으로 분교가 되고 폐교가 되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마 사실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 같은 것이라든가 또는 급수시설 같은 것이라든가 또는 요즈음와서 급식시설 관계 이런것은 오히려 시골학교, 촌학교 이런데에 급식시설을 더 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편의제공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분교 폐교가 됨으로써의 여기에다 시설은 하기가 퍽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3복식을 하고 있는 학교, 오늘인가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3복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앞으로 충북교육청에서 그런것은 없애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방의 옥천으로 봐도 3복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한군데 있습니다.

분교이면서 청마국민학교라고 할 것 같으며는 아주 오지라 분교로 만들어 놓고 폐교를 해야할 사항인데 폐교를 하지 못하고서 그냥 지금 3복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마학교는 합금리·청마리라고 해

서 호수가 한 30여호 살고 있고, '93 학년도 학생은 2학년 3명, 5학년 3명 6학년 3명해서 학생 수로는 아홉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잘 하는 것인가, 또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중심의 자율행정을 실현한다고 돼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열쪽에 보며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이라고 해서 맨위 가번에 학교장 중심의 자율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좀 세목을 읽어 보겠습니다.

첫째, 학교장이 투철한 교육관에 의한 지도성 발휘, 인간관계 형성.

두번째, 학교운영에 대한 의식 전환 세미나 개최 유·국·중·고교장이 879명입니다.

이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번째가 교원의 사명감 및 책무성 제고, 교장 근무지 상주, 교사와 대화시간 운영, 이렇게 해서 교장 중심의 자율행정을 실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한 세부 실천 내용이 무엇이며, 자율권을 주었는데 그 교장이 능력이 부족이 돼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데가 있으리라고 봐 집니다.

이런데는 어떻게 보강했으며, 능력 신장을 위한 그 대책은 무엇인가, 도내에 지금 879명의 장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자율행정을 운영할 수가 있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며는 방금 제가 읽어준 세가지를 어떻게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교장이나 간부급인 교감이 건강이나 기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장기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장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고 있는지 이 교장이 학교 운영은 절대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이 1개월이상 자리를 비운다든가 하며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봐집니다

우리가 볼 적에 먼저번에 일어난 청주농고 같은 경우라든가 청석학원

의 문제같은 것을 볼 적에 뭐니 뭐니 해도 교장이 그러한 자율권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 한데서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이렇게 볼 적에 학교에 교장의 능력면을 우리는 초·중·고 다같이 평가받을 만한 그런 교장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어저께 우리 세미나에서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미국의 에는 일반교사도 3년마다 자격증 갱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자격증을 받으며는 평생 정년퇴임 할 때까지 그대로 자격증이 유효해서 중간에 건강이라든가 어떠한 사유가 발생을 해도 그 자격증 때문에 평생 그렇게 근무를 하고 복무를 하는 그런 사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육청소년부 업무를 타부처로 이관했을 적에 지장이 없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부가 없어지고 그것을 문화체육부라고 해서 통합이 됐는데 교육면으로 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상 질의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위원이 일곱분이시고 또 그 외에도 질문하실 위원이 계실 것으로 봅니다.

또 질문요지서를 낸 내용이 큰 제목만 32건입니다.

작은 제목까지 하며는 40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규칙에 있는대로 발언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질의, 신상발언, 또는 의사진행 발언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점을 잘 유의해서 취사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북 도내 중학교 졸업생에 대비한 고교 정원 비율이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진학 경쟁에서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올해 도내 중학교에 졸업생은 남학생이 13,176명이고, 여학생이 12,748명으로 여학생 숫자가 남학생의 96.8%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고등학교 입학정원은 남학생이 12,836명이고, 여학생이 10,534명으로 남학생은 전체졸업자에 97%가 진학을 하는 반면, 여학생은 83%만이 진학하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평준화 지역인 청주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남학생은 졸업 예정자 4,500명에 68%인 3,072명이 진학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여학생은 4,091명에 43%인 1,776명만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등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입학 합격선도 보면 남학생은 134점인데 비해서 여학생은 143점으로 9점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난 '92년 5월 22일날 제10회 임시회에서 제가 '여교사를 위한 부설탁아소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청에서는 '93년도에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규모가 큰 학교부터 점차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충주·중원 여교사 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때 탁아소 설치가 꼭 필요하다 하는 회장단들의 얘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출산한 여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봐

줄 사람을 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취직을 하며는 먼 곳에 있는 친정부모님들한테 애기를 맡기고 출근을 하다보니까 마음이 온통 집에 가 있고, 마음이 잘 안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출근하는 여교사가 많다는 하소연을 들었는데, 그래서 각 학교별로 다 부설탁아소를 세우는 문제가 어렵다면 청주·충주·제천 같이 큰 도시에 여교사가 많은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지역별 탁아소를 한 개씩 설치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아까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이삼일전에 충주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사는데가 중원군 이류면 농촌동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사망자나 부상자나 가정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죽었다 하더라도 살아 있는 학생들이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치료비가 나올 것인데 참으로 치료비 문제도 어렵다고 하는 문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도와주려고 해봐도 잡부금은 일체 걷을 수 없다고 하는 교육부의 지시도 있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교육청에다가 부상학생 돕기를 위한 어떤 모금창구 같은 것을 설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별적으로 가서 도와주는 것은 한 두 사람은 좋은데 사망자 4명, 부상자 4명인데 일일이 여덟군데를 금일봉을 들고 다니기가 참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 창구를 설치를 해서 교사들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또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자기의 따뜻한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물질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길러주는 뜻에서 우리 교육계가 이번에 참여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세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다음 이재회 위원 순서입니다.

이재회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제가 몇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달 인사이동 결과를 보니까 다소 좀 고쳤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충주시에 근무 만료자는 중원군으로 제천시 근무 만료자는 제천군으로 전보를 할 수 없도록 이런 금지규정이 있는데, 이번 인사내용을 보니까 제천에서 만료된 사람이 한 10여명이 충주로 가고 충주에서 한 10여명이 제천으로 와서 아주 박달재를 몇 년을 넘어다니는 이런 불편이 있는데 물론 수급조정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요즘에 단양과 제천문제가 그래도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것은 제천만료자는 제천군으로 충주시 만료자는 중원군으로 가는 것을 좀 풀어 놔줬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불편자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교장선생님들이 임기 만료가 2년반이 남았는데, 앞으로 재임용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도 있고, 또 궁금증도 있어서 교장선생님들 간에 대화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법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3에 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자는 잔여 임기동안 임명한다는 그런 규정은 있지만 충주·제천 지역에서는 어디에 알아 봤는지 모르지만 교장은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설령 2년 남은 사람이 재임용 받아가지고 행정 소송을 하며는 4년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잔여임기가 남은 사람은 재임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번에 교장선생님들 공로 퇴임을 열어 놓은 것도 이런 선생님들의 나아갈 길을 마련한 것이다 하는 이런 해석들이 구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주시 교장협의회 교장한테 충주에도 그런 얘기가 있느냐고 직접 전화로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 어떤 법률 전문가 얘기는 그렇게

애기를 한다고 합니다.

임기제 임용은 정년에 구애없이 재임용 받으면 4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행정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법 자체는 아직 개정이 안되어 있지만 상당수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동요되고 있으니까 혹시 잔여 임기가 남은 사람이 이번 임기로 정년퇴임 되는구나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교장회의나 이런 석상에서 확실하게 그 잔여임기자에 대한 처우, 임용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번째는 요즘은 전교조 문제가 상당히 완화가 되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이번 인사에서 제천·단양 지역에는 전교조 직원들이 보강이 됐다고들 애기를 합니다.

제천상고라든지 제천동중에는 상당수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분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지 설령 희망을 제천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좀 달리 배정을 할 수 없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김광수 부의장님도 3복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석상에서 도시의 복식수업 해제에 대한 것은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연차 계획을 세워놨는데 농촌의 3복식 해소에 대한 것은 별로 들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천지역에도 3복식 수업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저학년의 복식수업은 그런데로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고학년을 묶은 3복식 수업은 도저히 수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 참 여지껏 남아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아동들인데 되도록이면 3복식은 어떻게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도시에 수십억원 들이면서 복식수업 해제를 하려고 하면서 농촌의 시설은 남아 돌아가고 선생님 자원만 확보하며는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3복식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3복식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들 품위 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새정부 출범으로 사정업무가 강화되고 있고, 또 민자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아주 공을 세운 청년부장, 여성부장을 어제 날짜로 전부 해임 조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사실상 교사로서 근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항간에는 좀 있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며는 '65세 정년이지만 생각보다 노쇠해서 직무수행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예를 든다며는 다행히도 작년에 정년퇴임 했습니다마는 모교장은 졸업식장에서 축사를 돋보기 쓰고 읽지 못하는 교장이 있었습니다.

학부형들 여론이 대단했었는데, 안보이는지 축사를 돋보기를 가지고 들여다 보면서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선생님도 계셨었고, 또 요즘은 중간에 정신질환 이런걸로 해가지고 학습지도가 곤란한 선생님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또 난치, 불치의 선고를 받고도 병가다 연가를 다 이용하고도 공로 퇴임을 기다리려고 학기를 더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는 사례도 더러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찾아 가지고 정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부채로 인해가지고 품위가 손상되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어쩌다 보증을 잘 못 섰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많은 사람은 여섯번 봉급 차압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무과에서 따져 보며는 6차에 차압이 10년동안 상환해도 상환이 불능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에도 문제가 있고, 좀 정리할 단계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교추 징계대상자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일관성 있게 유지가 안되고, 자꾸 번복이 된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더러는 교장선생님들이 제대로 설득하기 위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이번에 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불평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어떠한 징계대상자는 일관성 있게 처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일교류 학교의 현황과 실적 분석에 득과 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지방의회가 일본하고 각 시군마다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학교계통이 덤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았는데 군과 군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학생도 자동적으로 자매결연이 맺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그런대로 교류가 효과를 보겠습니다마는 저학년도 교류관계에 큰 득을 볼 수 있는지 한번 득과 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다음은 김사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사수 위원

김사수입니다.

두어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군에 설치하는 명칭이 지역종합과학관이라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과학관 설치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일간지 중부매일에 3월 중순경에 도내에 다섯군데에 설치한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났고, 또 교육감이 연두 학년초에 순시할 적에 약속한 데도 몇 군데 있는 것이 기사에 나서 비로소 알고, 또 실무진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아무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기타 모임이 몇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이 계시지 않고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종합과학관을 설치하는 근거하고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을 뭘로 하는 것인지, 독립기관으로 해서 하나의 사업소 형태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학교나 어디 기존시설 교육청에 부설하는 부속시설로 하는 것인지, 이 지역이라

는 타이틀이 붙을 때에는 중심부를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설치 계획하고, 다섯군데의 배정 기준은 어떻게 책정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내부의 시설 규모하고 대개 몇평 짜리를 어떻게 한다, 내부시설은 뭐로 주로 한다는 것 하고, 전체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네번째 내부시설이나 기타 하나의 신규로 다 기관을 만드는 것인데 운영비라든지 기타 예산이 소요될 줄로 압니다.

예산의 확보 상황과 또한 그런 것을 하려며는 사람이 있어야 할텐데 정원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교육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이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뭔가 그래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가덕에 있는 과학교육원은 언제까지 거기에 둘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이전 계획이 서있으면 이전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야말로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고, 인원이나 예산도 확보되고 해서 있어도 소기의 설립목적을 달성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좁은 소견인지 몰라도 우선 과학교육원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용 충실한 과학교육원을 해야지 그냥 시군에 자꾸 벌려 놓기만 해서 예산을 그런데다가 배정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한 대로 과학교육원을 이전하는데 내용 충실하는데 보태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사업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몇 번 논란도 됐던 것인데, 법무계죠, 행정담당관실에 법무계가 있나요?

(집행석에서"있습니다"하고 답변함)

그러며는 그 교육자치법 13조에 보면 위원회 권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시설의 설·폐는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계에서.

이것이 요전에도 무슨 야영장 관계로도 논란이 많았고,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이 불편한 관계도 있었고 한데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법에 의결권은 없다하더라도 알 권리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3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그러한 신규로 시설을 하는 것을 우리 교육위원들이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결권이 없으며는 아는 방법이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조사권 발동을 한다든지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렇지 않으며는 집행기관이 사전에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러 이런것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가 어색하면 말씀이라도 해 줘서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줄로 압니다.

꼭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상책의 방법이냐.

그런데 앞으로는 좀더 집행기관에서 저희 교육위원들이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일, 전체를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사전에 인포메이션을 우리한테 주셔서, 그래야 저희들도 교육위원 행세를 하지 시내 나가서 뭐 이런것들 '과학교육관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고 물으면 모릅니다.

여러분이 얘기를 안해서 몰라요.

저희들과는 앞으로 서로 우리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기타 뭔가 있을적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수업료 육성회비 인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과장님께서 요전에 간담회 때, 질문하기 전에 상세하게 와서 말씀을 해주셔서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며는 질문을 할 필요도 없고, 시간적으로도 여러가지가 좋지 않나, 절약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과장님 감사했습니다.

세번째는, 실업계 고교생의 장학금 지급하고 수업료 면제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입학 지원자가 폐결하다시피 하는 현상도 되고, 또 우수기술 양성한다는 뜻에서도 장학금도 많이 주고, 학비도 전액 면제해 줄 수 있으면 면제 해줘서 학생들을 더 유치를 하고, 소위 실업교육의 목적을 거둬야 할 텐데 그런 뜻에서 참고로 하려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을 말씀 하시는데 현재 공업계·농업계·상업계 해서 여러 군데서 주는 것이 있는데 전부 통털고 인원도 종합해 주셔서 전체 인원과 1인당 지급 총액을 알려주시고, 또 수업료 면제자 현황도 공업계·농업계·상업계로 해서 인원하고 총액하고, 말하자면 전체를 면제하려면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는 총액하고 1인당 지급액하고 현재 지급 총액하고, 그럼 전체 인원에 대해서 현재 지급 총액이 대개 몇%로 되느냐, 이 비율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다음에는 박병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병해 위원

주로 " '93 교육시책 구체화 방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여기 방안에 나온 것 중에서 9페이지의 나항에 보면 각종 연수시에 도덕성 함양에 관한 연수시간을 10%를 삽입을 했다는 것 아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그리고 지금 김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시·군에 종합과학관 건립에 관한 것 여러가지 절차상 문제도 있으나 저로 봐서는 아주 좋은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학생 도서비를 학급당 5만원씩 이렇게 배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외

수업문제 교육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우선 과외수업부터 폐지가 돼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전국의 교육감 회의나 전국의 교육위원회 의장 회의나 양쪽에서 충청북도가 제일 먼저 전국 일제히 다 과외수업을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해서 이것이 실천 단계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문에 들어가서 '93 교육시책 구체화 방안 안에 페이지 2페이지 다항에 현장 우선의 지원 행정 항목에 보면 '교단 중심의 지원 체제 확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2의 나항에 보면 학습자료 선정은 교사의 의견 수렴, 품목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자료 선정이나 또는 교단 중심의 지원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 각급 학교의 사정은 어떤가 하는 것을 조사해 봤어요.

도내 교육청별로다 고등학교 1, 중학교 2, 국민학교 2, 이렇게 5개 학교에 그 사항을 조사해 봤고, 청주시내 청원군내 10개 학교를 직접 심방을 해서 자료도 수집을 하고 현실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실험실습 교수학습자료 구입 지원 우선' 이래 놓고서 우리 도의 실정으로 보면 교육환경을 우선 중점적으로 지원한 실적이 돼 있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책·걸상, 컴퓨터, 혹은 전산기, 운동회, 텔레비전, V·T·R 관계, 과학실험관계 이런 것에 집중 지원이 되어 있고 그 외에 그 많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직접 교실안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교단에서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가, 그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준비가 되도록 돼 있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가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그것을 발전적으로 중점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두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책 구현 방안을 보면 페이지 7의 다항에 그 마지막 줄을 보며는 자기 장학의 정착, 연구 독서하는 교사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7페이지를 보면 다항에 독서여

건의 조성, 도서관·도서실·학급문고, 여기에 대한 확충 계획에 중·고등학교 12학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필독도서, 권장도서 선정보급, 아주 좋은 시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계획이라고 한다면 교사용 도서 구입은 얼마나 그동안 우리 학교에 되어 있는 것인가, 또 학생들이 신간도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도내에 각급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도서는 어떻게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준이 있을텐데 국민학교의 학급당 도서는 몇 권이 기준이 돼 있고 중학교,고등학교는 몇 권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냐

그런데 그 기준이 각급 학교별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전 도내 기준으로 봤을 적에 현재 기준 미달이냐 초과냐 이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한가지 유의할 것은 그 기준을 위한 각급 학교의 교사용이나 혹은 학생도서를 학급당 몇 권, 그 몇 권이라고 하는 책자를 이것을 사지는 못하고 이것을 폐기 처분할 것이 많아도 폐기 처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기준량 채우는 것 때문에 매번 그 숫자는 보고가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째번에는 그 일인 일운동이나 각급 학교의 전원체육이나 그룹별 체육이나 여러가지 좋은 시책들이 나와 있고, 교육시책 구현 방안에 보면 19페이지의 바항에 그 시책이 나와있는 것을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어느 학교든지 그 학교에 지정된 기준 종목 선수 양성에 전력을 다 경주하고 있고, 때로는 체육시간마저도 잠식을 당하는 이러한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현재 건강하고 강인한 체력을 가지지 않을 때 본인의 운명이나 학교의, 혹은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내세운 좋은 시책을 작년이나 재작년 같이 공문으로 내보내고 말 것인가, 또 이 시책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며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 것인가, 그 방안이라고 하면 꼭 실천에 옮겨지게 하는 방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원체육에 관한 문제점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다음에는 권혁풍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권혁풍 입니다.

제가 질문을 열 네가지를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가 질문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번째, 교육장 임용을 위한 인사원칙을 가르켜 주십시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장 임용시 인사 원칙을 둘러싼 세가지의 질문을 드리는데 이에 앞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가 하는 배경을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특별히 교육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도 이 자리에는 교육감님은 나와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자니까 대통령 순방을 위한 준비를 하시겠다 하는 그런 사유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물론 지금 이 시간에 교육감께서 얼만큼 거기에 준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종의 권위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교육위원의 질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한다든가 기피하려고 하는 교육위원의 경시풍조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이해치 못할 일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해치 못하는 심정은 어디까지나 기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배경부터 말씀드린다며는 우리 도에 정인영 교육감께서는 전국

최초의 민선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 시대의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겠다 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또 아울러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방자치 정신에 투철하시고 해서 아주 귀감이 되시는 그런 분으로 뽑아서 저희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기대에 어긋나는 그러한 시책을 펴기 때문에 유감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자치 하다보니까 물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다 해서 지역 출신 인사를 가능하면 가급적으로 지역 출신 인사를 뽑는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시책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정교육감님 자체부터가 아마도 충청북도 출신이 아니었다면 과연 교육감으로 당선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93년도 주요업무 시책에 관련을 지면서 여쭙겠습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첫째 단원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며는 인사와 재정을 공개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과연 인사전보할 때 교사를 참여 시켰는지, 참여 시켰으면 그 취지는 무엇인지 그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모든것이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의 인사,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인사, 지역의 교사를 연고지에 배치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자치가 여러가지 사정상 광역자치에 그치고, 기초자치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지역교육장은 단순한 연락관 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지역을 대변한다고 할까, 책임을 진다고 할까, 교육에 대해서, 이러한 막중한 자리라고 보겠습니다.

교육감이 직할하는 교육청이라기

보다는 그 지역을 대변하는 그런 막중한 자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럴때 교사의 전보는 교사를 참여시키면서 어째서 그 막중한 교육장 인사를 하시면서 그 지역 교육위원하고는 일체의 협의가 없습니까, 사석에서 어떤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겠다 하는 약속을 했음에도 전부가 식언이 되셨고, 그래서 교육감이 하시는 일이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물론 인사권이라는 것은 교육감 고유의 권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교육위원으로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세명의 지역교육장이 발령이 됐는데 충분히 교육감의 인사권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여기에 작용을 했다든가 협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이지 최소한 이상하고 이하로 내려가지 말라는 한계 하한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지 그이상 법이상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관습적으로 훌륭한 일을 해서 안된다는 일은 없습니다.

즉, 법 이상의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법만 가지고 따지는 그런 행정은 가장 졸렬한 행정이다, 왜 법이상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법 최하한선을 달리느냐, 얼마나 졸렬하냐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행정에 대한 자세라고 할까 이것이 항간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칼 자루는 교육감 한테 있는데, 교육위원들이 무슨 이래라 저래라 말씀이 있느냐 그러한 자세 같습니다.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정신에 의할 것 같으면 역시 교육감은 칼 자루를 가졌다기 보다 교육감은 모든 일을 결정하는, 집행하는 칼날이다.

그리고 주민의 대변기관인 교육위원회가 역시 칼 자루를 가져야 된다 하는 자세를 저는 갖고 있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칼날 교육감이 될 것이냐, 칼자루 교육감이 될 것이냐, 그러면 그 칼에 도마위에 얹어질 것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 먼저 도지사로 계시던 분이 서울시장으로 혹은 내무장관으로 영전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 교육감이라고 해서 교육부 장관으로 영전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여론이 좋고, 반응이 좋고, 인격적 추앙을 받으면 얼마든지 영전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통령이 인사권을 발동했을 때에도 여론 앞에서 스스로 자기가 한 시책을 혹은 인사권을 다시 뒤집고 시정하는 자세를 흔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론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여론을 대변하는 교육위원이라든가 의회의 위상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세가지를 거기에 따라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93년도 주요업무 시책 1, 라에 인사와 재정을 공개하신다는 공개행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과연 교사가 참여를 했는지 하는 것을 하나 묻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장 근무지 상주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취지가 지역에 상주를 하면서 어디까지나 기초교육자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모든 것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럴 때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교사를 참여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참여를 시켰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두번째는 11개 지역교육청별로 지역의 출신, 성장지 혹은 연고지 교육장대 비출신자의 비율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좋은 예로써 우리 음성군에는 제가 지역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물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음성군에는 교육장할 인물이 없어서 그런지 혹은 기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은 교육장 발령이 났는가를 두번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앞으로도 이처럼 교육위원회라든가 여론을 무시한다고 할까 협의 없이 앞으로도 계속 독단적인 이런 인사행정을 하실 것인가 그래서 갈등의 소지를 마련하고 불신 교육감으로서의 인상을 남기실 것인가, 앞으로의 전망, 세가지를 묻습니다.

왜 지역출신 인사를 필요로 하느냐 하면 다 아시는 얘기겠지마는 행정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출신 교육장이 가야 그곳에 제자도 많고 친구도 많고, 선·후배도 많고 해서 여러가지 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정 능률상 그 지역출신 인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역주민의 정서상 인화단결상도 필요하다고 보고, 업무의 파악이라든가 추진상 여러가지 좋은점이 많은데 구태여 지역출신 인사를 피해가면서까지 인사를 해야 될 피치 못할 사정이 뭐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지금 질문드린 것은 현재 교육감님이 안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다음 기회로 미루더라도 교육감이 직접 인사권자로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질문 두번째입니다.

'92년 동계휴가중 실시된 과열과외 수업이 교육의 본질추구, '93년도 교육시책에 보면 '93년도도 그렇고,'92년 교육행정의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그 교육의 본질 추구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과열 과외수업이 과연 교육의 본질 추구와 모순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두번째는, 감사 지적사항인 비수업 교사에 대한 수당지급 위반에 대한 대책은 어떤 교육감의 처리 내용과 관련 공문서가 전달 됐는가, 시달 됐는가 하는 것을 묻고, 앞으로의 기본 대책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1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야영장 운영실태입니다.

도표에 따라서 질문한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전문직 정원이 제대로 보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과목 과원교사, 사회라든가 윤리·교련 같은 과원 교사를 어떻게 보직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번째는 교감 승진 대상자 차출시 국립 초·중·고 근무교사 우대 실태 문제점 입니다.

이것은 먼저도 질문을 드린 것인데 확실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국립 초·중·고 교사에게는 근무의 점수도 주고, 차출도 우선합니다.

이중 특혜를 줍니다.

이것은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고치도록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그 중 하나만 주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모형항공기대회 운영의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 유무, 이것은 어떤 모형항공기가 상당히 추진은 좋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반제품을 갖다가 조립하는 그래서 어떤 특정 상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수학능력평가 실시결과 분석 후의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수리탐구 능력에 대해서 종전과 별 발전등이 없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면에서도 읽기에 편중해서 쓰기라든지 말하기·듣기 이런

평가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작문의 채점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분석이 되었으리라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92년 9월 이후의 각 교육청 기탁성금 운영실태와 문제점 대책, 먼저 신문에 보니까 어떤 급식 지원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비 지급 실태도 차이가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기관별 여비지급 차이가 심하고, 동일교에서도조차 교장·교감·교사·서무의 여비 지급이 아주 차이가 많고 타절비율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만 요소가 많은데, 정확한 현황과 개선방향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상황도 여러번 제가 질문한 것인데 이것의 문제가 뭐냐하면 결산보고를 제대로 못 듣는다고 합니다.

일년동안 끝난 뒤에 돈을 얼마 가지고 어디에 얼마 썼다는 결산 보고를 담임이 듣고서 충분히 알아야만 학생들한테 다음번 회비를 걷는데, 걷을 수가 없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공납을 안해준다던가 걷기가 곤란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덟번째는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처럼 과원교사, 교련이나 국민윤리·사회 같은 과원교사는 내신을 강요받는 현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신들 남는 교사니까 다른데로 내신을 내십시오'하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립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에 제2외국어 자유선택 시범지역이라는 게 있다고 들리는데, 이게 아마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열번째, 인문고교에 취업반 운영 실태, 이것은 제가 질문한

대로 답변해 주시고, 열한번째, 시간이 되어가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중에 포함된 것 중에 고교 입시제도 개선 추진상황을 그동안 추진한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는 상당히 학생과 교사가 혼란을 갖고 있는데,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개인의 자유로운 창조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대책이 뭐냐, 이것은 보충수업과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열 과외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충수업이 과연 학생들의 창조력 배양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업무시책을 볼 적마다 아주 좋은 시책들이 많고 그대로 실현된다면 그야말로 교육발전이 눈부시게 되리라고 보는데 알고보면, 지나고보면 그 모두가 사실은 거의다 얼만큼 실천되느냐, 몇 %가, 아마 가장 주력을 두는데가 보충수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각 학교에서 일선에서는 주로 보충수업에다 힘을 써서 다른 모든 시책들은 마치 어떤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보충수업에다 전력을 넣어서 고등학교 혹은 대학은 어떻게 가느냐, 여기에만 전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개인의 자유로운 창조력이 배양 될 수 있는 것인가 먼 앞날에서 볼 때 우리 한국교육이 이래도 될 것인가, 이래도 무서운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가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열두번째는 아까 추가질문 두번째 한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상 시간을 많이 끌어 죄송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다음에는 장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충호 위원

장충호 위원입니다.

교육부에서 학생수가 점점 감해짐으로 해서 공립학교의 폐지 학교가

많이 늘어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매각 계획이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폐지 학교에 대한 매각 계획 수립이 확정됐는가, 됐다면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 3월 1일 현재의 폐지 학교 수는 몇 개나 되는가, 또 이러한 상황으로 점차 감소가 되어간다면 향후 연도별로 폐지학교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 예상 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도에서 매각 계획이 확정이 됐다면 모르지만서도 아직 확정이 안됐다며는 그 폐지학교에 대한 관리 방안, 즉 임대 또는 자체 활용 실태와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또 향후 매각 될 때까지 본도 자체로 효율적인 관리 대책은 무엇인가, 또 전담관리를 위한 관리인의 배치 계획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타 질문은 이 다음에 답변시 보충질문으로 하기로 하고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침묵)

질문 없으시죠.

질문하시느라고 여러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청의 답변 준비와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14시 02분)

2. 충주 교통사고 학생돕기 의연금 갹출의 건(긴급동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전 우리 교육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집행청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그 전에 긴급하게 제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일 위원께서 아까 발언한 요지

인데, 내용은 충주 학생들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 학생들의 희생에 대해서 동정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같이 동감일 것으로 알고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다만 얼마씩이라도 의연금을 갹출해서 위문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동의입니다

내용의 금액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추후 조정을 하기로 하고, 이 원칙에 대해서 찬동을 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동합니다.)

전원 찬동하시죠.

(14시 04분)

3.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답변이 끝나면 바로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차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먼저 김팡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학교장 중심의 자율행정 실현을 위한 노력중에서, 첫째, 그동안 추진한 세부실천 내용이 무엇인가, 둘째는 자율행정 능력 신장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두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세부실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과운영, 특별활동 운영, 교육과정의 지역화 문제등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교장선생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교내 인사관리 문제입니다.

학교마다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학급 담임 배정이나 사무분장이나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는 문제는 교장선생님이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 문제에 있어 과거와는 달리 국민학교 모든 학교가 다 도급경비 제도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회계 집행에 있어서는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도 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교내의 자율장학 실시를 통해서 수업의 질 향상에 진력하는 문제도 학교장의 자율권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능력 부족으로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의 자율행정 능력 신장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학교장의 의식 전환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모든 행정력을 총 집중 학교장의 의식 전환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 첫째로 국민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연찬회를 4월중에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토의할 내용들은 첫째가 교육발전, 두번째는 전인교육 문제, 수월성 교육 문제, 교육환경 개선문제, 네가지 영역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갖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교장의 뭐니 뭐니해도 교육관이 투철해야 되고, 사명의식이 높아야 된다, 이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스스로 느껴서 의식을 전환하는 쪽으로 이룩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세번째는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장학협의를 통해서 능력 신장을 촉구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전문성 제고 문제입니다.

전문성 제고 문제는 자기 혁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 연찬을 하도록 하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현재 건강관계, 건강이 나쁘다던지 또는 채무가 많다던지 해서 학교 운영에 지장이 있는 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에 따라서 의법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879명의 교장중

에 그런 분은 없습니다.

여섯번째는 부단한 연찬입니다.

외국의 자격증을 3년마다 갱신한다고 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고 대개 3년 10개월 정도 되면 1급 자격증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교감·교장 자격증으로 갱신이 되는데, 자격증 문제보다는 자기연찬 문제입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원들이 현직 직무연수를 하도록 해서 능력신장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교사를 위한 탁아소 설치문제는 먼저 답변한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앞으로의 대책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추진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청주는 덕성국민학교, 제천은 동명국민학교, 충주는 남한강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상당한 기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째 청주 덕성은 바로 설치할 것 같은 기미였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상 현재 검토중에 있고 진척이 없습니다.

제천 동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충주 남한강은 43학급에서 42학급으로 됐습니다.

교실이 잉여교실이 2개 교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활기를 띠서 교육청과 학교와 긴밀한 연락하에 현재 관내 교원자녀 22명을 대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시설하는데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수용자 부담으로 하기는 어렵고 행정청에서 지원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의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만약에 설치를 했을 때 1인당 경비문제입니다.

경비는 수용되는 인원 수에 따라서 개인부담이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국민학교에다

가 탁아소를 설치했을 때 문제점입니다.

첫째는 직장 내의 보육시설로의 정식 인가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사고가 발생하며는 교내에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장은 문책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고가 났을 때 보상문제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에 봉착, 현재 3개지역 3개학교 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약화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문제입니다.

"초등교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 조항 개정 필요성은"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 즉 충주시는 중원군으로 제천시는 제천군으로 교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했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시에서 제천군으로, 충주시에서 중원군으로 문호를 열어준다고 하면 제천시에 생활근거지를 둔 그 선생님들은 참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은 그것을 대단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를 한번 살펴 보며는 청주지역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거주를 하는가 저희들이 봤습니다.

청주시, 청원군의 교원 총 정원수는 1,800명입니다.

생활근거지가 청주·청원에 있는 사람은 2,608명입니다.

그러면 808명은 여기에 도저히 근무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연히 순환 근무를 시켜야 한다는 순환 근무의 불가피성이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양의 경우입니다.

단양은 교원 정수가 236명입니다.

그런데 단양의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냐, 68명입니다.

그러면 168명이라는 교원은 타시군에서 항상 왔다 갔다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해야 되는데 과연 168명을 어디서 전입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천을 제천시에 제천군으로 가고 충주시에서 중원군으로 간다라고 하며는 이 사람을 어디서 충당해야 되느냐, 청주·청원 지역에 808명이 남으니까 그 분들이 인접 지역에 배치한 나머지 그 분들이 단양을 가야 된다고 하는 현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현직 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신규 교사로 배치한다고 하며는 단양은 168명이라는 신규 교사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양교육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인사관리를 하고 단양유치 방법을 쓰고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신규 교사를 단양에 연고지 있는 2명을 제외한 31명을 경력자로 배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제천시에서 제천군으로 충주시에서 중원군으로 가는 문호를 열어준다고 할 경우 순환 근무라고 하는 대원칙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십분 감안해서 그 문제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마는, 그러나 교원 수급 문제라든지 생활 근거지 변화라든지 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변화가 있을 때에 여기에 따른 인사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교장 재임용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장 재임용에 대한 내용을 일선학교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은 저희들이 이미 공문으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3에 의한 교장 재임용에 관

한 지침을 초등교직 01110-122 '91년 10월 17일자로 이미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임결정 절차입니다.

어떻게 중임 결정 절차를 하느냐, 이것은 교육부 예규 218호 '91년 9월 20일자 입니다.

첫째, 교육감님은 중임 여부를 심사하도록 심사위원장에게 통보를 해야됩니다.

심사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시고, 위원들은 국·과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 요청이 되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특별한 결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 결과를 교육감님께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면 교육감님은 임용 제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하게 됩니다.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 제청서를 받아서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을 하면 대통령 발령이 나게 되는 그런 절차 과정을 밟게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장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어떠냐,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건강상태라고 하면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교장으로서의 학교관리 능력상 결함이 있느냐, 능력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교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 봉급차압 문제라든지 품위 문제라든지 다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이래서 세가지 기준을 갖고 심사를 해서 적격 판정이 되면 재임용 제청을 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8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일선학교 선생님들, 특히 교장선생님들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잔여기간이 2년이나 남은 분이 재임용 심의 결정이 돼서 제청을 하면 4년간 근무를 하게 되며는 65세 정년이 아니라 67세에 정년이 되는게 아니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육공무원은 65세 정년이기 때문에 2년 연장해서 근무를 할 수가 없고, 또 임용장에는 반드시 임용기간이 명시가 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근무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일차 임기를 마친 분이 잔여 65세까지 따졌을 때, 6개월이 남았다든지 1년이 남았다든지 하는 분은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 문제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6개월이 남았든, 1년이 남았든 현행 규정상으로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교장 명예퇴직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장은 명예퇴직이 안됩니다.

그러나 지상이나 여러가지는 교장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연다고 하는 보도는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법이 개정된 바는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교사의 조치계획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교사란 과연 누가 문제인가, 문제 한계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문제교사로 보는가 하는 문제인데, 첫째 문제교사의 유형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는 유형 문제입니다.

첫째는 신체·정신 건강상 결함이 있는 교원 이것은 문제교사로 보고, 두번째는 법령이나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람 이것은 문제교사다, 이렇게 봅니다.

세번째는 공사 생활을 통해서 물의를 야기시킨 교원, 이것도 문제교사다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문제교사를 분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조항인 신체·정신 건강상 결함이 있는 교원은 심하며는 당연히 의원면직을 해야되고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요양을 하며는 괜찮을 것이다 할 때에는 휴직을 시키는 방법, 여러가지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두번째 법령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교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징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징계조치를 할 것입니다.

세번째 공사 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사안의 내용을 검토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이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들의 해외 교류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분야만 한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주시하고 청주시 관내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일본 돗토리시 하고 교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류하게 된 경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 돗토리시로부터 청주시청으로 인적·문화적 교류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와서 거기에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서 돗토리시, 청주시청 여기에서는 민간교류, 문화적 교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주시 교육청과 돗토리시 교육위원회간에" 교육에 관한 교류를 하자" 합의를 봤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서 '88년부터 교류를 실시를 했습니다.

제일 첫번째는 '88년 7월 25일서부터 7월 28일까지 3박 4일동안 일본 돗토리시에 있는 국민학교 어린이 36명이 청주시를 방문했습니다.

과정은 더 말씀을 안드리고, 몇 명이 왔다 갔는가 청주시내 27개 국민학교 학생 185명이 일본 돗토리시를

방문했고, 일본 돗토리시 국민학교 어린이들 178명이 청주시를 다녀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돗토리시에서 청주시에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는 민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고에서 지원한다든지, 어느 단체에서 지원하는 일이 없고, 민박을 했고, 다만 일본서 여기를 온다든지 한국서 일본을 간다든지 할 때 항공료는 청주시 어린이나 돗토리시에 있는 국민학교 학생 모두가 다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가 13만 863원이 됩니다,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질문한 내용, 어떤 득이 있고 실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그 이점, 좋은 점은 국제 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집을 떠나서 다른 데 나가봐야 그때서 한국이 좋은 것을 알고, 자기 집이 좋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상당히 우리에게 득이되는 문제가 아닌가, 또 세번째는 외국어를 우리가 습득하는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우리보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더 잘 살읍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지나친 동경심' 만약 이런 것을 갖는다면 차라리 안간것 만 못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전 지도가 있고 그렇지 않도록 유념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문제점의 두번째는 일본가며는 여러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으니까 '아 우리보다 참 잘산다' 이래서 위축이 된다든지 비아정신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며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전 사후 지도를 통해서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권혁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립, 그러니까 국립학교에 초·중·고 근무교사가 교감 강습 대상자로 차출시 우대되느냐 안되느냐, 우대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차출시에 문제점,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연령과 교육경력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국민학교 경우 '93년 지명자입니다

저희들이 지명한 최하위자 연령이 46세이고 교육경력이 23년 10개월입니다.

제일 경력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원대학에서 지명한 사람은 어떤가, 연령이 45세 그러니까 한 살이 적습니다.

또 교육경력이 어떤가 23년입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

중등에 같은 경우는 공립 지명자가 최하 연령이 45세, 교육경력이 19년 10개월입니다.

그러면 국립에서는 어떤가 47세, 그러니까 여기는 거꾸로 나이가 두 살이 더 많습니다.

교육경력은 18년 7개월입니다.

교육경력은 2년2개월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연령이나 경력은 대동소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무엇인가, 수급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지명을 받아도 다시 공립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립에 잘못하며는 너무 많아서 임용에 지장을 가져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리 국립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공립학교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감 강습 대상자 차출시 차출권, 지명권을 교육감님에게 권한을 넘겨달라고 하는 것을 교육부에 수차 건의중에 있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종전과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교원, 교육대학, 그러니까 국립

대학 부속 국·중·고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거기서 너무 지명을 자꾸 많이 해 가지고 양산을 해서 공립으로 보내지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러지 않도록 문서를 보냈습니다.

언제 보냈는가 하면 초등교직으로 '93년 1월8일자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제목은 교사의 국·공립 교류 개선안입니다.

내용은 국립으로 전출희망자 추천을 할 때에, 저희들이 추천할 때에는 국립학교에서 5년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1년이나 2년돼서 거기가서 경력이 높기 때문에 바로 강습이 지명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학교에서 공립으로 올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공립으로 전입을 할 때에는 근무만료전에 자격지명이 됐다고 해서 바로 공립으로 전출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립 부속 국·중·고에 있는 근무 선생님은 교감 강습 지명이 차출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공립으로 오려고 해도 저희들이 안 받아 준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5년 근무 만료돼서 자동으로 나올 때 한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겠다, 이래서 전입을 통제를 하므로 해서 금년 현재는 이 공문에 의해서 월곡국민학교에서 4년된 분이 지명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 동의를 저희가 안했습니다.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다시 '94년 지명을 거기서는 못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 받죠.

이렇게 행정 조치한 바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립학교로 가며는 점수도 따고 차출도 되니까 2중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수와 차출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점수가 높으니까 차출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떼어서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국립으로 전출되며는 거기는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규정 8조에 의해서 교육부 지정 학교에 근무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점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차출 문제는 그 해당 학교에서 최고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차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쪽을 주고 한쪽을 안준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제동을 걸 수 있는 문제는 국립에서 강습 지명을 해서 공립으로 넘어 왔을 때, 나중에 임용후보자 명부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는 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 취급을 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다 이겁니다.

똑같이 점수 기준에 의해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원 전보문제, 아까 교육감님께 질의하신 세가지 내용중에 첫째 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 전보시에 참말로 일반 교사가 거기에 참여 하느냐, 또 참여한다고 하며는 목적이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사.....

● 권혁풍 위원

그 문제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그것 하나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 권혁풍 위원

예, 교육감님이 직접 하실 것입니다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그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올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초등교육국 소관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 부의장 김광수

'93학년도 취학아동에 관한 향후 관계가 초등교육국 소관이 아닌가요?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취학업무는 행정과 의무교육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 부의장 김광수

학교장 중심의 자율 행정에 있어서 원래 교장은 임지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879명의 그 교장중에서 임지에 상주 안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서 그 뒤에 통계를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의다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계가 잡히는 대로 다음회기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예, 먼저도 이 관계가 한번 질문도 나오고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임지 상주한다는 것을 지금하고 옛날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교통편이 좋아져서 그 군내에 있는 것 하고, 또 학교 소재지에 있는 것 하고, 또 옥천·대전 같으면 대전서 교통이 자기 차를 가지고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 것인가.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상주 개념문제, 교통통신 발달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상주개념 문제도 저희들이 다시한번 재정립 시달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되셨습니까 ?

다음 이상일 위원.

● 이상일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극 추진하는 방향에서 사고문제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책임문제가 교장선생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의지가 약화되는 것 같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해결해서 조속하게 설치되는 쪽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저희도 설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이상일 위원 끝나셨습니까 ?

● 이상일 위원

예.

● 의장 김영세

이재희 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 이재희 위원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문제교사 유형을 세개로 분류하셔서 적의 조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첫째, 신체정신 건강상 결함이 있는 자는 휴직을 권고하고 법령상·복무규정상 위반한 사람은 징계 조치한다, 또 공사 생활중 물의를 야기한 것은 상응 조치한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령이나 복무 위반자 징계는 당연한 것이고, 제일 문제가 교사들이 노령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중풍이라든지 이런 병으로 인해가지고 수업 결손, 또 교사 배치 이게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예퇴직제도 있고, 또 휴직도 상당기간 인정을 해 주니까, 학교 교장이 직원들 잘 이렇게 해서 학기초에는 수업이 불능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엄격히 휴직 조치를 하든지 권고 사직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신체 정신상 결함이 기준이 애매하다 이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상당히 딱하기 때문에 동정도 가지만 우리 충청북도 1년 예산은 알뜰하게 쓰고, 유용하게 써져야 되는데, 이 신체정신상 결함 문제도 어떠한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인사규정에, 그래서 적의 조치하는 것이 우리 교원들 품위나 교권 확립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문제가 공사 생활중 물의를 야기하는 사람들도 기준이라는게 애매한데 사실 앞으로 공무원들 봉급을 인상한다고 하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저런 사람들 월급을 또 올려준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지만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3항 공사생활중 물의를 야기하는 사람들의, 이것은 당

장 권고 사직 시킬 수도 없고 어떤 법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슬기롭게 취해져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한일 교류 현황과 그 득과 실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봤는데,상당히 불평을 하는게 인솔교사 선생님들이 일본교사 선생님들이 일본사람들은 한국어를 모르는데, 우리 한국 선생님들은 일본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거예요, 애들 보는데.

그러니까 애국심이나 주체사상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된다.

심지어는 애들보는 데도 일본가서 어떤 회식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일본노래를 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학생들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해외여행을 했을 때는 아주 공식적으로 통역을 쓸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일본어를 알드라도 학생들 보는데는 통역으로 이용을 하고 또 설령 일본 노래를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 보는데는 그런데서 일본 노래를 하지 않도록 아주 엄격히 지시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권혁풍 위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혁풍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공립학교와 국립학교의 사이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수급문제, 그 자격 점수문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차출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나왔다, 그러면서 학교에 대해서 좀 적게 차출해 달라는 공문을 띄우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공문을 띄우시면 적게 차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는 것을 하나 묻고, 또 하나는 국립학교하고 공립학교끼리 서로 순환근무가 불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천상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또 순환이 되는데 무엇때문에 어떤 근거하에서 국립학교 근무하는 선생은 점수를 더 주는지, 물론 법에 있다고 하면 그만이겠지만 그런 법이 타당한 법인지 무슨 국립학교 선생님은 다른 딱지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닐텐데 왜 특혜를

줘서 위화감을 조성해서 그러지 않아도 진작되지 못하는 교사의 사기를 더 저하시키고 하느냐 이런 현실을 놓고서 교육청 당국에서는 교육부에다가 '이 좋지 않은 법은 고쳐달라는 그런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올릴 생각이 없으신가, 두가지를 질문합니다

● 초등교육국장 홍영장

예,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문을 발송하므로써 차출할 때 숫자가 줄어도느냐 안줄어 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감 강습 대상자나 교장강습 대상자 차출하는 것은 비현직율 위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임용이 되지 않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비율입니다, 퍼센트이죠.

교장의 경우 10%, 교감은 15%선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비현직율.

그리고 그것을 상위해도 안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되는 것입니다.

예비자원을 갖도록 되어 있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냄으로써 아까 한 사람 저희들이 부동의 했다고 했는데 부동의 했으므로써 그 학교의 자격 소지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거기서 다른 사람을 또 지명을 못합니다.

비 현직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지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숫자를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두번째 말씀이 계신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어째서 국립학교 부속 국·중·고등학교는 점수를 주느냐 하는 문제는 현행 법상 점수를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기 근무만 하기 때문에 점수를 주는 것이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학교들은 교육부 지정 학교와 똑같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학교 주제를 설정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개정을 할 필요

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됐습니까 ?

● 이재희 위원

예.

● 의장 김영세

초등교육국 다시 추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잠시 침묵)

예, 그러면 홍영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제일 먼저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체육청소년부 업무를 타부처로 이관할 경우 보통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체육청소년부의 업무가 그냥 그대로 문화체육부로 이관되었고 거기는 법률 제4541호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1993.3.6.)로 인해서 옮겨 졌습니다.

그러나 학교 체육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종전과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의 과별 모집정원과 입학생수는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그 통계자료를 유인물로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6개 농고 중에서 앞으로 충주·제천·청주 3개 농고는 시지역으로써 순수농고로써 육성을 해나가면서 그 농고 세 학교는 도시 농고로써 육성을 해서 여러가지 교과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학교의 농고는 농공고등학교로써 변경 운영해서 공과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천농고는 금년도부터 정보 통신과 두 크라스를 설치를 했고, 영동농공고등학교는 작년, 재작년에 기계과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은농공고는 화공과를 세 학급을 설

치를 해서 농공고등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복수 교감제는 현행대로 현행법상으로는 복수 교감제를 배치할 수 없는 사정을 말씀을 올립니다.

현행 법규상으로 봤을 적에는 42학급 이상, 그래서 저희들 도내에서는 현재 기계공고하고 충북상고 야간부 산업체 특별학급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두 학교만 복수 교감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보은농고의 자연농과는 정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는 계속 운영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영동농공고는 이미 축산과는 폐과 조치를 했습니다.

3명 밖에는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폐과 조치를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94년도부터 농촌은 이 교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먹는 식품가공과나 농기계과나 또는 농업유통 정보과나 이러한 새로운 방향으로다 전과를 해서 학생들에 대한 유인책도 있고, 또 앞으로 2세교육 농업 정책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도 양성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수학생들에 대한 유치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에는 충주학생 교통사건에 대해서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3월 20일날 00시 30분에 충주산업대학 앞 열차 건널목에서 그러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은 밤에 03시 15분에 도교육청 당직실로 전화를 해서 당직실에서 아침 08시에 제가 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 협의를 갖고 바로 저는 충주로다 출발을 해서 생활지도담당 장학관님을 모시고 충주에 가서 봤더니, 충주에서 이미 2개 병원에 갈려서 사망자 4명, 기사 1명 해서 5명에 대한 것은

건대부속병원 영안실에 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안은희 예성여고 3학년 학생, 이숙효 2명하고, 충주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문영, 충주공고 3학년 학생 장기철, 기사는 27세로 진성철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서병원에 입원중에 있는 중상자 한상락 충주고등학교 3학년, 이재영 충주고등학교 2학년, 전순기는 충주고등학교 3학년, 이정범 학생은 예성여고 3학년, 학생 4명은 호서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로서는 앞으로 불구가 된다든지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긴다는 그런 염려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고대책반 위원이 설치가 돼서 부군수님이 위원장님 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위원님이 가담을 해서 거기에 충주교육청 교육장님도 협력이 되고 해서 앞으로 원만히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사망자에 대해서는 우선 중원군 군청에서 1인당 30만원씩, 그 다음에 생존자에 대해서는 20만원씩 우선 지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충주시내 교장선생님과 학생들 교직원으로 해서 내일 충주시내 중등 교장 월례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통해서 이웃돕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부 대책을 강구하고 왔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앞으로 그런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위원님들 한테는 보고말씀을 못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장학과에서 협의하고 도 윗분들하고 다 협의가 돼서 앞으로 저희들 도내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심야 조조 자율학습은 금지시키고 다만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는 심야 학습을 금지시키고, 그 지역에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을 해서 막차를 이용하는 그 시간까지만은 허용한다고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것이 대개가 청주시내에는 10시 50분에서 40분경, 그 다음에 충주는 10시 15분으로 알기 때문에 대충 10

시나 10시 30분까지는 자율학습은 끝나는 것으로 우선 조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충수업의 철폐문제, 또는 보충수업의 철폐문제가 나온다고 하며는 자율학습도 자연적으로 해소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지금 저희들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서 고입선발고사에 있어서의 중학교의 내신성적을 지금 반영할 것을 연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보충수업하고 자율학습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재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교추 관련 교사 제천·단양지역 집중 배치 이유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월 6일날 교사 선언 서명자가 시군별로 말씀드리면 청주시는 22명, 청원군 7명, 충주·중원 9명, 제천·재원군이 46명입니다.

옥천군 3명, 영동군 9명, 음성군 17명, 괴산군 8명, 보은군 9명, 단양군이 23명, 진천군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날 현재로써 153명이 교추위에 가담한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제천시 제천군만 46명, 단양군 23명으로 봤을 적에 본도 전체 153명 중에 45%를 양 군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 봤을 적에는 그 양군이 전부가 다 철회 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천·단양군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천·단양군에 교추위에 관련되는 선생님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돌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남게되고, 이런 실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선생님들은 다 철회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 미 제출자는 초등에서 1명, 중등에서 7명 해서 8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새정부 출범으로 사회전반에 개혁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바, 교권확립을 위한 문제 교사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병약하다든가 또는 교직의 수행능력이 없다거나 또는 과음,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서 수업을 할 수 없는 교사는 현재까지는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차후로 이런 문제교사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우선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가나 휴직을 권유를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권고를 해서 그러한 선생님들은 바로 바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사항, 전교추 징계대상자의 처리에 일관성이 없다는 여론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전교추 관련 징계대상자 처리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은 제천 중앙국교에 박종순 선생님, 그 분은 도 지부장입니다.

그래서 '92년 9월 16일자 해임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에 있어서는 지역위원장으로 해서 다섯 선생님이 계십니다.

충주여중에 이호태 선생, 중앙여중에 오항균 선생, 청풍중학교에 양석진 선생, 내북중학교에 성방환 선생, 삼성중학교에 임항순 선생, 이렇게 다섯분 중에서 '93년 3월 15일자로 다 이호태 교사는 해임 조치를 했습니다

그 해임 조치한 이유는 3차에 걸쳐서 징계위원회에 출두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개전의 정이 없고 끝끝내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3차에 걸쳐서 출두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해임 조치를 했고, 오항균, 양석진, 성방환, 임항순 교사는 징계위원회에 출두를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교추위에 가담하지 않고 오로지 교사로서 교단에서 학생들 지도에 충실을 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반성의 여지가 나타났고 했기 때문에 이 네분 선생에 대해서는 견책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살펴봤을 적에 처리과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좀 잘못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최송합니다.

그 다음에 한일교류 학교의 현황과 실적 분석결과의 득과 실에 대해서 중등국에 해당하는 것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제천지역 고교가 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는 고등학교가 '85년부터 일본 동북지방 궁성현 학생들과 교류를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년 인솔자 2-3명, 학생 10-12명씩해서 상호 방문을 실시하는데 '92년까지의 실적을 보며는 일본 방문에 있어서 인솔자가 21명이고, 학생이 84명이 실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온 학생들은 인솔자가 25명이고, 학생이 96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여상이 '88년도부터 일본 조추상고하고 교류를 시작을 해서 매년 인솔자 2명, 학생 4명씩 해서 상호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도까지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일본 방문이 인솔자 8명, 학생 14명, 이렇게 실시를 했고, 또 한국을 방문한 일본 사람들은 인솔자가 6명, 학생이 12명이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는 수학여행단 학교방문자 해서 아마 인솔자가 대여섯명이 되고 학생이 80명씩 이렇게 수학여행 차원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며는 제천지역은 친선도모, 상호 문화의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청주여상은 역시 친선도모와 상호 문화의 이해하고 기능 비교입니다.

상고끼리의 교류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주산이나 타자, 주로 주산에 대한 기능 친선 경기대회도 실시를 하고, 그래서 제가 충북상고에 일선에 있을 적에도 저희들 학교에 와서 친선 주산경기대회를 실시한 사실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경비부담 문제가 있고, 학생간에 위화감 우려도 있고, 또 제천지역이 그렇습니다.

청주여상은 의사소통이 좀 어렵다.

그 다음에 경비부담 문제가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은 '교류의 규모나 내용이나 학생선발, 경비 조달방법등 교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 더 철저한 지도가 있어야 겠다' 이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업계 고교생 장학금 지급 및 수업료 면제자 현황을 우선 말씀올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은 공업계는 전체 인원이 1천 644명에 1인당 지급액은 10만원에서 41만 2천원,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지급총액은 1억 8,380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계는 1,041명으로서 역시 10만원에서 40만원, 1인당 지급액은요.

총 1억 7,590만 5,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계는 1,350명으로써 1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3,500만원, 그래서 토탈 4,035명에 4억 9,471만 3,000원의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것이 뭐냐하며는 수의 비율은 전체 2만 8,471명의 14%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수업료 면제자 현황은 공업계가 1,841명에 1인당 감면액은 20만 8,000원에서 51만 2,000원, 그래서 공업계는 6억 1,375만 8,000원, 농업계는 749명에 22만원에서 51만 2,000원 선입니다.

그래서 2억 2,866만 5,000원, 상업계는 641명으로써 32만 3,000원에서 51만 2,000원, 그래서 2억 8,766만 3,000원 그래서 51만 2,000원은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급간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토탈 3,231명에 11억 3,008

만 6천원이 총액이 되고 전체에 2만 8,470명에 11%에 해당이 됩니다.

실업계 고교에 급지별 연간 수업료 납부액은 이미 다 아시겠지마는 1급지 가지역은 공립이 51만 2,400원이됩니다.

나지역은 22만 6,800원, 2급지에 가지역은 21만 9,600원, 나지역은 20만 7,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제에 개인당 지급액이 약간 차액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시군 종합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설립 근거와 성격, 규모와 예산 운영 방법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자료실이나 컴퓨터 실이 각 지역교육청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학기술 교육을 진흥시키고 또 변화되는 그러한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한 그러한 과학실과 컴퓨터 실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센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독립기관이 아니고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지 않은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설립 근거와 성격에 대해서는 우선 근거는 지역교육청 과학교육자료실, 이것은 '83년 문교부 지시이고 컴퓨터 센타로써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87년 문교부 지시에 의거해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데 지역교육청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과학자료실이나 컴퓨터 센타를 통합해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이 넓고 쾌적하고 또 거기에 출입이 편리하고 또 초·중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준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 지역에 중심되는 중학교의 부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는 9월달에 인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건립이 다 되고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며는 교육청의 자료실과 컴퓨터실에 있는 것을 전부다 쓸만 한 것은 이전을 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그 학교의 교사, 컴퓨터에 조예가 깊으신 선생님, 과학에 조예가 깊으신 선생님을 충원을 해서 배치를 해주고 그 선생님이 그 학교에 정과 수업 일부를 맡으면서 오후에는 그 과학실을 와서 관리하는 그러한 체제를 저희들은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에 대해서 이미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탐구학습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실험실습에 효율화를 올린다는 것 하고 과학하고 컴퓨터 연구 및 과학교육 활성화의 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규모와 예산에 대해서는 일층에 대해서는 과학실험실을 2실을 만들고, 준비실 1실, 전시실 1실 해서 이것이 472㎡입니다.

평수로 말하면 143평, 그 다음에 2층에는 컴퓨터실 2실, 준비실 1실, 기계실 1실 해서 472㎡에 143평 그래서 944㎡에 286평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동당 건축비를 4억, 내부시설비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기자재를 활용을 하되 더 첨단으로 갈을 수 있는 새로운 기자재를 구입한다 하는 뜻에서 1억해서 5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지역에 일동씩을 건립을 한다고 하며는 5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5동을 건립하고, '94년도하고 '95년도 이렇게 해서 3동, 3동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운영 방법은 우선 과학교육 자료실에 국교사 과학실험 연수, 과학교구 및 학습자료 보급, 과학영재교실 운영, 이동과학교실 운영, 주부과학교실 운영, 관내 학교에서 과학실험실 확충이라고 하는 그런 운영방법을 가지고 있고, 컴퓨터실은 교사 컴퓨터 교육연수, 소프터웨어 보급 및 활용 지도, 학교 컴퓨터실 운영 지도, 컴퓨터 동호인 크럽 개방, 관내 학생에게 개방하고 관내

학교에서 기재를 활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시실은 수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질문하신 설치 배정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북부, 중부, 남부를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실시를 한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충주, 그 다음에 영동하고 보은은 교육청의 규모가 작고 하기 때문에 보은·영동 남부를 2개하고, 중부 괴산하고 청원도 역시 교육청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은 규모를 우선해서 중부, 남부, 북부로 배정 기준이 되어 있지, 뚜렷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다고 하며는 현 교육청에 공간이 협소한 곳부터 우선해 준다.

그 다음에 교사 및 학생의 활용도가 높은 곳에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설치 근거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이상 답변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박병해 위원님께서.....

● 김사수 위원

과학교육원 이전 관계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과학교육원 이전 관계는 제가 답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로 연구도 하고.....

● 김사수 위원

그럼 어디 소관입니까 ?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이전 관계는 관리파트 소관이라고 보는데요.

● 의장 김영세

김사수 위원님 답변 받으셨습니까?

● 김사수 위원

있다가 누가 하실 것인가요 ?

● 의장 김영세

보충질문은 나중에 하시고.

● 김사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빠졌으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과학교육원의 이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지금 얼키고 설킨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말씀 드리기는 죄송하고요, 이것은 관리 파트하고, 저희들 과학기술과 하고, 또 윗분들 하고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해결이 돼야 될 문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외람되게 답변말을 못드립니다.

● 김사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영세

답변하시는 나세웅 국장님 한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돼서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15시 37분)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세웅 국장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시 답변을 계속해 주시죠.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계속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병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일인일운동과 전원 체육에 대한 일반화 보급 실적과 운영 상황을 밝히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첫째 일인일운동 운영 상황에 대해서 세가지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정과수업 종료후,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일인 일일 1시간 이상씩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고, 종목 선정은 학생 자신의 취미에 맞는 종목을 선택해서 개인 및 크럽을 조직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담당 체육교사는 훈련장 시설 및 체육용구를 정비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체육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전원체육 운영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체육수업 시간을 준수하고, 수업 시작 후 8분내지 10분간 순환운동을 꼭 실시하도록 오늘 교감회의에서도 전달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연 2회에 실시하고, 세번째는 학교별로 주 4회, 1회 20분간 중간체조를 전학년이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네번째는 전학생이 참여하는 교내 단축 마라톤 대회를 1년에 4회 실시하도록 하고, 다섯번째 매년 교내대회 시군 그룹별대회·시군대회·도대회로 연계되는 학교간 경기대회를 일반 학생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 실적은, 일인일운동 보급실적은 국민학교는 실시학교 수가 311개교고 종목 수는 16종목입니다.

중학교는 110개교에 20종목, 고등학교는 72개교에 21 종목입니다.

전체는 493교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전원체육 보급 실적은 순환운동은 국민학교는 158개교에 중학교는 89개교, 고등학교는 61개교해서 308교, 생활체육대회는 국민학교 111교, 중학교 56교, 고등학교 32교 해서 199교, 중간체조는 국민학교가 311교, 중학교 110교, 고등학교 72교로써 493교, 단축 마라톤 대회는 국민학교가 210교, 중학교 78교, 고등학교 69교해서 357교, 학교간 경기대회는 국민학교 311개교, 중학교 110교, 고등학교 72개로써 493교가 학교간 경기대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 체육교육을 일반학생 위주의 전원체육교육을 강화할 것이고, 일인일운동이나 전원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육교구 및 체육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시설과 교구를 항시 개방하여 생활체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고, 선수 육성은 각 지역 또는 연맹·단체에 따라 위임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병해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각급학교의 학생 운영도서와 교사용 도서비 지급 상황과 각급 학교의 장서 현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장서 보유 기준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학급당 국민학교는 100권 이상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는 120권 이상, 고등학교는 150권 이상으로 이렇게 되

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첨가해서 중학교는 교당 500권 이상, 고등학교는 교당 600권 이상을 보유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의 현황은 국민학교가 41만 9,000권이고, 중학교는 20만 4,000권, 고등학교는 21만 5,000권 해서 83만 8,000권을 보유하여야 하나, '92년 6월 30일 현재 장서수는 국민학교가 77만 5,000권, 중학교가 46만 2,000권, 고등학교가 38만4,000권으로 해서 162만 1,000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는 200%가 넘고 있습니다, 실제 기준량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학교별로 신설학교 하고 시지역의 일부 대규모 학교가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장서를 확충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는 불필요한 그런 도서, 이미 낡았고 학생들로서 읽기가 어려운 또는 곤란한 옛날 서적은 전부 다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폐기 처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기 처분하고 앞으로 학생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도서라고 확실하게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학교의 평균 보유량을 말씀드리면 국교는 급당 184권, 교당 2,460권, 중학교는 급당 271권, 교당 4,200권, 고등학교는 급당 267권에 교당 5,485권으로 이렇게 평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 가 넘기 때문에 장서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각 학교의 현황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복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고 다음에는 권혁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충주시 제2외국어 자유선택 시범지역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이 고등학교에 제2외국어 과목을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외국어를 배울 수 없었던 것을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진 외국어를 자유롭게 선택케 하여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학습 효과를 높여 다양한 외국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황은 실시 지역 및 학교가 충주시 일반계 고등학교로서 충주고등학교, 충주여고, 예성여고, 대원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선택과목은 5개 제2외국어로써 독일어, 불어, 에스파니아어, 중국어, 일본어 입니다.

선택방법은 각 학교에 5개 제2외국어를 모두 가르치게 하고 학생들이 희망에 따라서 1과목을 자유선택 하도록 했습니다.

교사배치는 순회지도제 운영을 이용해서 제2외국어 5개 교과의 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순회지도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문제점은 학급 편성 및 학교 운영이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순회지도 교사에 대해서 교통불편등 근무부담이 가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무학교의 각종 학교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동료의식의 결핍으로 소외감을 받는다고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학교관리자, 교장·교감 각 순회 교사의 자기 학교 배치를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러한 세가지의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써 문제점을 최소화 시킨다고 하는 뜻에서 학생 희망을 1, 2, 3 지망까지 조사해서 학급 편성을 하도록 해본다, 그 다음에 이동수업을 해본다, 그 다음에 순회지도 교사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수업시수 및 일반 사무분담을 각급 학교에서 경감을 시켜준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수당지급 해서, 교통비 입니다.

작년서부터는 많은 돈은 주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월 3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 그런 개선책으로써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말씀을 마치고, '93년 주요업무 계획중에 포함된 것 중 고교입시제도 개선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사항으로써는 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의 평준화와 해체, 이것이 '88년 5월 20일날 교육부에서 주관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교 평준화 제도 개선방안 협의회 개최가 '90년 8월 14일날 교육부 상황실에서 시도 중등과장 및 관리과장, 교육부 관계관이 참석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후 청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 간담회를 저희들이 '92년 3월 30일날 본청 상황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추진안 작성을 작년 12월 30일날 했고, 그 다음에 개선 추진안 발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3년 1월 5일날 언론사 기자를 통해서 교육감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송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청주시 일반계 고교 교장 간담회를 '93년 2월 5일날 상황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주시, 청원군 소재 중학교 교장·교감·교사 학부모 간담회를 2월 25일날 청주시 교육청 상황실에서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설명을 갖었습니다.

그 때 학교측에서 27명이 참석을 했는데 언론기자 3명, 도 관계자 5명 그리고 각 학교에서 학부모님이나 육성회 임원님이나 교장이나 교감이나 교사중에서 참석을 해서 27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안 설문조사를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3월 6일날 중학교 32개교, 교사·학부모·학생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말씀이고 그 후로 저희

들이 추진할 것은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것을 연구 검토를 한 결과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해야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다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앞에 말씀 나오신 보충지도나 자율학습 이런 것이 없는 사회가 되고, 또 학생들 한테 많은 시간을 부여해서 자기 소질을 계발할 수 있고, 자기 취미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기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 또 독서의 기회도 충분히 주는 것 이런 것 등등을 지금 깊이 생각을 해서 중학교의 내신성적을 어느정도 반영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까지만은 말씀을 올려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교입시 제도 개선의 추진사항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하고도 츄라이를 지금 하고 내려왔습니다.

약간의 앞으로 어떤 조그만한 변화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 질문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로운 창조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시책은, 우선 '93년도 교육시책 구체화 방안, '93년 2월입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 도덕성 함양과 민주시민 교육의 실현,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개선과 능력의 신장 과학기술교육의 충실, 교육여건의 개선 이렇게 다섯가지 사항이 시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거기에 따라서 가정이 지역사회의 교육적 진흥을 제고시킨다.

두번째 도덕성 함양과 민주시민 교육 실현에 있어서는 활동 체험을 통한 건전한 학생문화를 형성시켜 나간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 개성과 능력의 신장에는 노작학습, 토의학습 등으로 학습방법에 대한 전환을 꾀한다

과학기술교육의 충실에 있어서는 대전 엑스포 관람, 즐거운 교실 운영을 통해서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진흥을 도모해 나간다.

그 다음에 교육여건의 개선에 있어서는 항시 말씀하시는 쾌적한 수업 환경 조성, 과학기술 실험 실습 이행 과학영재 발굴에 주안점을 두고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및 대학입시 제도 개선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개인의 수월성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활동, 학교신문 제작, 교지 발간, 학생활동 종합 발표회등 발표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해마다 교지·문집·학교신문을 심사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활동의 민주화를 통한 토의문화 형성과 각종 수련활동을 통해 호연지기를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6개 청소년 단체에 학생 한사람이 어느 단체인가를 꼭 한 군데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92년 수학능력 시험실시 결과 분석 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입 수학능력 시험을 작년 12월 9일날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실시한 것에 대해서 역시 다시 한번 반복돼서 설명이 되겠는데요, 언어는 71문항, 수리탐구가 75문항, 외국어 영어가 25문항, 작문이 9, 그래서 9점, 체력검사가 20점 해서 2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실시 후 결과분석은 청주 일반계 고등학교는 '92년도는 70.52점 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76.25점으로써 증감 5.73 점수가 증이 됐습니다.

기타 교는, 청주시 이외의 기타 교는 '92년도에는 65.65점수인데, '93년도에는 62.60으로써 약 3.05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로 나누면 '92년도에는 68.1이고, '93년도에는 66.4로써 통합해서 봤을 적에는 1.7점이 낮아 졌

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청주 일반계 합격점은 남자가 '92년도에는 105점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은 147점이었습니다.

'93년도에는 남자가 134점이고, 여자는 143점, 그래서 남학생은 29점이 올랐고, 여학생은 4점이 떨어진 통계상으로 봤을 때에는 작년도에는 남학생들이 역류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응시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떨어진 학생들이 청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역류현상을 가져왔다.

그래서 역류 현상을 막고, 참말로 대학에 꼭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가야할 것 아니냐 해서.....

● 권혁풍 위원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점수가 올라가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출제한 의도가 제대로 결과에 나타났느냐는 결과분석 얘기입니다.

점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 결과분석에 있어서 우선 통계적으로 그런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중학교 교과 과정에 준해서 영역별로 고르게 출제가 됐다, 청주시 일반계 고교의 평균점은 전년에 비해 5.73점이 높아졌고, 기타 지역은 3.05점이 낮아졌다, 고입 수학능력 시험은 단순 지식이나 암기 위주를 탈피해서 종합적으로 사고력과 이해에 중점을 두어 교육현장의 학습방법 전환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다고 보고, 이것이 앞으로는 좋은 효과가 기대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책으로써는 '92학년도 교수 학습 방법의 전환 연찬회를 4회에 전문직·교감·교사 1,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교수학습 방법 개선 연찬회를 2회에 1,000명을 예정을 하면서 장학협의시 동계수업을 통한 현장지도를 더 강화해 나간다,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연구원과 협동으로 해서 문제점, 또는 여러가지 앞으로의 금년도 출제에 대한 분석을 더 세심하게 해서 좋은 방

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원 교사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 도에 과원 교사는 총 93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가 31명, 과학이 16, 체육이 7 교련이 1, 가정이 15, 농업이 13, 제2외국어 7, 교육학이 3, 이렇게 해서 93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원이 생기다보니까 수업시수에 균형이 위배되고, 비전공이 유사 교과를 담당함으로써 지도 소홀이 우려됩니다.

거기에 대책으로써 저희들은 부전공 출신을 위한 자격연수 실시로 인해서 수업시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복수교과 지도능력 배양으로써 교원·교사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연수를 실시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사회과는 윤리를 맡게 하고, 농업은 기술로다 전환을 하고, 과학은 수학으로다 전환을 해서 그 과원교사에 대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원교사에 대해서 인사 강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 학교별로 정원 조절상 T·O 감이 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있어서는 교장선생님과의 의견에 의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재배치 하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마는 강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T·O 감인 경우 갈 곳이 없는 경우, 현임 교에다 유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과원교사 야영장 배치, 이것은 정부의 파견 억제이기 때문에 파견을 금년도부터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근무 적성 및 기능 소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약간명을 과년도서부터 해온 그런 인원수만 파견 근무를 시켰고, 금년도에 과학과의 선생님들은 한 명도 각 지역교육청에 파견 근무를 안시켰습니다.

그 파견근무를 안시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93명의 과원

에다가 금년도에 31학급이 증이 되는데 따라서 193명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정원 동결로 인해서 증원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과, 공업 계열에는 임시교사, 즉 전임강사로 해서 21명을 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고교 취업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연도별 운영 현황은 '90년도에는 학급수가 28학급에 학생수는 1,420명 거기에 전공과는 상업·공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42학급에 2,011명이 됐고 역시 상업과 공업입니다, 과목은.

'92년도에는 48학급에 2,218명이고 거기에는 상업·공업·의상 이렇게 세가지 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45학급에 1,92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형태는 자체로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위탁해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교육기관은 옥천공고 부설 청주·충주·충북직업훈련원 사회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년도별 지원 현황은 국고에서 지원한 것도 '90년도에 지원학교 7개교에 1개교당 2,000만원씩 해서 1억 4,000만원 지원했고, '91년도에는 3개교로써 역시 2,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지원 했고, '92년도에 6개교로써 2,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직업과정 이수자 1,254명중에 상업계 724명이 취업이 92.7%로 됐습니다.

공업계 379명이 취업이 되어서 우선 99.2%가 취업이 됐습니다.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인력 양성에 도움이 됐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학생들이 우선 대입 선호 사상으로 직업과정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서 인문계고등학교 안에서 직업과

정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대책으로 써는 진로교육 자료를 제공해서 직업 선택 교육이나 직업과정 운영 성과의 홍보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식 전환을 해서 일전에도 18회 임시회의 때 질의 응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은 학부모에 대한 교육, 그 중에서도 어머니에 대한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전환시킨다는데 주력을 두겠습니다.

학교별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형항공기 대회 운영의 교육적 효과 부작용 유무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형 항공기 대회 운영은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주관으로 해서 청소년 과학경진대회의 개최 종목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대회에서 선발을 해서 전국대회에 참가를 해야 하고, 거기에서는 공작 기능과 날리기 경진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군본부가 주관하고 지역대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급학교 희망자에 한해서 참가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도 예선대회를 해서 공군 3579부대 주관으로 해서 거기서 예선대회를 하고 전국대회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효과는 노작학습을 통하여 과학적 창의력 신장과 탐구력 함양에 기여한다고 보고 항상 저희들 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하고 짓고 만들고 키우고 뛰는 학습의 실천이라고 봅니다.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항공과학 발전의 기반조성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예견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모형항공기 공작 재료 구입비가 좀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한대의 재료비가 국교생용은 2,000원, 중·고생용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0대의 재료비를 소모하기 때문에 국민학교 학생은 2만원, 중·

고학생은 5만원이라고 하는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는 구입비 재료가 과다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써 전국대회 참여를 위한 지역 예선대회에 있고, 두 기관의 운영을 일원화 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일원화 실시가 어려운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영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혁풍 위원님이 제천야영장, 영동야영장, 음성야영장, 청천야영장 네개의 야영장에 대한 현황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천야영장은 지금 현재 정원이 2명인데, 현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91년 3월 25일날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파견교사가 1명이 있습니다.

영동야영장은 파견교사 1명, 이렇게 해서 정원 2명인데 3명 역시 여기도 '91년 3월 25일날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음성야영장은 기능직 2명 뿐으로서 현재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 7월 3일날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청천야영장은 정원이 3명이고 해서 현원 3명, '80년 7월 15일날 설립이 돼 있습니다.

지원 예산액은 '92년도에 제천야영장은 인건비 1,557만 4,000원, 운영비 6,090만 9,000원, 시설비가 1억 2,112만 9,000원.....

● 권혁풍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러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운영비는 주로 시설보수비가 전액이 다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활동내용 '92년 야영수련 인원수 입니다.

국·중·고, 대학·일반 전부 합쳐서 제천야영장은 6,379명, 영동야영장은 3,266명, 음성야영장은 681명, 청천야영장은 9,495명이 국·중·고, 대학·일반 학생들이 시설물을 이용

했습니다.

네번째 교육효과는 야영 퇴소시 소감문을 작성케 하고 협동심 배양, 공동체 의식함양, 자율성과 책임성 신장, 그리고 지도력 및 자치력 신장,

● 권혁풍 위원

그것도 됐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청천야영장은 행락객으로 학생야영장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할 계획을 당 지역교육청에서 연구중에 있어서 물색중이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2 동계 휴가중 실시된 과열과외 수업이 첫째 교육의 본질 추구와 모순되는지 알고 있으며, 두번째 감사 지적사항인 비수업 교사에 대한 수당지급 위반에 대한 대책은 세번째 앞으로의 대책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두번째에 비수업 교사에 대한 수당지급 위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번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교육 본질에 비추어서 지식교육에 편중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이나 또는 학생들의 과외 욕구를 학교내에서 소화시켜 준다 그러한 뜻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학부모의 욕구를 덜어준다고 하는 입장에서 학교장이 결정을 해서 또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장 월례회 때 이런 보충수업에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 것은 저희들도 방학기간동안 조사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25% 범위내에서 수용비 하고 판리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운영상 교장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보충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광역으로 본다고 하며는 체육활동이나 미술활동이나 음악활동도 하나의 보충수업이라고 하는 개념속에 넣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이 없기 때문에 사기를 돋군다고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 보충수업에서 수당이 남기 때문에 지급한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비수업 교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고, 또 관리수당도 아주 일전에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 교장 청주시내 회의 때 참석을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교장은 15만원, 교감 12만원, 서무과 과장 10만원, 7급·8급은 6만원, 기능직은 프린트를 해주고 수금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3만원, 그리고 기타 비수업 선생님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교장 관리수당도 절대로 인상하지 않고 작년수준 15만원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절대 없을 것으로 내다 보면서, 과년도에 보충수업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대신 사과말씀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써 권혁풍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답변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중등교육국 소관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김광수 부의장부터 하시죠.

● 박병해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 하나 빠졌는데요.

제일 먼저 한 교단지원 대책 관계를 했는데.....

(집행석에서 행정과에서 답변하겠다고 발언)

그럼 이것 다 끝나고 하실.....

● 의장 김영세

예, 관리국 소관이 남아 있으니까요.

● 부의장 김광수

질문해도 좋습니까 ?

● 의장 김영세

예.

● 부의장 김광수

청소년체육부가 문화체육부로 통·폐합이 됨으로써의 보통 체육교육에 이상이 있는가, 물은데 대해서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전국 소년체전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니까 체육부에서는 전국 소년체전을 하자고 하고, 교육부에서는 안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교육 당국에서는 전국소년체전을 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분야별로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분야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소년체전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거기에 상당한 시간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충북교육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이것을 더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등국장님 답변을 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충주학생 사고로 인해서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재 정립을 해야 할 우리들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적에 전인 교육과 각자의 소질 개발을 위해서도 그 시험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보충수업을 마칠 때가 됐다고 생각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충북교육 당국에서 교육부에 보충수업을 우리 도만 안하며는 또 문제가 있고, 손해가 가기 때문에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교육감은 교육감이 교육부에 직접 건의하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 계통은 의장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통을 통해서 전국 동시에 보충수업을 아주 철폐하는 계기가 되어야지 이것도 새정부 새한국 건설을 하면서 교육 개혁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을 새정부가 들어서서 이 때에

못할 것 같으며는 영원히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셨으면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운영의 자율성에 관해서 아까 중등국장님 말씀에 지금 현재 교장중에서는 병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서 장기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초등국장님 말씀에도 879명에 각 교장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중등교육국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인지, 없다며는 지금 현재 교장이나 교감이 병가를 내고 있는 사람이나 휴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지금 현재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그 다음에 전교추에서 탈퇴를 안한 사람이 7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대책은, 왜 탈퇴를 안하고 있는지, 이것은 제가 물은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학관 건립에 관해서는 '93년도 5개 시군에 과학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환영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5개 시군에 건립을 하는데 '94년도에 3개군, '95년도에 3개군 인데, 왜 이것은 '93년도에는 5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94년도에는 전부 하든지 해야지 3차년도에 나눌 것 같으면 기간으로 봐서 길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순위 결정은 어떻게 해서 순위결정이 됐는지 모르지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것이 또 변할 수가 있어요.

금년도에는 5개를 하는데 내년에 가서는 예산사항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는 빨리 하는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봐집니다.

재원이 아마도 교육감 재량사업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 예산을 통과시킬 적에 예산소위원회에서 이것을 못을 박았고, 전체 심사보고에서도 이것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교육감 재량사업으로 하되,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그 계획을 세워서 교

육위원회에 상의를 해서 하기로 그게 소위원회와 심사보고에도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며, 28억을 시설예산으로 하고 12억은 경상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못을 박았느냐 하면, 이것을 그냥 둘 것 같으면 교육감 단독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데나 쓰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얘기가 된 것인데 일체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와 같이 5개 시군에다가 건립한다는 것을 들었을 적에 좀 의아스러운 생각을 느낍니다.

그리고 학교에다 하는 것 같으면 그 학교에다 예산을 줘서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재량사업으로 해야 할 꼭 필요성이 있는가 이겁니다.

답변에 연구주임 한 사람이 자기 수업을 해가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286평이나 되는 큰 건물을, 또 더군다나 다양하게 여러가지를 전시도 하고 하는데 연구주임 한 사람 가지고 충분할 것인가, 세부계획이 어떻게 어느정도 되어 있는가, 이것이 많이 궁금합니다.

이런 것을 더 추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러면 다섯가지 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 폐지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아마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부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청소년 체육부에서 금년도 만이라도 실시하고 존폐 문제는 내년도에 가서 연구한다, 이번에 교육감님들도 아마 폐지하는 것을 상당히 건의를 하셨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작년과 같이 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참여하고 싶은 종목만 자유롭게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지도 폐지에 대한 건의도 지금 교육부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제도 개선책으로써 현재는 중학교 내신성적 플러스(+) 학

과성적, 필답고사죠.

거기에 따라서 모집을 할 수 있는데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는 모집할 수 있는 그런 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법제심의회가 통과돼서 국회에 상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보충지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운영의 자율성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 중등에도 병가를 내고 계신 교감선생님이 두분이 있습니다.

옥천에 동이중학교 김동인 교감선생님하고 옥천공고에 이은두 교감선생님이 허리디스크로 인해서 지금 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허리디스크이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한 인사조치 문제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인사조치를 해서 다른 학교로 보내면 다른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여러가지 저희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분간 본인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얼마 안있으면 학교로 나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최송합니다.

● 부의장 김광수

마침 어떻게 옥천에 두분만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미안하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현재 두분만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교추위 교사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명은 이미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명은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이면 처리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4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누차 츄라이를 해서 한 학교에 있는 4명이 일시에 철회각서를 제출한다고 하며는 이것은 항복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3명에 대해서만은 앞으로 끝끝내 철회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사과말씀 올리고 다만 아까 보고드릴 적에 '94년도에

3개, '95년도에 3개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당년에 3년 계획했던 것을 2년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골고루 균형적으로 배려를 한다고 하는 뜻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6개 교육청이 된다고 하면 2년동안에 다 성공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선 답변말씀 올립니다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의장 김영세

됐습니까, 김광수 부의장 답변이 됐느냐고요 ?

● 부의장 김광수

됐습니다.

● 의장 김영세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이재희 위원 말씀하세요.

보충질의는 10분 시간을 드립니다.

충분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전교추 징계대상자 처리 일관성이 없다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한 사람은 해임, 네 사람은 견책을 해가지고 일관성이 없는 질문이 잘못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 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징계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철회각서 미 제출자는 엄중 중징계한다고 해당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지시를 해서 해당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철회하도록 종용을 했는데, 이제 징계가 거의 다 끝날 것이라고 예상 했는데 3월 초에 느닷없이 다시 철회각서를 받으라는 지시가 왔다 이겁니다.

교장선생님들의 권위도 있고, 또 교장선생님들의 언행도 무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도 '다시 또, 다시 또 이게 마지막이다'하는 이것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도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학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관을 각 교육청 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별개 기관으로 하면 문제가 없지만 학교에다 설립을 하는 것이면 통합 교육청에 제천이나 제천군은 왜 팔세를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제천군수는 1년이면 시멘트를

수백포대, 또 수산중학교 교장선생으로 계시다 오신 분이 있지만 그 학교는 테니스장도 배려해 주고 그러는데 군수가 이런 얘기 들으면 제천군청 관내 학교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독립기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부설되는 것이라면 영세한 통합 교육청부터 차례를 주든지 아니면 통합교육청에도 2개를 만들어 주든지 뭔가 체계가 서 있어야지 통합교육청에서는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추위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서명각서 제출한 선생에 대해서는 가급적 회생자를 적게 내고 앞으로 신한국 건설에 동참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하는 뜻이 내포 됐다, 이렇게 답변말씀 드립니다.

● 이재희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철회각서를 안낸 데가 제천동중이 제일 많은데 제천동중 교장이 딱할 지경이예요.

아주 징계하려 하면 하고 안할려면 철회각서고 뭐고 풀어 놓든지, 교장선생님만 아주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참고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이재희위원 답변 됐습니까 ?

긴급히 보충질의 하실게.....

● 장충호 위원

철회각서를 냈지만서도.....

● 의장 김영세

지금 결부된 문제예요.

● 장충호 위원

예.

● 의장 김영세

예, 말씀하시죠.

● 장충호 위원

지금 나국장님 말씀이 전교추 교사가 전부 153명인데 146명은 철회각서를 냈다, 또 나머지 3명은 지금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4명은 곧 철회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단양·제천에 69명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전체 도내 숫자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단양교육청에 배치되었다고 얘기해도 저는 답변하실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철회각서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말하자면 우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급하니까 철회각서를 냈지만서도 진심으로 과거를 반성해서 다시는 안하겠다, 그런 내용의 각서가 돼야 될 것이고 만약에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뭐가 있다면 가차없이 처벌해도 무방하다 이런것도 담겨 있는 것인지 각서 내용이 궁금합니다.

● 중등관리국장 나세웅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철회각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항복입니다.

다시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그런 교추위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즉 본인이 항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추위는 이미 해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교육계에 있는 같은 교육동지라고 현재 현직에 있기 때문에 희생자를 최소화 한다고 하는 그러한 교육열을 가지고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철회각서를 낸 사람은 항복한 것이다.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며는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 못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7명 중에서 4명은 철회각서를 내고 3명이 또 문제입니다.

정히 안내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 장충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장항복을 경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위장항복을.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참고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답변 되셨습니까 ?

● 장충호 위원

예.

● 의장 김영세

그럼 김사수 위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 김사수 위원

예, 과학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보충질문을 많이들, 옥천에 부의장님하고 이재희위원님도 하여 주셨는데 그만큼 과학관 설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런데 중등국장님 명칭은 부설로 꼭 하시는 것이죠, 학교 부설이죠.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지금 명칭에 대해서도 종합과학관이라고만 하고 있지, 정식으로 명칭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 김사수 위원

어떻게 됐든 부설은 틀림 없어요, 부설하는 것은 틀림 없어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러니까 교육청의 과학자료실하고 컴퓨터실이 그 지역의 중심학교가 되는 학교에다 좀 확장해서 설치를 해서 교육청이라고 하는 기관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이 되기 때문에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다 하고, 또 교육감님의 방침은 교육장님한테 선의의 경쟁에 입각해서 보다 나은 설계에 의해서 보다 나은 시설물을 갖추도록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뿐 입니다.

● 김사수 위원

경쟁을 시키나마나 제 얘기는 이게 부설이냐 독립이냐 하는 것이 명확해야 되고.....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독립은 아닙니다, 부설입니다.

● 김사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재도상으로는 부설이라고 해서 어느 학교의 부설, 과학관이면 과학관이라고 해 놓고 업무의 내용은 지역의 말하자면 과학에 필요한 업무를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업무 통계라든지 또한 거기에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

설된 학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이것은 안됩니다.

관장의 자리야말로 겸임을 발령하든지 학교같으면 책임지고 할지 몰라도 제도적으로는 부설로 해놓고, 어느 중학교의 부설 과학관으로 해놓고 어디까지나 그것은 부설입니다.

그 중학교에 속해 있는 것인지, 거기다 업무는 그 지역내에 있는 과학에 관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다룬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고 해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서나마 집행기관에서 더 좀 연구를 해서 뭔가 법과도 맞고, 제도적으로 합법적이고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틀을 만들고서 이것을 해야지 내용만 좋다고서 된다 해서 이것을 하면 안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하셔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 하신 것 같이 이것은 그 중학교에 부속된 것이니까 예산이고 뭐고 부속중학교로 주지 따로 뭐하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여러가지로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더 집행기관에서 하시는 것을 못하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좋은 사업이고 하니까 제도적으로 운영의 묘를 취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 주세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감사합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 김사수 위원

그리고 예산문제인데 교육감님한테 위임한 과목이 무엇입니까, 예산관리 뭐죠 ?

(집행석에서 "예산관리사업입니다")

예산관리사업에서 꺼내는 것은 틀림 없습니까 ?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 김사수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28억이 시설비인데 다른 사업은 못하겠네요, 이것 하시며는 금년에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금년에는 25억이 투자가 되니까요 5동, 그렇기 때문에 시설사업은 그것

으로써 그치는 것이죠.

● 김사수 위원

지금 교육감님한테 위임된 재량사업에 대한 예산 40억에 대한 것은 사용계획이 서 있나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서있습니다.

● 김사수 위원

그것좀 말씀 들을 수 없어요 ?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것은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실 것으로 봅니다.

● 김사수 위원

그러면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인원 관계인데요 지금 시군에 있는 비근한 예로 도서관 관계도 아마 7명내지 8명 많은데는 13명씩 있는데 286평에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한 여러가지 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인원 확보가 문제입니다.

과학선생을 증원한다고 해도 과학선생을 지금 현재도 부족한데 증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것이 충분한 계획이 없이 이것을 첫번부터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가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이왕 좋은 사업을 했으며는 합법적이고 운영에 하자가 없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것은 될 것 아니냐' 이렇게서 부설로 한다는 것은 뭔가 미비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더 연구를 하셔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내가 김사수위원님 발언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건의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교육위원들이 현재 볼적에 과학관 설치 기준은 즉흥적으로 생각없이 미봉책으로 한 것이예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없는 것이예요.

우리가 볼 적에 이것은 독립체 운영의 목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 확실히 공공시설의 설·폐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것을 잘못 되었으면 시정해서 근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말로 마추는 식으로 하지 말아요.

교육위원들이 그것을 납득 못하는 사람이 아니예요.

그런데 뭐 교육청 산하에, 그러면 교육청에다 예산을 주지 왜 독립된 예산에 다뤄요.

교육청 부설, 현재 있는 시설에 부설된다면 교육청 예산에 주지, 왜 도 교육청에서 관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요 진지하게 답변을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점 대로 앞으로 시정해서 보완하겠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확실히 석연치 않습니다.

이것 더 검토들 해보세요.

● 김광수 부의장

그것 규정이 있나요?

● 의장 김영세

규정은 무슨 규정이 있어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무슨 인사위원회 같이 건립위원회라도 교육청 내에서 그런거라도 있었던가요 ?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앞으로 검토해서.....

● 부의장 김광수

그냥 하여야겠다는 마음에서 어느 군 어느 군 어떻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규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인사위원회 같이 건립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아주 깊이 있는게 되야 되겠는데.....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앞으로 여러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집만 져놓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의장 김영세

이것은 확실히요.....

● 부의장 김광수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네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산 낭비라고까지는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에 운영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를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연구 검토를 다 해가지고 해야지요.

집 지어 놓고 연구 검토할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것을 할 적에는 재량사업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즉흥적으로 해서야 되는거 아니지 않겠는가 봅니다.

사전에 무슨 규정도 있어야 될 테고 이런 것 할 것 같으면 혼자 둘이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전문인들 상의를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그런것이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협의는 있었습니다.

● 의장 김영세

우리가 볼 적에는요 순서는 설치 조례서부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지금 같은 즉흥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는 엄청난 오류를 범할 것을 충고해 줍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 박병해 위원 순서로 돌리겠습니다.

● 박병해 위원

아까 도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제가 학교를 다녀본다든지 조사한 것을 보며는 그 실정을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서실이 있는데 도서실을 활용을 안하는 학교, 거의가 다 일률적으로 다 같습니다.

그리고 학급 문고라고 해서 제도상으로 그 학교에 되어 있는데 학급 문고로 활용하는 학교는 불과 몇 학교 되질 않아요.

조사가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라 작년 9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와 있어요.

또 교사용 도서 같은 것은 그 경비를 지출한 것을 보니까 교사용 교과별 지침서 사고는 딴 것을 살 도리가 없어요.

전혀 교사용 도서를 살 경비가 없어요.

다만, 청주시에서 교단경비나 학급당 경비중에서 아주 목적사업비로다가 조금씩 나눠 준게 있어요.

그거 외에는 거의가 교사용 도서라든가 학생용 도서를 사기 위해서 뭔가 구상한 것은 거의가 뵈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 지출에서 보면 도서 구입을 해서 지출한 흔적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위에서 내려와서 도저히 보지 않으면 안될 수 없는 그런 월간지, 신문 구독료, 이것으로 전체가 다 나가있어요.

군 전체를 한번 따져 볼 때는 제일 적은 데가 구독료가 2만원서부터 5만원까지랍니다.

이것을 5만원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한 3만원이나 3만 5,000원이라고 생각하는데도 1년간에 그 학교의 도서비는 학생도서, 교사도서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거기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의 현 실정을 봤을 때 애들한테 읽힐 책, 선생님들 한테 읽힐 책, 이것을 안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과연 이것을 교육청 당국에서 그러한 실정을 알고 있는 것이냐, 참 답답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학급당 경비나 교당 경비나 이런 것을 사용한 것을 보니까 일상경비를 충당하는 데도 급급하고 있어요.

거기서 절실하게 느끼는 '학생들 눈을 뜨게 할 귀를 틔게 할 이 책은 안 샀습니까' 하는 얘기를 나올 수가 없어.

거기서 뭐를 어떻게 감하고 뭐를 어떻게 해서 책을 사게 할 것이냐.

전혀 대책이 서질 않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앞으로도 방치해 둬도 되겠느냐, 금년엔 특히 책의 해인데, 그래서 도서실을 봤을 때 학교장이나 도서 담당자나 이 양반의 소신과 어떤 성의가 부족한 것이 자기 학교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을 타개할 만한 어떤 대책이나 윗 사람들한테 요구하질 않고, 요구한 사실도 없어요.

또 도서 교원들도 자기가 인수 말

아서 그 다음에 인수를 할 때까지 그럭 저럭 넘어갈 작정만 하지 책을 정리를 해서 어떻게 아이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제공할 대책이나 성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청주시내에 한한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책 숫자적으로 100권이나 120권 150권 학급당 그런 것을 볼 때는 초과되어 있다, 아까 질문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들어가서 봐도 쓰지 못하는 책자가, 특히 교사용 책자같은 것은 전체가 다 못쓰는 책이예요.

옛날 30년전에 사놓은 책, 잃어 버리면 잃어 버리는대로 그래 새로 나오는 신간도서가 교사용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읽혀야 할 책이 무척 많은데 옛날 고본을 해마다 숫자에 집어넣어서 보고하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는 학생용 도서나 교사용 도서나 기준 초과가 200%나 됐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도교육청이나 군장학사 이런 분들이 학교에 가서 정말로 교육적으로 필요한 도서가 얼마나 있느냐, 학생들이 얼마나 이것을 읽고 있느냐, 교장이 얼만큼 성의껏 하고 있느냐 하는 그 실태를 가서 한번 들어가 봤느냐 말예요.

책을 많이 학교에 넣어서 학생들에게 장래를 위해서 읽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이지마는 경비가 부족했던 성의가 부족했던 간에 저는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에 육성회비를 보며는 도서비라고 하는게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학생회비 안에.

육성회비가 다 합쳐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비라는 명목으로 육성회비 안에 5%는 과학비로다 설치하라는 강력한 지시 때문에 도서경비라고 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서 전혀 힘을 못 쓰게 되었어요.

이렇다고 하며는 육성회비에 도서비라고 하는 것을 10%면 10%, 이렇게라도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해마다 도서비를 가지고서 학생들한테도 읽을 책을 희망조사도 하고 교사들한

태도 회망조사좀 해서 활발하게 도서를 많이 읽히는 학교상이 돼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학생용 도서나 교사용 도서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도서구입비를 정기적으로 금액이 우리학교는 이만한 돈은 도서를 살 수 있다, 또 구독료나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책도 달리 세워주는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도서는 항상 자꾸 조사를 하러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금년 추경에다가 학급당 5만원씩 세워줬습니다.

아주 불행중 다행한 일인데, 5만원 가지고는 도서를 제대로 읽히는 도 아이들한테 그런도 형태의 아이들한테 따라 가려면 전도가 요원합니다.

5만원 가지고는 턱도 안닿는 얘기요, 지금 선생님들 한번 따져 보세요 5만원 가지면 책 몇 부를 사느냐, 그 학교의 학급당 5만원이라고 하며는 책 몇 권이나 사서 그것 읽다보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대책에 관한 것을 한번좀 되묻고 싶고, 앞으로 도서를 더 얼마나 살 수 있는 방안이 정말로 없는 것이냐, 또 고본처리도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작년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진천군에 모중학교에서는 고본 정리를 하는데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고본정리를 했어요.

동창회, 육성회, 문화원 이런 사람들한테 전부 협조를 얻고 돈도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그 고본 정리하는데만 해도 엄청난 인원이 들었어요.

그러한 실정인데 책 권수만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안일하게 그냥 둘 것이냐, 이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되묻고 싶고, 또 하나는 체육관계를 아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체육관계 같은 것은 금년에 나온 것을 보면 작년에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을 해서 그 부분에 관한것이 거의가 금년 시책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마라톤 대회를 하는 학교가 400 몇 학교 등등 여러가지 숫자가 많이 나왔어요.

일인일운동 종목을 해서 하는 학교가 493개학교, 308학교 여러가지 나왔는데, 아직도 쓸 데 없이 숫자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통계하며는 이것으로 통과되는 이런 시대는 지금부터라도 바로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왜 자꾸 전원 체육에 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점심시간에 나와서 도수체조 조금 하고서 '전원 체육했다'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반대적인 증명을 하나 해보면 여기 시내 학교도 마찬가지고 변두리 군청 소재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보세요, 한번.

교내 들어가보면 운동장가에 그 학교 선생님들 차가 죽 늘어서 있습니다.

축구를 제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차가 하나나 견딜 수가 있나.

유리창 매일 깨져서 거기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원 체육을 정말로 얼마나 하나, 봉명중학교에서부터 남중으로해서 시내 한 바퀴를 몇 번 돌아다녀 봤어요.

방과 후에 아이들이 과연 운동을 얼만큼씩 하는 것인가.

그 학교 지정 종목을 하는 것 외에는 놀다 가는 애들 뿐이예요.

운동하는 애들은 없어요.

놀다가는 애들 뿐이예요.

그 학교에서 금년에 나온 시책대로 다 1학년은 6시간 끝나면 6시간서부터 7시간 끝날 때 까지는 운동하고 간다, 또 2학년은 7시간 끝나고 8시간까지는 운동하고 간다, 가는데 기준은 어떻게 돼야 한다.

그 때 그 시간에 교무실에 남아 있는 선생님들, 같이 그 아이들하고 운동을 한다면 그 양반 한태도 좋고 아이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하는 학교 하나도 볼 수도 없고, 그건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뚱뚱하고 조금만 어디갖다 세워놓으면 자빠지는 애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전원 체

육이라고 하는 것을 요새 잠꼬대 하는 소리만 매일 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어느 가정이든 제대로 아이들 단속하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생활지도도 안하고, 이렇게 전원 체육이라는 것을 안한다면 또 한다고 하면 '생활지도도 무척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전원 체육에 관한 것은 새로온 체육과장님이 바로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이다음 기회에 전원체육에 관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각 학교에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답변하시죠.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러면 학교도서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누차 공문을 발송해서 불필요한 것은 교장 재량껏 폐기처분 하도록 여러번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체과에서 통계 잡은 것도 폐기처분 하고서 현재 있는 장서의 통계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용 도서비 지급 사항이나 도서구입비에 대한 예산에 관한 사항은 관리국 행정과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급당 경비속에서 이것은 교장선생님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의지속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고등학교 입시 제도를 개선한 출제 방향을 개선한 것도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중학교의 전인 교육화한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작문고사에 대해서도 폐지해 달라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꿋꿋하게 책을 읽는 기회를 많이 주고 독서를 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작문시험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며, 어떠한 제도개선이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작문고사는 계속 실시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 또 금년도에 사서교사에 대한 자격연수를 초등 80명, 중등 40명 해서 점차적으로 사서교사

자격을 연수시켜서 사서교사를 각 학교에 전부 배치하는 방향도 지금 연구하고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에, 됐습니까, 박위원님.

● 박병해 위원

이것은 도서관계 같은 것은 지금까지 얘기 했어야 중등국장이 답변할 성격의 분량은 얼마 안되요.

그렇고 다만 독서를 할 수 있는 어떤 여러가지 시책에 관한 것이나 국장님이 하시고, 경비문제 같은 것은 답변할 수도 없는 것인데, 다만 초등이나 중등 양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자기 소관에 관한 문제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으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산 편성이 되는대로 그대로 그저 떳 마디 하다 말지 가령 도서나 체육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그저 당면한 문제 이렇게 하고 말지 장래를 위해서 애들한테 책을 많이 읽혀야 하겠는데 현재 나와 있는 경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알며는 도서를 살 수 있는 경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둬야하지 않겠느냐.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개라고 하며는 따는 것은 투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말예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영세

집행기관에서 잘 참고하시고 보충질의 시간은 10분간을 아주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 위원 질의하시죠.

● 권혁풍 위원

예, 제가 몇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앉아서 질문하는데 연세도 높으신 국장님이 서서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하셔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이유가 저희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공무원이시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는 '퍼브릭 써븐트(a public servant) 즉 공복이다' 하는 그런 자세, 즉 월급을 받기 때문에 주인한테 그렇게 한다는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다시 보충질문 드리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야영장 관계입니다.

야영장에 제천·영동·음성·청천을 보니까 전문직·일반직이 전혀 없습니다, 청천 빼고는.

그러면 전문직도 없고 일반직도 없는 이런 야영장, 별정직 그저 있고 하나씩 기능직 있고 더구나 음성야영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직 둘 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야영장에다 예산을 얼마나 투입합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여기다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숫자를 보니까 음성야영장 같은 데는 고등학교 학생, 대학교 일반학생 포함해서 지난해 681명이라는 상당한 숫자가 와서 이용을 하고 갑니다.

이럴 때 거기에는 호수도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기능직 보고 책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T·O 는 있는데 현원이 없고, 기능직 두 사람을 맡겨 놓고서 '그 방대한 야영장을 운영을 한다' 이래서는 그 사고를 교육감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모르겠고, 만약 이런 돈이 없어서 혹은 T·O를 못얻어서 못한다며는 될 때까지 폐쇄시키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혀 사람도 주지 않고 야영장 이름만 붙여놓고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창조성 배양 교육인데, 지금 말씀이 나왔습니다.

책읽기니 책의 해니, 전원체육이니 또는 '93년도 주요업무 시책, 아주 화려한 정책들이 많이 나열 돼 있습

니다.

그런데 모두가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은 그저 눈감고 아웅하는 인상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창조성 배양 교육이 전혀 되지 않는 이유가, 주범이 보충수업에 있다고 봅니다.

전혀 학생들한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정규수업시간 주고 보충수업 두시간 하고 보충자율학습 다 하면서 학생들을 심지어 12시까지 끌고 있으면서 무슨 책을 읽으라고 하며, 전원체육은 무슨 전원체육을 합니까.

그런 화려한 시책들이 어떻게 구현이 됩니까.

자율화 활동이니 뭐니 전부가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단언을 안드릴래야 안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도야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도만이라도 심기일전해서 말로만 창조성 배양하고 고등정신 능력하지 말고 이번에 충주에서 큰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학생들한테 전인교육의 차원이 그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수학능력 평가의 결과를 말씀드려 달라고 했더니 점수 올라간 것 갖고 말씀하시는데 점수 올라간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제할 때 수리탐구를 종전과 달리 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다른게 없다고 합니다

즉 수리탐구 하며는 어떤 생활문제를 연관을 져야 합니다.

토대가, 문제가 생활에서부터 출발이 돼서 통합 교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수리탐구가 별로 다른게 없다고 하는 그러한 분석 결과가 모 언론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발전이 있는 것입니까.

언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읽기 독해력은 거기에만 편중이 되어서 쓰기라든가 말하기 듣기는 전혀 평가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언어할 것 같으면 말하기·듣기·쓰기·짓기

이렇게 드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 있는 절름발이 평가가 대번에 무슨 큰 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 그래도 뭔가 변화가 왔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무슨 말만 수학능력 평가라는 이름을 붙여서 될 것이냐.

작문도 상당히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도가 어느정도 있어서 기준이 뚜렷이 있어서 채점을 할 텐데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 기준이 돼 있는지, 그런 것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보충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는데, 답변자료를 보니까 전부가 학생들 희망에 따라 한 것으로 보고 학생들이 전폭 교과도 희망하고 모두 희망했다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전교생이 다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특히 비수업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우리의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사계에서 해당이 되고 감사시정의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시정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지난 겨울방학 실태를 보니까 중학교가 111개교 중에서 보충수업을 안하는 학교가 18개교 밖에 없습니다.

93개교가 하고 있고, 고등학교가 70개 고등학교 중에서 47개교가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교장 수당을 30만원 이상을 주는 학교가 여섯 학교가 되고, 비수업 교사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한 지적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시정의 의무사항을 갖다가 지키지 않고 있다 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보충수업을 묵인해 주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은근히 조장해 주는 그런 기분도 나는데 실례의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답변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시제도 개선에 관해서 여러가지 절차를 많이 밟아서 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강원도 교육위원들 세분이 여기 오셔서 저희들하고 여러가지 대담을 나누고 가셨습니다.

강원도를 보니까 거기서는 평준화를 완전히 철폐를 했는데 지금와서 뜻밖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회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아무런 마찰이 없고 차질이 없는 그런 좋은 제도가 만들어 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답변하여 주시죠.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우선 야영장 인력 관리에 대해서 음성야영장은 설립한지가 얼마 안되고 현재 정원 동결령으로 인해서 정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은 그 학교에서 인솔하는 교사하고 음성교육청에 근무하는 담당 장학사님으로부터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또 본 교육청의 사회체육과 담당 장학사님이 가서 도우는 그런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 동결이 좀 해제되고 그렇게 되며는 자연히 해결될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말씀 드리고 지금 전인교육은 참말로 이것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 져야 하고 현 실정으로 봤을 때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학능력 테스트로다 전환한 것이 고등정신 능력을 길른다, 조금이라도 길른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어느정도 년수가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학능력 평가에 있어서도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고심도 많이 하고 연구원에서도 출제에 있어서 참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 술갈에 배부른 게 아니고 해서 연구원에서도 지금서부터 벌써 금년도에 그 출제에 대한 연구를 해서 '93년도에는 '92년도의 그 출제보다 더 나은 발전적인 그런 출제를 모색

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낫게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문 채점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작성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수업은 저희들이 수없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고 희망학생에 의해서 희망 교과에 의해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전부 희망학생들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볼 수 밖에는 없는 형편이고 이것도 역시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시 방향이 완전히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서울이나 인천에서는 이미 그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해서 지금 불원간 국회에 제출이 되는 것으로 수일전에 제가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으시며는 보충수업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입시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문제서부터 또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 이런 것을 지금 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불원간 시일이 지나며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수립이 돼서 일선에 시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정도로 해서 제가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최송합니다.

● 의장 김영세

권혁풍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더 보충 필요 없으십니까 ?

● 의장 김영세

예, 없습니다.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장충호 위원님 질문은 관리국 소관이시죠.

그러면 중등교육국 소관 더 보충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0분)

(17시 32분)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취학아동 변동추이와 이에 따른 대책 관계에 대해서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학년도 취학아동 수는 '91년도 '92년도 대비해 보며는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에는 203명이 감소를 했고, '93년도에는 92년도에 비해 674명이 감소한 1만 9,075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취학아동 수 감소 현상은 사회의 구조와 산업의 발달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경에 따라 이농현상이 심화되어서 농촌 인구가 많이 떠나기 때문에 심각한 농촌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학생수는 감소 추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합리적인 통폐합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 면에 1 학교가 되지 않을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앞으로는 1개면에 1학교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 면 소재지에 중심학교라고 할 수 있는 존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농촌 이농현상이 조금이라도 완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부의장님께서는 본교를 분교로 격하하지 말고 바로 폐지하는 것이 교육과정 운영상이나 예산 운영상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촌지역의 학교가 소규모화 됨으로 인해서 폐지함에 따른 이러한 문제는 교육과정 운영상이나 예산 운영상 바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학교가 설립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협찬을 해서 부지를 희사했다든가 해서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 학교의 폐지 문제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지역주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며는 바로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그것을 추진해서 분교로 격하를 하고 지역주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는 아울러서 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교장으로 격하되어 있는 학교에 대한 편의시설, 즉 화장실이나 급수시설등 이런 편의시설을 폐교로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이나 급수시설등 이러한 편의시설은 재학생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수리를 할 필요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5년전에는 농촌학교에 이농현상을 최대한 막아보기 위해서 정부시책에 의한 것입니다마는 농촌지역 학교에 여러가지 시설을 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의미하게 돌아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폐지가 전제된 학교라하더라도 화장실이나 급수시설등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단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실정을 고려해서 신중히 조화를 이루도록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복식 학교 현황과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답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복식 학교 학급 현황은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선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매년 해소하며는 생기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3복식 학교를 없애기 위해서 그 기준을 하향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하향문제는 뭐냐하며는 현재 3복식을 15명 기준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7명으로 하향해서 운영토록 하고 또 통폐합을 추진하고 고학년은 본교로 통학토록 해서 3복식 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청마분교장 문제는 옥천교육장께서 '94년도에 통폐합 할 것으로 수용계획을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도 수용을 해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통폐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수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고 이상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위원께서는 중학교 졸업생이 고교 진학에 있어서 고교 정원이 남·여 불균형 하기 때문에 여학생이 경쟁시험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다, 또 아울러서 청주지역에 고입 선발고사의 합격선이 남학생은 134점인데 비해서 여학생은 143점으로 9점이 높은데 이에 해소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며는 도내 중학교 졸업자의 남학생은 97% 여학생은 83%만이 진학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여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

니고 지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여자가 수용률은 지원자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데도 지원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졸업생만 기준으로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년도까지 도내 남여별 평균 지원을 분석해 본 결과 남자는 재학생을 포함하여 99.7%, 여자는 87.9%를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7%의 지원률 격차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률로 분석해 보며는 남자는 지원자의 20.7%가 탈락하고 여자는 40.9%가 탈락되는 실정으로 여자가 20.3%정도 불리한 실정이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대로 11.8%의 격차는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청주지역 고입 선발고사의 합격선이 남학생은 134점인데 비해서 여학생은 143점으로 9점이 높은데 이에 해소방안은 없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주시내 인문계 고교의 여자 수용률 부족은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가 외국어고등학교하고 예술고등학교등 학교로 개편된데 따른 이러한 불미사항이 다소 나타났습니다.

아울러서 국가가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업계 학교의 확충 계획에 따라 여자 인문계 학급을 증설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와의 불균형이 심화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을 계획에 의해서 현재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청주고등학교, 세광고등학교, 운호고등학교를 각각 1학급씩 감축시켰고, '94년도에는 청석고등학교, 청주신흥고등학교를 각각 1학급씩 감축하게 되면은 남·여 간에 수용률의 균형이 어느정도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

고 박병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시책 구체화 방안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해 위원님께서는 교수학습 자료 구입 지원과 관련하여 간접적인 지원을 제외한 직접적인 교육비 지원 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떠하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교단중심의 지원체제 확립을 위해서 책걸상이나 컴퓨터등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비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재 교구 학습자료 구입비는 학교 교급당 경비에서 매년 10%를 증액 지원함으로써 학교장 재량하에 학교 특성이나 형편에 따라서 교재 교구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 교육비중에서도 컴퓨터나 과학교구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비는 저희들이 별도 필요 여부를 작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의 해를 맞이해서 국민학교는 급당 3만원, 중학교는 급당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서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이것은 초등국이나 중등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내려서 저희들 한테 예산 신청을 하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매년 추진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박병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권혁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풍 위원님께서는 '92년 9월 이후의 각 교육청 기탁성금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93년 2월 28일 현재 본청을 포함해서 각 지역 교육청에 기탁금 성금 현황은 165건에 1억 2,323만 7,000원이 접수되어 있고, 그 사용 내역은 학교 운동부지원, 운동회 경비지원, 도서비, 장학금, 행사비, 교재교구 구입비 설비등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먼저 회기에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문제점을 말씀 드리며는 찬조금품은 교육청에 본인이 직접 접수시켜야 하기 때문에 거리상·시간상 번거로움이 있어서 성금 기탁이 종전에 비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조자가 이름을 밝힐 수가 없고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찬조의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학교의 운영은 찬조금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 이후에 찬조금품 접수가 학교에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육성회비를 어느정도 현실화 해서 그 대체 효과를 거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그 부족액을 보전하여 주므로써 학교 운영에 있어서 공교육비에서 지출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조금품 접수가 본인이 직접 교육청에 나오셔서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감소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안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혁풍 위원님께서는 출장비 지급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출장비 지급실태는 기관별로 또는 직원들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심하고 동일교에서 조차도 교장·교감·교사·서무의 여비 지급시 산출금액에 대한 타절 비율이 일정하지 않아서 불만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급 기관별 부서별로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기관 실정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비 지급실태는 출장지나 출장 목적에 따라서 다소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목 요연하게 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에 있어서 직급별로 차등이 있는 것은 국내여비규정에 의거해서 5등급으로 직급에 따라 구분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직급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종전에는 일부 학교에서 예산 형편상 타절하는 등 여비지급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요근래에 와서는 예산 사정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아울러서 업무용 교통비가 학교별로 30만원 나가는데 교장선생님 몫으로 15만원 교직원 몫으로 15만원이 월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옛날같이 여비를 타절하는 이러한 경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강조 하는 뜻에서 여비지급은 국내여비규정을 준수해서 적정액이 지급되어 출장목적이 달성되도록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위원님께서는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실태와 학교안전공제회가 결산 후에 공제가입 회원 학교에 대해서 결산보고가 잘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선에서 안전공제회 운영상의 차질이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 드리면 '92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실태는 가입대상 회원 학교수가 495학교에 495학교가 전부 가입을 해서 미가입 학교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90년도의 예산 총액은 5억 8,902만원이고 '92년도에 저희들이 지급한도액은 최고 3,000만원하고 최저는 소액이라도 당장 지급하도록 재작년에 도출됐던 문제점을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안전공제회는 운영을 개선해서 한동안 초창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여러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별다른 얘기는 없고 지금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안전 공제회 결산 후 결산보고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시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92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세입·세출 결산은 학교안전공제회 정관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 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하고 다음 정기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90년도 '91년도 결산 후 입니다.

'91년도 결산서는 '93년 2월 22일 대의원 정기총회에 보고가 되어 있고 또 '91년도 결산 및 재조정 배정내용과 '92년도 결산예정 내역을 3월중에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배부를 하면서 회원인 교장선생님만 내용을 아실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혁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마치고, 장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충호 위원님께서는 교육부에서 폐지 학교의 매각 계획에 대해서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매각 계획이 확정되었으며는 그 내용을 보고해달라는 말씀과 3월 1일 현재 폐교학교 수는 몇 개며, 향후 연도별 예상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 폐지학교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보도 내용은 저희들도 보도가 되는 즉시 교육부 관계 부서에 알아봤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현재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4월중이면 결말이 날 것으로 보는데 가장 중요한 골자는 폐지학교에 대해서 일반인 한테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교육부에서도 지금 진용이 다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급까지 발령이 나고하면 모든것이 정상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 1일 현재 폐지학교 수는 몇개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993년 3월 1일 현재 저희들 도내에 폐지학교 수는 54개교입니다.

이 중에 학생야영장으로 6개교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종합생활관으로 1개교, 교직원 휴양소로 1개교로 자체 활용이 8개교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준 학교가 16개교입니다.

그리고 현 상태로 관리하는 학교가 27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도별 소규모 학교 폐지학교 수는 저희들이 3년간을 현재 추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94년도에는 7개교, '95년도에는 8개교, '96년도는 8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2회에 걸쳐서 상황을 다시 점검을 합니다.

과연 폐지가 되는 것인가, 수용계획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매년 2회에 걸쳐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말씀드린 대로 '94년도에 7개교, '95년도에 8개교, '96년도에 8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중호 위원

그리고 제가 전담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인의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는데.

● 관리국장 김근학

전담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재원 형편상 가능하며는 직원 배치를 안하려고 합니다.

직원을 배치하며는 인건비나 여러가지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현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리면 현상태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폐지학교가 27개교인데 여기

에 대한 관리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사택이 있기 때문에 사택에 거주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게 해서 그런 학교가 두군데가 있고,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관리비를 한 6만원씩 월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관리를 해달라, 저희들이 그렇게 한 곳이 11개교가 있고 또 인근학교에 기능직 공무원이 폐지학교에 있는 사택에 거주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9개교, 그렇지 않는데는 지금 매일 출퇴근 하면서 관리하는 데가 5개교가 있는데, 이 5개교도 저희들이 위탁비를 지급한다든지 해서 관리하도록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말씀 드리는 과정에서 과학교육원 이전 관계에 대해서 김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과학교육원이 당초에 이전할 당시부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창동에 있던 과학관을 매각해서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과학고등학교와 과학교육원이 같은 부지에 있는 것이 활용도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활용도는 높을지 모르지만 일반학생들에 대한 활용도는 시내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목적을 저희들이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마는 또 이사업을 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개 추정금액이 한 100억이상 막대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시일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여러위원님들한테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청주기계공고가 이전이 되든 어떤 결말이 나며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학생회관내 약 3,000평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그곳에 설립을 한다하면 대지값도 많이 안들고 또 학생들

의 활용도도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가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제가 직원들하고도 과학교육원을 옮긴다고 하며는 그러한 곳으로 구상하는게 좋겠다, 그러면 학생회관하고도 연계해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막대한 재원이 들기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재원도 마련해서 그러한 과학교육원을 적지에 옮겨서 여러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리사업의 확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의 교육감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관리사업비가 4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사업비는 70%인 28억이 되어 있고 교육과정 운영비 등에 쓰이는 것은 30%인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관리사업비는 과학관 5개 이외에는 정확한 것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일선 학교 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며는 그 때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그러면 관리국 소관 보충질의 하실 분 말씀하시지요.

아까 발언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몇가지만 첨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본교에서 직접 학교를 폐교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교사 수급 계획도 역시 문제가 따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것이 어떤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통학버스가 지금 현재 몇 대가 되며, 그 운영 실태는 어떤 것인지 또는 학생이나 부형들에게 어떠한 호응을 받고 있는지 이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학교만 취학아동 관계

때문에 폐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중학교도 폐교의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봐지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본교에서 직접 학교를 폐지할 시에 교사 수급계획은 어떠냐는 말씀이셨는데 교사수급 계획은 저희들이 폐지 신청이 들어오면 인사 부서인 초등국과 긴밀히 연락을 해서 교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교로 환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잉여 교사에 대해서는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는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실태와 학부형들의 호응은 어떠냐는 말씀이셨는데 현재 통학버스는 5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는 폐지되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통학버스에 의해서 통학을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운영실적이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학버스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지역사회나 본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봉사행정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지원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만 통폐합 되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 폐지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나 하는 말씀인데 중학교 폐지문제도 상당히 신중을 써야할 부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촌 면소재지 하며는 영세한 중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행정적으로만 처리 못하는 것은 농촌지역에 있는 영세중학교가 대부분이 사립학교 입니다.

사립학교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교육위원님들께 보고를 이미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수용 관계 때문에 학생수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상당히 어려웠을 때 사학에다가 학교를 설립하도록 상당히

권유를 해서 웬만한 조건만 닿으면 반 강제로 떠맡기다시피한 실정입니다.

지금에 와서 학생수가 줄어서 검토는 충분히 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걸 폐지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그 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행정적으로만 처리를 못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때문에 여러번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그 분들한테 재산을 다시 돌려주면서 폐지시키는 방향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도 회의가 있다든지 할 때는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그분들도 예우 차원에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는 좀 큰 학교로 학생들을 수용을 해야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사회성 개발도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급히 처리해야 될 과제로 알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중학교 사립학교 같은 것은 폐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 평준화 관계 때문에 여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 관리국장 김근학

예, 그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준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에서 모든 학교시설이나 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요건만 어느정도 하며는 전부 떠 맡겼어요.

지금와서 그분들 학생들 좀 줄었다고 해서 학교를 폐지한다고 하며는 국가에서 신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재산처리 관계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부의장 김광수

공립은 학교 학생이 줄어들고 할 것 같으면 교사수급 관계가 교육청에서 인사이동이 되는데 사립학교는 학생 수요가 줄어들며는 거기에 있는 교사들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

● 관리국장 김근학

교사들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우선 지원을 하면서 교사들한테 불이익이

안가게 하면서 저희들이 공립에서 받아들이는 방안도 검토가 되야 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되셨죠, 그 다음 보충질의 이상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 이상일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학생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모든 교육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남·여 평등 원칙에 입각해서 여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다음 이재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

● 이재희 위원

예, 지금 도내 3복식 수업을 하는 학교 수가 몇 개나 되고 연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관리국장 김근학

지금 도내 3복식 하고 있는 학교는 충주 성남국민학교 동신분교등 11개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소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복식 학급편성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통폐합을 추진하고 고학년을 본교에 통학토록 추진하고 있는데, '94학년도에는 동량국민학교 서운분교를 제외한 10개교에는 3복식이 해소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재희 위원

됐습니다.

● 의장 김영세

김사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

● 김사수 위원

없습니다.

● 의장 김영세

박병해위원 말씀하세요.

● 박병해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교재교구 구입비는 학교당 경비 학급당 경비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또 책걸상이나 그외에 큰 문제같은 것은 상당한 액을 지원해 줬다, 도서비는

양국장이 요청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세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교단지원이라고 하는 '교단지원 우선' 이말은 벌써 교육부에서부터 귀가 따갑게 듣는 것인데 그동안에 우리도의'교단지원 우선'이라고 하는 그 항목중에서 교단지원을 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을 따져보면은 과학과를 지원한 것, 그리고 책걸상 무슨 수세식 변소 여러가지 교육 모든 환경을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주력을 둬서 해왔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교단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본다고 하면 학생들 한테서 선생님들이 알으키는 교단 그 자체가 교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 외곽에 있는건 참 많이 투자를 해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알으키는 책장을 가지고 애들한테 알으키는 그 교단에 무엇을 지원해 줬느냐, 아까 답변에 학급당 경비 이렇게 운운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 교장이 아무리 재량권 운운해서 그 경비 가지고는 각 교과의 자료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되질 않아요.

이것이 된다고 하면 어디가서 훔쳐오는 방법 밖에는 없을 꺼예요.

그런데 우리도의 실정으로 봐서는 모든 환경 시설을 그만큼 해줬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정말로 교단지원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왔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내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나 또는 장학지도 방향이나, 예산 편성하는 방향이나 이런 전환기가 이제 와야 된다.

만일 이것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은 우리도내 교육은 참말로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 볼 때 가령 국어과 영어과 지리과 역사과 과학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목 담임선생님들이 장학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맨손수업 하지 마라", "노작교육 해라" 요 몇해전서부터 교장이 그런것을 강조할 수도 없고 장학사들이

강조할 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국어과 하면 국어과에도 1학기동안에 열과목으로 되어 있다면 열과목 과목마다 전부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가지고 들어가야 할 교재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각 교과들의 교재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입사항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심방을 해서 '선생님들 교재실에 한번 안내좀 해주십시요' 안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는 대뜸 보이는게 과학실만 보여요.

과학실은 그동안에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쓰는지 안쓰는지는 몰라도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렇게만 가지고 들어가서 실험실습 한다고 하면은 아주 충분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국어과 선생님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타교과 선생님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그 전에는 방학때 괘도라도 만들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것도 안만든다고 해요.

어느 국민학교에 가니까 단매괘도를 요즘 것으로 사서 좋은 것으로 하나 싸놨어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전학년이 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사서 점차적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마저도 위에 비닐종이만 찌개져 있지 활용을 안했어요.

북일국민학교 같은데 가보면 칠판서부터 모든게 아주 잘되어 있어요.

전도내가 그렇게만 교재교구를 마련해서 한다면 좋은 교육이 될 것이다, 이래 생각이 들고 국민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즐거운 공부방 개방 이런것은 어디가든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재실은 전연 실력 향상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양 국장이나 부교육감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큽니다.

학부형들은 실력 향상을 위해서 아이들을 보내놓고 알지 못하니까 얘기를 못하는 것 뿐이예요.

맨손수업으로 그냥 가서 어물어물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지적을 안할 뿐이예요.

과학만 그냥 죽자고 해놨어요.

그리고 외곽시설은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 환경속에서 공부하는 그 알으키는 선생님이 가지고 들어가야 할 것은 무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전혀 답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모 학무과장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이렇게 교재 교구가 전혀 준비가 안되는데 어떻게 맨손수업이나 실력 향상을 하라고 하느냐, 요즘은 교장도 그렇고 장학사도 그렇고 나가서 선생님들한테 뭐 이런 것좀 사달라고 하고 뭐 이런 것좀 가지고 들어가지 안하느냐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문제인데 여하간 제가 근심한 나머지 어떻게 생각이 되었냐 하면은 우리 충북교육의 실력 향상에 정말로 헛점이 들어나고 있고 또 수위가 아주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맨손수업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비를 어떻게 충당해 줘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부교육감이나 양국장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각 교과선생님들의 맨손수업이 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과학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상으로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그런데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재교구의 비용을 청주교육청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단경비 학급당경비 이런데서 아주 목적사업으로다 얼마큼씩 떼어서 제일 많이 내놓은 것이 교재교구 수리비 이런 명목으로다 돼 많이 학교에

다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각 교과의 비용같은 것은 조금씩 해봤는데 그렇게라도 각 교육청에서 과학과를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은 교과가 과학과를 빼놓고 열 몇과 이상 적어도 열다섯과 이렇게 되는데 그 과목을 다 교재교구를 갖도록 한다면 과학과 지원하는 것 가지고도 안될 것이예요.

한참 더 많은 경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지원 대책은 어떻게 갖을 수 있는 것이냐.

● 관리국장 김근학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시책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교단지원이 우선 되어야지 않겠느냐.

교단지원이 우선 되어야만 실력이 향상 될 것이다, 또 앞으로의 장학지도 방향도 이러한 데로 전환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선의 교단에 교재교구 이런것이 지원이 되어야만 명실상부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나 현장교육이 잘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교육환경 외곽시설쪽에 많이 치중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와서는 외곽시설도 어느정도 다 된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이 진전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투자 방향도 일선 교단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비 특별회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고 또 여러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조일석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방향을 전환해 볼까 합니다.

● 의장 김영세

박위원님 되셨죠 ?

● 박병해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요즘 외곽시설이

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한 경비를 내가 얘기하는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것은 양 국장님이나 부교육감이 정말로 우리도내 실력향상을 위하고 교육질을 높이는데 생각을 달리해서 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다음 권혁풍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예, 제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기탁성금에 관한 말씀인데요, 기탁금이 대학에는 상당히 장려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교육 체제에서는 이게 금지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기탁금을 성질별로 분석을 하면은 세가지 정도로 분석을 합니다.

첫째는 아주 순수한 기탁 의사가 있는 것, 이것은 어느정도 거액이 되겠죠.

이럴 때는 거리가 멀고, 교육청에 바치는데 거리가 먼다든가 시간이 많이 든다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재경인사가 천만원의 돈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겠다 하는 사람이 교육청의 거리가 멀어서 못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순수한 의사가 있는 분들, 반대 급부를 바라지 않는 심지어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숭고한 교육의 의지가 있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문제, 주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거리가 멀건 시간이 얼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의 것은 상당히 장려를 해서 그 분의 이름도 반대를 하

지 않는 이상 이름도 내주고 혹은 감사패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장려를 하는 쪽으로 혹은 세제지원도 어떻게 한다든가 뭔가 반대 급부를 그 쪽에서 원치를 않지만 어떤 장려 차원에서 이러한 좋은 시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첫번째 아주 순수한 기탁의사가 있고, 두번째는 시골학교 운동회라든가 혹은 기타 여러가지 행사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내는 기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액에 속하겠죠, 뭐 2-3만원이라든가 5-6만원이라든가 혹은 음료수 한 박스라든가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교육청에 갖다 주기가 힘듭니다.

좀 기탁할 의사는 있는데 거리도 멀고 시간이 문제가 되어서 갖다 못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주는 편에서는 문제가 아닌데 받는 편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게 금지의 대상이 되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누가 시켜서 하는게 아니라 자연발생적인데 이런 분 한테는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떠한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두번째 뜻이 있고, 세번째 문제가 되는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음성적인 찬조라고 보는데 이것은 주로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시골에도 농촌에도 별로 없습니다마는 주로 도시에서 학생지도, 자기아들 자기딸만 봐달라 하는 식으로 봉투에다 넣어서 은근히 준다든가 책갈피에다 넣어서 준다든가 하는 이러한 음성적인 찬조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주는학생 혹은 받는 교사가 어딘가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간에도 위화감이 생기고 소위 말하는 치마바람이 생겨가지고서 지금도 고등학교의 내신성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불신감이 초래되고 하는 그런 학교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세번째 문제, 이것

이 문제인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첫번째 두번째 것 까지도 다 뭡쓸어서 도매금으로 넘어 갑니다.

이래서 대학에서는 장려되는 기탁금이 이 세번째 문제때문에 이것이 금지가 되고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 어디까지나 그 학교의 주인은 지역사회의 인사 그 주민들인데 주민들이 자청해서 내는 돈을 막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은데 이것을 현 제도가 도시의 그 일부에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기탁의 의사를 갖다가 장려하기는 커녕 오히려 금지를 하고 위축시키는 그러한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학에서 얼마든지 장려되는 것이 초등보통교육, 중등보통교육에서는 왜 금지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육청 당국에서는 교육부에 다 건의를 하신다든가 혹은 어떤 좋은 방법을 연구하신다든가 혹은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에다 협조를 얻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결의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만은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뭔가 해야지 전국을 상대로 해서 교육부에서 이러한 행정은 지방교육자치교육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봐서 국장님 한테 뭔가 건의를 하신다든가 혹은 운동회라든가 행사할 때는 그 지역에다가 이동창구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좋은 방법이 뭔가 연구하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혹은 교육위원회 협조를 요청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실 뜻은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묻습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권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탁성금 금지는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번째 음성적인 찬조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순수한 기탁의사에서 찬조하시는 그 순수한 뜻한 우리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에 관계하시

는 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교육발전에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도시에서 음성적인 찬조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찬조기부금품이 금지화 되도록 이러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단,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동회등 학교 행사에서 소액을 냈을때 지역주민이 냈을 때 이것은 자발적인 것인데 이것도 금지돼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 관리국장회의에서 교육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를 풀어 주면은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를 파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 강제적 권유 이렇게 찬조금품이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 문제화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이동창구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도 제가 답변말씀을 드린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동창구는 잘못 운영했을 때에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마치 찬조금이나 기부금을 모집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이동창구 설치 문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장위원님 질문하시죠.

● 장중호 위원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폐지된 그 학교에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미확정적이다.

그것은 아마 4월중에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시고 그 매각을 하

되 개인에게는 매각을 하지 않고 복지단체나 사회단체 이런데에 한해서 매각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27개교중에 임대를 한 것이 몇 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단양관내에 2개 학교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하는 그 계약서 내용과 이런 것을 지역교육장이 도교육감한테 상의를 해서 그 승인을 맡아서 임대해 주는가를 하나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요즘 특수단체니 사회단체니 하지만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것을 내걸지만 전부다 자기 재산 증식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하면은 임대 기간중에 말하자면 자기가 사용할 목적에 적응하기 위해서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말하자면 여기에 보고가 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양식으로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하느냐 또 투자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런것도 감독관청인 교육청에서는 사전에 알아야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양의 일부 한 학교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증·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사람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불원간 불하가 결정이 된다 하는데 이건 내가 맡아 놓은 것이다 하는 식의 관념을 가지고 대들은 것이 아닌가, 사전에 승인을 하고 계신가 알고 계신가 하는 것좀 알고 싶습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폐지되는 학교의 부지와 건물을 임대를 할 경우에 저희들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느냐 하는데,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역교육장이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임대 기간중에 증·개축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개축을 해서 나중에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자기들이 증·개축한 것을 기부채납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도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증·개축

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자 한테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아마 일부 단양에 폐지되는 학교에 증축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본데 그것은 자기들이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며는 교육청에 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증축을 했다고 합니다

● 장중호 위원

그것이 확실하다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는 역시 교육청의 결정으로 말할 것 같으며는 순수한 양심적이고 물질을 모르고서 아이들 육영사업을 전담하는 분이고, 복지사회니 뭐 이리하는 사람들은 순전히 이면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자기 재산 증식을 위해서 하는 그런 상인의 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교육자와 상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단순히 교육장한테만 맡겨서 상대가 되겠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국·과장님들이라도 좀 현지를 다녀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속어넘어가지 않게 그런 훌륭한 교육자들이 나중에 지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제가 그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국장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도교육청 승인을 안받습니까, 공유재산 처분에.

● 관리국장 김근학

임대할 때는 안받습니다.

● 의장 김영세

임대할 때만 안받는다는 것이지 처분에는 받는 것이지요.

● 관리국장 김근학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영세

처분에는 교육위원회 의결까지 받는 것 아닙니까 ?

● 관리국장 김근학

예, 그렇습니다.

관리국장께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전부 마감을 해주시죠.

관리국장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권혁풍 위원

두가지가 있는데.

● 의장 김영세

예, 잠깐만 미안합니다, 좀 받으시죠.

● 권혁풍 위원

아닙니다.

전체적인 보충질문입니다.

● 의장 김영세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하세요.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권혁풍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끌었습니다.

아까 초등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국립학교에 특혜를 주는 것이 없다, 점수도 줘야 될 것 주는 것이고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듣고보니까 수긍이 갑니다, 많이.

그런데 이것이 일선에서는 상당히 위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국립학교 들어가는 절차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봅니다.

어떤 교사는 국립학교에 슬금슬금 들어가고 어떤 절차가 뚜렷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 뭐가 있는 것인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충북사대부고에서 어떤 교사를 필요로 한다 할 때 어떤 거기에 들어가는 공개시험 제도같은 것 공개채용 시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불평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실력이 있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고 불만을 하지 않게 공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공개채용시험 같은 것이 현재 있는가 없는가 해서 그것 하나 여쭙고 또 하나는 지금 늘 쉽게 말하기를 교장 재량권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교장한테 재량권이 다 있다 하고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교장재량권이 얼마나 있는가, 교장재량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즉 교장을 통한 상부

재량권의 연장이 아닌가.

교장은 인사권이 여기 있으니까 교장한테 얘기하면 그대로 교장재량권이 다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교장한테 재량권을 주면은 재량권을 주는 대신에 그게 잘못을 했을 때에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어떤 교장이 책임을 지고서 눈에 보이는 책임을 지고서 조치를 받는 것을 아직 못 봤습니다.

농고의 사태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몇가지를 봐도 형식적인 인사조치를 해서 슬쩍 자리를 바꿔놓는 정도, 해서 주민이 보통 봐도 그렇고 저희들이 봐도 그렇고 저게 책임인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교장재량권을 준 것인가 아닌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두가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권위원 그 두가지시죠.

그럼 부의장님 뭐 있으시면 다 질의하시고 하시죠.

● 부의장 김광수

그럴까요.

시간도 많이 가고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오늘 짚지 않으면 아니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늦었어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질의도 있었고, 또 문제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됐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닌 청주농고 부정입시 관계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그 징계위원회를 도교육청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징계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또 한가지는 감독관청이 도교육청에 지도감독의 책임은 어떻게 물었는가, 이것하고 또 한가지는 청석고등학교 그 문제 그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이것을 먼저번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할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위원님의 질의중에서 대답이 안된 것을 하나 지적해 드려서 답변을 구합니다.

작년도 교육위원회 정기 감사때 보충수업비 집행에 대한 시정요구를 우리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청에서 일선학교에 시정지시를 한 근거가 없어요.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이것좀 답변해 주세요.

● 부교육감 박동기

우선 우리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사대나 국립사대 부속국민학교로 가는 기준이라고 할까, 조건은 45세 이하로 추천 요구가 옵니다.

45세가 넘은 교원은 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국립대학에 넘어가는 교원은 우리 공립학교보다 연령이 적은 분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산점 문제는 국립대학에 가면은 역시 가산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가산점을 통합해서 점수로 산출해서 소위 말하자면 교감 강습이니 이런데에 차출이 공립학교보다 조금 빨라지는 것은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런 혜택을 받아서 지명을 받으면은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그 혜택을 주는 요건 전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다시금 혜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초등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린 것 처럼 점수로써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혜택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권혁풍 위원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가는 기준이 나이 45세만 해당이 되면 다 갈 수 있습니까 ?

● 부교육감 박동기

3배수로 추천을 하는데.....

● 권혁풍 위원

회망자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 부교육감 박동기

그렇죠, 회망자 중에서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삼배수를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중등경우에는 과목에 따라서 3배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배수로도 추천을 하고 정히 없을 때에는 단일 추천도 가능합니다.

지원이 없는데, 회망이 없는데....

● 권혁풍 위원

없는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인데요, 혹시 이런 분은 교감 승진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확실히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이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좀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공정한 공개채용시험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누구든지 납득이 가도록 해주셔야지 나이만 가지고서 따지시면 안되겠죠.

나이는 45세이상 짜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 부교육감 박동기

공개채용문제는 국립사대에서 요구가 있으면 모를까 역시 국립대학에서는 그냥 추천을 회망하기 때문에 채용관계는 역시 요구하는 측에서 채용을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지 않겠나.....

● 권혁풍 위원

채용은 그 쪽에서 하는데, 추천을 할 때 추천권은 있는 것이니까 추천자를 뽑을 때 공개채용시험 같은 것을 볼 생각이 없으신가 하는 그런 얘기죠.

● 부교육감 박동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삼배수로 추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망자가 수십명이 되어 가지고 공개채용 할 정도는 아닙니다.

● 권혁풍 위원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게.

정식으로 받기로 말하면 엄청.....

● 부교육감 박동기

지금 우리가 희망을 받아요.

받아서 하는데 초등의 경우는 연령은 45세라는 말씀을 드렸고, 삼배수 추천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연구교과 연구실적등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 희망자 수는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 권혁풍 위원

그렇습니까 ?

● 부교육감 박동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의 경우에는 교과에 따라서 1명 · 단일 추천하는게 있어요.

● 권혁풍 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홍보만 되면 너도 나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까 ?

● 부교육감 박동기

그래서 우리가 인원수가 3배수로 추천하는데 4명 나왔다 5명 나왔다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교과라든가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45세 이전 거의 상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세이상자, 1개월이 넘어도 추천에서 제외가 됩니다.

● 권혁풍 위원

막말로 말씀해서 거기 들어가려면 보통 빽 가지고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니까 오해 요인을 다 제거하는 의미에서 무슨 채용시험 같은 것을 보시는게 좋지 않은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원님께서 '93년도 교육보고 때도 나왔고 아까 질문을 통해서 말씀이 나왔지만서도 교장의 재량권의 한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장의 재량권은 법적인 테두리 범위내에서 행정적인 테두리 범위내에서 재량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과 행정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학교장 재량권 하니까 상당히 거창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역시 우리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규제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전부 제거를 하면은 그 재량권은 사실은 많은편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행정 범위 내에서도 조금 완화해서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운영을 경영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많이 줄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더 나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권혁풍 위원

그래서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책임 추궁도 그렇게 미온적으로.....

● 부교육감 박동기

미온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중론도 집약을 해보고 또 법과 규칙도 잘 검토해서 복합적으로 거기에 저촉이 되는 방향으로 조금 재량권이 있다고 할까, 이런 범위내에서 우리가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근거가 없고 미온적으로 이렇게만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광수 부의장님이 말씀한 청주농고 입시부정 사건과 청석고등학교의 그동안의 사회적인 물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청주농고는 당초에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장이 중앙징계위원회 대상이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부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효영 교장이 금년 2월말로 정년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교감이하 교원 들에 대해서는 일반징계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징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징계결과는 부책임자인 교감에게는 견책을 했고, 그리고 감독교사 둘은 감봉 3개월을 처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

원은 그 자리를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기초에 금방 자리를 옮기게 되면은 그냥 1대1로써 자리를 옮긴다고 하면은 수가 최소화 됩니다만서도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과목별로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그 중간에 부득이 옮겨야 할 이런 입장이 되고 해서 수십명이 되는 것 같아서 당장 옮기는게 무리가 아니겠느냐, 학기초에 거의 정착들 해서 교과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인사기에 옮기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9월 1일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은 9월달에 옮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청에 지도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는 응분의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감독을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자꾸 벌어지게 되어서 여러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석고등학교에는 이미 아시겠지마는 재단에다가 징계요구를 했고, 그리고, 인사 조치를 하도록끔 재단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장선생님이 3월 1일자로 청석고등학교를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92년도 그 행정 사무감사시에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청한 바, 이에 대한 결의 내용과 관련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보충수업 운영의 합리화'라고하는 이런 공문을 중등 장학으로써 '92년 11월 26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 의장 김영세

공문사본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다시 보충질의 하겠어요.

내가 행정경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교육위원회에서 감사한 시정 사항을 요구한 것입니

다.

시정사항을 요구한 것이 이런 공문으로해서 시정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볼 적에는 행정공무원 입문생도 상식적으로 이런 용어가 되지 않을 공문이예요.

교육위원회 감사 사항을 어떻게 이행을 하기에, 이 공문의 내용을 볼 적에는 여기 끝머리에 '보충수업비의 합리화 사용, 육성회 편성 및 집행의 목적외 사용 금지, 관리비의 합리적 집행,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정지시냐, 내가 일선학교 교장들 한테 확인을 했어요.

당신네들 비담당자에 대한 보충수업비 지급 시정하라는 교육청의 지시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 고등학교 교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받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 공문은 일종의 지침을 내린 것이지 시정지시가 아니예요.

부교육감이 행정의 원활한 분이고 경력이 풍부한 분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적에는 상식적으로 이것은 거기에 대한 지시사항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공무원의 직무 유기예요.

왜냐하면요 감사시정 사항은 아까 권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감사계에서 시정 지시를 일선 학교에 분명히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시정 사항한게 법에 위배되는 시정 사항을 요구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

● 부교육감 박동기

에. .

● 의장 김영세

그것이 아니라면 시정 이행을 했어야죠 어째서 안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사권 발동 할까요.

● 부교육감 박동기

하여간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강력하게.....

● 의장 김영세

아니 그러지 말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밝힙시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행하지 않은 것.

이것을 규명을 해서 이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세요 ?

(이재희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말씀하세요.

● 이재희 위원

말씀 끝나셨나요 ?

● 의장 김영세

예.

● 이재희 위원

지금 장충호 위원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못하시고 그 업자들한테 안넘어 가라 하라는 말씀으로 충고를 주시고 말았는데, 사실 얼마전에 천동굴 부근에 모인사가 150억을 투자해서 학생 수련원을 한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임대 계약에 얼마전에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89조에는 영구시설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말씀하신대로 이제 이게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150억을 투자해서 말이죠 임대기간 끝난뒤에 참 '요것이올시다'하고 내놓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진천야영장은 말이죠 해놓고 오수가 되어 가지고 개울에 들어가지 못해,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이 되고 대통령이 GNP 5%까지 교육비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몇 년만 기다리면 우리가 해도 충분히 해야 될 것을 성급하게 임대계약을 해줘서 영원히 되찾지 못하는 이런 과오를 범할런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참 천동굴에는 제천, 저 단양군청에서도 수십억원을 들여가지고 천혜의 자연수하고 앞으로 10년후에 불하했다가 다시 산다고 하며는 도저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사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미룰 것이 아니고 현지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몇 사람이라도 조사반을 동원을 해서 어느 제동을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제동을 걸어주는게

어떨까 해서 긴급동의로 특별조사단 구성을 요청을 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긴급동의는 재적수 3분의 1이상 찬동시에 성립이 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김응복 위원

상황이 말이죠 지금 150억이라고 이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진행중입니까?

● 장충호 위원

그것은 지역이 다른 데 입니다.

찬동의 얘기죠, 찬동은 단양문제죠

● 의장 김영세

이렇게 하시죠.

지금 시간도 오래 되고 했으니까 결의로 하지 말고 우리 교육위원들이 간담회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서 현지 확인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답변해 주신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03분 산회)

o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o 출석공무원 : 17명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백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총무과장

고일영,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송대헌,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헌동, 시설과장 박성근.

제 21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 3 호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3년 3월 23일 (화요일) 10시 30분

의 사 일 정 (제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7.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 기타 안건처리

부 의 된 안 건

1.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7.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 기타 안건처리

(10시 30분 개의)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오늘은 의장님께서 다른 사항이 계셔서 제가 의사진행을 맡아 보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서와 함께 부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결산소위원회로부터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고서와 함께 부의되어 있습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들으신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과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예·결소위원회로부터 부의된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신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홍신회위원님은 교육위원회 의장과 서원대학총장의 자격으로 대통령 본도 순시에 따라 거기에 참석하셨고, 아울러 집행기관 국장님 이상도 거기에 참석하셔서 조금 늦어지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4분)

1.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2.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그러면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서로 유사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권혁풍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예, 제가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올려온 충청북도연구원하고, 과학교육원하고, 단재교육원 이외에도 여기에 대한 검토할 만한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학생회관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혹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그 교육감 직속기관도 설치목적을 검토해 봐서 여기에 적합하게 그 하부조직을 다시 정비를 해야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여기에는 직접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또 두번째는 그 목적에 맞도록 그 총무부서를 서무과나 총무과를 밑으로 돌렸는데, 그 나머지 되어있는 순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즉 조사연구부, 지도보급부, 진로교육부, 교육평가부, 서무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없는가, 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이것을 묻습니다.

두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발언대로 나옴)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입니다.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첫번째 말씀하신 교육연구원, 단재교육원, 과학교육원 이외에 직속기관도 그 직제서열이 바뀔 필요성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나머지 기관도 저희들이 전체 검토를 했습니다.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종합야영장 모든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 기관은 되도록 그 기관의 목적이 하나의 장을 빌리고, 거기의 장이 학생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관이고, 또 타시·도와의 직제관계를 전부 비교해 봤습니다만 타시·도도 저희하고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당장에 검토의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게.....

제가 금방 잊어 버렸어요,

● 권혁풍 위원

그게 다른게 아니라 지금 조사연구부, 연구원에서 지도보급부, 진로교육부, 교육평가부 그것 만은 잘 되어 있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예, 그 각 삼개기관에서 올라온 조사연구 선임부서에 서열은 해당기관에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또 해당 지금 지도감독하고 있는 저희 본청에 각 과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타시·도하고도 비교해가지고 아무 이의가 없어서 그렇게 부서서열을 정했습니다.

● 권혁풍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도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저도 각 기관에 목적을 보니까, 역시 그 하부조직하고 목적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예.

● 권혁풍 위원

그런데 물론 다 검토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검토결과 타시·도와 병행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직 보류중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예, 도서관 같으며는 앞으로 언젠가는 사서직이 관장도 해야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몇 년후에는 아마 도달이 될겁니다.

그렇게 된다며는 그때가서는 거기도 사서과나 열람과가 우선이 돼야 되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각 도서관이 공히 서무과가 선임부서가 되어있고, 또 도서관장이 아직까지는 행정직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난 후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96년후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쯤되며는 그때가서는 검토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권혁풍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한 생각에서인지 몰라도 요새 그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서 타시·도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선진도로서 목적에 분명히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것이 시대조류에 맞고 선진도로서의 그 뭔가 긍지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주춤주춤하고 서로가 눈치를 보며는 어떤 도가 먼저 하겠습니까, 분명히 목적이 어긋나는게 있으면 함께 같이 올라서 개혁의 바람을 타고서 하는 것이 가장 맞는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글쎄, 위원님 말씀이 아주 잘 못됐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저희들도 어느 시기엔가 가서는 그 기관, 그 목적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앙도서관은 지금 서무과, 사서과, 열람과 이렇게 3과가 있고, 학생회관은 총무과하고 도서과, 운영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야영장에는 서무과하고 운영과 2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군데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각 시·도하고도 비교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3개 기관은 그렇게 바로 바꿀 필요성은 없다 해가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때 필요성이 있으며는 그때 가서는 바꿔주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 권혁풍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 3개의 조례를 고치면서 이것을 나둔다는 것이 똑같은 성격의 것인데, 누가 보던지 우리 교육위원회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왕 그런 얘기가 나왔으며는 똑같은 그런 차원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뒤로 미룰 것은 미뤄야 되지만, 지금 미룰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던지 지금 개방된 사회에서 참 도서관이고 야영장이고 학생회관이고 잘 못됐다는 것을 아마 일선에서.....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야영장은 관계가 없습니다.

학생회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두개가 잘 못됐습니다.

● 권혁풍 위원

야영장은 잘 되어 있는데, 그 두군데가 잘 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이런 고칠 때 같이 고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고 질문이 들어 왔을 때에 여기에 대한 교육위원으로서의 답변 자료가 없습니다.

교육위원들이 그런 것도 못 봤느냐 하는 질문이 들어 올 때는 그럼 집행부서에서 하자는 대로 했다, 좀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다, 이런 얘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바로 다음 회기에

올리시던지,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잘 알았습니다.

관계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예,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다른 질의가 또 있습니까?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이재희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재희 위원

예, 이 4개의 개정조례안에 운영비가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단재교육원은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며는 지금 총무부장이 지방서기관인데, 지금 장학관으로서 수석부장을 만들었을 때, 그 수석부장에도 지방서기관과 같은 판공비나 통근비 같은 것을 지출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또 수석부장만 주며는 자연적으로 장학관 그 부장들도 동급으로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운영비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제가 알기로는 특별판공비 같은 지방서기관의 대우는 아직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장학관의 직급이 4급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정원상의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지금 말씀하신 판공비라든지 그것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재희 위원

그런데 이제 직급을 수석을 하며는 대우면에서도 수석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통근비 같은 것도 못 받는데 수석이라고 하기가 참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여기에는 운영비도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이 부서서열 조정과 정원의 직급의 관계는 별개의 관계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직급 부서서열을 앞에 두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4급 대우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

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원상에 4급 대우 그 문제는 별개로 앞으로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재희 위원

글쎄, 그렇게 돼야 될거 같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예.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또 더 계십니까?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박병해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의정 순서 제4항에 충청북도수영장 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이중에 3페이지에 보며는 대비표가 있는데, 여기에 "장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를 갖다가 "고등학교장으로 겸임토록 한다" 이렇게 바꾼다고 하며는 기존 그 행정주사는 당연 감원 이 되는 겁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예, 이미 정원조정 때 감원을 했습니다.

● 박병해 위원

그 다음에 일곱번째항에 올라와 있는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

어 그건 아닌가?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아직 상정이 안됐습니다.

● 박병해 위원

예, 그건 있다하지요.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있습니까?

(위원석 침묵)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계시며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본 건들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각 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

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5.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심사소위원회 김응복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복위원 사회대로 나옴)

● 김응복 위원

조례심사소위원장 김응복 교육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 3월 20일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는 바,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답변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원 주위의 교육환경 정화구역을 당초 6m에서 10m로 강화하여 교육환경 저해업소로부터 학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생활지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학원 설립시 적용하던 거리규제를 폐지하고 시설기준을 강화한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문민시대에 맞게 제반 규제를 완화하며, 자유경쟁에 의거한 학원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시설의 현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독서실 생활지도사를 남·여별로 구분 배치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생활지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 학원의 생활지도 강화를 위하여, 일반계열 학원장들이 새로운 의식전환과 지속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강력한 행정 지시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개정조례안 내용을 판단할 때,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조문의 불합리하고 미비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로 하였는 바, 앞으로의 사회교육에 내실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바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사내용에 대하여는 김응

복위원장님께,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관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에, 권혁풍위원.

● 권혁풍 위원

어째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의문나는게 평소에 그 신문에 논란이 되고 있던거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중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학원을 설립해 놓고서 1년 내에 이것을 팔아가지고서 폭리를 한다.

그래서 그런 폭리방지 조항이 필요한게 아니냐 하는 그런 신문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하나 여쭈어 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사회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옴)

●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입니다.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원조례중에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이번에 주로 강화시키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 권혁풍 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곳 파악을.....

● 권혁풍 위원

몇 조에 있나 좀 봐주십시요?

●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예, 10조에 있답니다.

● 권혁풍 위원

10조입니까, 여기는 올라와 있지

않은 데,

●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개정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올라와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며는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말씀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6.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7.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다음은 동일 부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복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김응복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

니다.

● 김응복 위원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이게 국민학교에 영세, 농촌학교의 영세화로 말미암아서 폐교되는 학교가 많아요, 앞으로 이런 폐교되는 교지나 그것을 처분하게 되거나 임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개 학교 터가 거의 그것이 어디가 되었던 간에 그 지역에서는 명당자리라고 소위 일컬을 만큼 위치가 좋습니다.

여러가지 방향이나, 향이나 기타 풍수관계가 있을까 마는 그러한 여건이 잘 갖추어 지고 또 솔직한 얘기로 그 지역에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터를 잡는데, 위치를 잡는데에 지방 주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희사하고 이렇게 해서 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금 염려되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폐교되는 영세 국민학교에 장래에 있어서도 한번 그 위치상으로 봐서의 가치, 재산가치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가령 단양이라든가, 혹은 영동 물한계곡 그런데 위치했다거나, 또 제천 같은데에 경치 좋은 곳에 있는 것, 이런 것은 솔직한 얘기가 나라도 재산에 탐이 있다며는, 내가 돈이 있으며는 그런 것 사두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한 뜻에서 임대하거나 재산가치 이런 것을 지금 대개 실정을 보며는 어제 관리국장 말씀중에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재산권은 이 본청에 있다손치더라도 그 임대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아마 실질적으로는 일선 교육장에게 위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왜 느꼈는가 하니 이전번 때에 현지답사차 몇몇 군데를 나누어서 우리가 현장조사한 바 있습니다.

저는 마침 도내 회령국민학교 분교가 임대, 말하자면 교원대학하고 임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러 가서 계약서도 보고 다 봤는데, 그것이 계약당사자가 결국 시·군교육청 교육장이 되었더라고요, 이랬다면 실질적으로 계약상에 그 당사자는 본청

에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니라, 본청에 어떤 위임을 받아서 운운한 문안도 없고, 계약당사자가 교육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며는 물론 거기에는 장치는 있습니다.

가령 구내시설이라든가 자기네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더 시설을 보완했거나 하는 것은 동시에 하여간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원주인한테 납부되도록, 기납되도록 이렇게는 됐어요 그러나 어제 얘기가 나온거와 마찬가지로, 참 경치 좋은 데, 어떤 데 빌려서 거액을 투자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을 적에 가령 장차에 연고권을 주장하거나, 또는 어떤 빌미로 말미암아서 계속 임대를 했을 경우, 또 혹은 그것이 불하처분됐을 때에 그 사람의 연고권도 있을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며는 일괄적으로 이게 그냥 처분위주로 이렇게 할게 아니라, 본청에서 도내에 각급 학교, 영세 국민학교, 장차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는 일괄 한번 조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두어봤자 별거 아니다, 처분해도 별 것이겠다, 그러나 가령 경치 좋은 곳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곳에는 이것은 몇 년간 두며는 이것은 교육에 큰 재산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식별을 일괄적으로 여기서 해서 그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고 어떻게 하며는 재정적인 면에서의 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느냐, 이런 것을 세밀히 분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지금 학교별로, 위치별로 봤을 때에 재산가치, 또 장래를 전망한 그러한 교사가 되어 있는 건지, 그것 하나 묻겠고요, 앞으로의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묻겠습니다.

두번째로 묻는 것이 지금 일선 군 교육장에 위임된 임대나 처분에 관해서 오히려 본청에서 그런 것을 관장할 그러한 의도는 없는 건지, 그 두 가지만 묻겠어요.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진행을 일괄질문하시고 일괄답변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이상일위원.

● 이상일 위원

이 공유재산 폐처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노후교실을 철거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는지, 지금 작은 건물은 모르겠지만 지금 삼원국민학교 같은 것은 건물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혹시 학생들이나 누가 다치는 일이 있다던지, 무슨 사고가 났을 때에 대책은 어떻게 누가 세우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이재희위원님.

● 이재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청에서 도로 토지보상으로 청전국민학교게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 청전국민학교는 '93년 1월 13일자로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교육청, 학교, 시청하고 상당히 분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관리과장 보고에 의하며는 청전국민학교 부근의 도로를 '95년 이후에 공사를 하겠다는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단민원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게 공유재산계획을 변경해 줄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이번에는 집단민원 요소가 있는 청전국민학교는 이번에는 제외를 했다가 차기에 합의점을 본 뒤에 재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여쭈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질문마치겠습니까?

● 이재희 위원

예.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다른 위원님,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박병해위원님.

● 박병해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도표 제1을 보며는 취득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 숫자 해석을 내가 잘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당초의 물량금액, 그 다음

에는 변경의 물량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변경의 물량금액하고서 그 물량의 토지물량하고, 건물의 물량하고, 그리고 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계는 뭐를 말하는 건지 잘 알수가 없어서 그것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끝나셨어요.

● 박병해 위원

예.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소관이시지요.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 재무과장 정헌동

재무과장 정헌동입니다.

먼저, 김응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매각시, 폐교학교 매각시, 임대자의 연고권은 인정되지 않느냐, 또는 특허권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하셨습니다.

물론 임대자가 금년 한해만 쓰리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도 임대자는 물론 한해만 쓸려고도 하지마는 최소한도 2-3년간은 쓸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장래 이용계획은 시·군에서 판단하여 이용계획을 수립하느냐, 이 말씀인데, 그것은 쓰고자 하는 분과 교육청하고 적절히 합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상일위원님께서 노후교실 철거.....

● 김응복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지금 그런 것 보다는 그 위치적으로 보아서 재산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이런 것을 일괄 한번 계획수립을 해서 그러한 것에 대한 처분, 기타는 신중을 기해달라 그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 재무과장 정헌동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예를 들어서 교통이 편리한 곳, 경치가 좋은 곳, 또는 한적하게 어디 외돌어진 곳 등 여러 곳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자기가 목적하는 사업을 무엇을 해야겠다, 이렇게 할 때에 그 효용가치,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이 상당히 다를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는 도로가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가, 그러면 어떤 분은 도로에서 좀 떨어져서 환경이 여기가 좀 좋지가 않느냐, 좀 보는 바가 틀릴 건데, 물론 약간의 차이가 나지요,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어디가 낫고, 어디가 좋다 이런 조사를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김응복 위원

그리고 본청에서 말하자면 교육장님한테 위임된 사항같은 것은 이런 처분 기타 것은 어차피 재산권은 본청에 있는 거니까, 교육감에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교육장한테 위임하는 절차상, 편의상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손 치더라도 좀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판장해서 하여간 좀 챙기고 이런 것을 부탁하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정헌동

저희가 좀 자주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관재계 직원이 몇 안되고, 도내에 전부가서 일일이 해마다 변경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안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교육청 직원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좀 연구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교실 철거시 안전사고 없도록 시설공사에 안전을 기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 이상일 위원

예.

● 재무과장 정헌동

그것은 제가 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안전사고 없도록 만전의 지시를 할겁니다.

그러고, 또 여기에 설계 자체에서도 뭐뭐 할 때는, 예를 들어 거푸집을 어떻게 넣는다든지, 뭐 할 때에 어떻게 한다든지, 그 세부사항이 시

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고 하나라도 날까봐 여기에서 갖은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은 철저하게 좀 해서 1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앞으로는 좀 잘 해보자 해당부서에 전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두도록 합니까?

● 재무과장 정헌동

책임소재는 제가 알기로는 정식 계약이 되어 있을 때 하도급 업자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일 위원

제가 몇 군데 철거하는 현장을 보니까, 물론 이 교육청에서는 단단히 당부도 하고 안전사고 없도록 하겠지만 업자들이 영 말을 안듣고 당체 불안한 상태에서 마구 쩍어 내리고, 그 덤프트럭이 왕왕거리며 실어 나르고, 그래서 상당히 국민학교 어린이들 말을 잘 안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마조마한 것을 여러번 봤기 때문에, 특히 삼원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이 굉장히 큽니다, 2층 건물 열 몇 칸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 할려며는 대단히 시간도 많이 걸릴거고 복잡할텐데 좌우간 어느 부서에서 하시던지 안전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위를 환기시키고, 책임한계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정헌동

예, 잘 알았습니다.

해당부서와 긴밀히 연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답변 성질이 될런지 아닌 걸로 알고서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도 감독관청에서도 업자 하도급을 하며는 그 분들이 예예 하고 들어 주는 세월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기서 잘 못 가서 얘기를 하며는 삽으로 막 쩍어요, 솔직한 얘기가 모래를 끼얹고 시멘트를 뿌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공사장의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저희 본청 수선공사 할 때에도 저희가 그렇게 안해봤습니다마는 저희는 빨리 좀 해볼려고 잘 해볼려고 현장감독이라는 사람한테 만나봐야 잡부하나 쓸 권력도 없고, 얘기만 조금 이쪽에서 듣기 싫은 말을 하며는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갑니다,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과장님, 그게 타당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정헌동

예, 이것은 글쎄 정식답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그런 답변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 답변 해주세요.

● 재무과장 정헌동

답변을 제가 좀 잊었습니다.

● 이재희 위원

그래요.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아니 질문을 하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야죠.

● 재무과장 정헌동

청전국교는 도로편입이 그 중간을 딱 자르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옹벽을 치려면 상당한 높이가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시청하고 학교측하고 부형들하고 원만한 해결이 되어 가지고 좋은 곳으로 어떻게 이전을 한다는 신문 기사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 이 일은 추진사항은 저희과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더 조사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 이재희 위원

이것이 신문지상이 문제가 아니고, 청전국민학교 학부형님들이 교육감님

과 우리 교육위원회 의장한테 탄원서를 제출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리가 지금 제천교육청에서 처리진행중에 있을 것으로 아는데 또 잘 알다시피 운동장 한 복판으로 가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도저히 이건 학교를 다시 이전하거나 학교를 재배치하지 않고는 교육환경이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민원대상이 있는 것을 여기 관리계획변경안에다 제출해서 여기서 통과를 시켜 놓으며는 이거 공사를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수정해서 발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아니 위원님,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행정과 소관같습니다.

● 이재희 위원

어쨌튼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든지 지금 집단민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이거에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답변을 들어보시고요.

행정과 소관이니까, 행정과장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옴)

● 행정과장 이상찬

제천 청전국민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전국민학교의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며는 청전국민학교는 제천시 청전동에 위치한 학교로서, 교지가 약 9,000평이 되고, 학교규모는 19학급에 84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학교로다가서 운동장 가운데로 도로가 나가게된 동기는 이 청전국민학교가 '74년 10월달에 학교설립을 하기 이전에 '67년 4월 10일자로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학교에 '74년 10월달에 청전국민학교 설립계획에 의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개교를 했던 겁니다.

그 뒤로다가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4년 2월 13일 날짜로다가서 재

천시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러나 '67년도에 도시계획은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득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90년도부터 그 학교에 도로를 개설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지금 사회교육체육과장님으로 와 계십니다마는 당시 교육장님이 시청과 수차례에 걸쳐서 무려 십여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 계획내용대로 변경이 안되고 결국엔 당초 도시계획대로 그 학교 가운데로다가서 도로를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전국민학교 교지가 약 9,000평인데 도로가 날 경우에 약 2,500평 가량은 못 쓰는 도로와 나머지 잔여부분해서 2,500평 가량은 못 쓰는 토지가 되고, 남는 교지는 약 6,000평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제1안으로다가서 내무부측은 서편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 시유지를 확장해서 학교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안, 또 제2안은 현재에 학교의 설립규모가 국민학교의 경우 4,000평 미만입니다, 그러며는 6,000평이 잔여교지가 남기 때문에 그 잔여 학교 교지에다가 설립하는 안, 또 하나는 학교를 주민이 원하는 인근개발지역으로 이전하는 안 해서 지금 제천교육장하고 3개안을 놓고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재희 위원

그래 지금 검토중이고 이렇게 민원도 되어 있는 사항을 계획변경안에 올려 놓으면 어떻게 승인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그런데 제가 그 토지관계는 이미 시청에서 도로를 내겠다 하는 사항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사항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집단민원이 올라오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라오기 전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집단민원이 이래서 여기에 대한

석연한 해답이 없고, 또 시장으로부터도 지금 어떻게 해준다는 확고한 어떤 보상대책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가 위원들한테도 상세하게 설명도 좀 하고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이것에 대한 민원의 대상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의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이상찬

교육감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제천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그 대안을 가지고서 결정을 하는 방법이외에는 없겠습니다.

그 대안은 현재 도로가 난다고 할 경우에 현재 그 자리에서 학생들을 수용을 한다고 하며는, 방음벽까지는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음이 나서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제2지역으로 옮기는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95년도까지는 학교교지에 도로나는 것을 일단 사업추진을 연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간접적인 언질은 받고 있습니다.

● 이재희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 권혁풍 위원

대상이 누가될지는 모르는데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여기 이 건에 관해서,

● 권혁풍 위원

청전국민학교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여기에 공유재산처분 관계하고....

● 권혁풍 위원

예, 거기에 관한 겁니다.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지,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들어가시지요.

● 재무과장 정헌동

박병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집행기관석에서 말함.)

● 권혁풍 위원

예, 그것 먼저 답변을 하시지요.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 재무과장 정헌동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페이지에 있는 토지와 건물 여기 그 계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말씀인데, 토지와 건물의 합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는.

(의사과장 박병해위원 좌석으로 가서 설명)

● 박병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토지의 물량, 건물의 물량하고 합할 수 있는 숫자냐 이게.

● 재무과장 정헌동

사실은.....

● 박병해 위원

이게 필요없는거지.

● 재무과장 정헌동

필요는 없는데, 금액이 있다보니까

● 박병해 위원

금액은 보태는데, 여기 보태는 숫자는 필요가 없는 것 아녀 이거.

● 재무과장 정헌동

사실은 무의미 합니다.

금액을 플러스(+)를 하기 위한 것이지 이쪽에 평수 이것은 무의미 합니다.

● 박병해 위원

아니 글쎄 똑바로 얘기를 해여, 건물하고 토지하고 플러스한 숫자가 무엇에 쓰는거냐 의심이 나서 내가 그런 건데, 이게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금액은 보태는데 필요하지.

● 재무과장 정헌동

예, 금액은 필요하고 그 위에 것은 무의미합니다.

● 박병해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쓸데없는 숫자같은 것은 여기다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 재무과장 정헌동

예, 알겠습니다.

● 박병해 위원

이게 필요없는 숫자거든, 그래서 이게 뭘 쓰는 것인가 하고서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 건가 하고 봤더니 그냥 막 보태놓은 거여, 그래 이게 필요없지요.

● 재무과장 정헌동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재무과장님 제천 청전국교 관계는 재무과 하고 행정과 기타 다른데 하고 충분히 상의가 돼서 6억 3천만원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재천교육청에서 올라온 거예요 ?

● 재무과장 정헌동

금액 산정은.....

(집행기관석에서 행정관리담당관)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그 내용은 여기 정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데, 잠깐.....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아니 그러니까요, 이 액수보다도 본래 상정한것은 여기서 결의가 될 것 같으며는 그렇게 돈을 찾는 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헌동

제가 듣기로는요, 제천시교육청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제천시청에서요 제천교육청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응복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 김응복 위원

진행상에 발언을 좀 해야 되겠어요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 김응복 위원

마침 전 제천교육장님이 여기 과장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전 제천교육장님의 자세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싶어요.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것을 충분히 듣고서 정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여기 마침 당시에 제천교육장으로 계시던 분이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것 같아서 이자리에 모시고 참고인 답변을 들어 볼까 합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옴)

●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입니다.

제가 지난 번까지도 제천교육청에서 4년간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도시계획이 난 그 위치에다가 학교를 지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시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도시계획이 된 위치에다가 학교를 설립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은 불법건물이다, 해서 그것이 나중에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 보니까, '84년도에 허가를 말았습니다.

문제는 허가를 말고, 안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며는 불법으로 처음에는 지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시가지 계획이나 도시계획이 5년마다 변경되겠금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변경 요청을 저희가 '89년도서부터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경우는 개발위원회나 또는 심사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도로는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애당초 계획대로 잘 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시장도 어쩔 수 없이 아마 그대로 밀고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안이 아까 행정과장께서 말씀이 계신거와 마찬가지로요, 1안, 2안, 3안을 처음에 했습니다.

말씀대로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잘 학부형님들이 설득이 안돼서 다시 4안을 하나 냈습니다.

어떤 안 이냐며는 '95년도에 하소국민학교가 개교가 됩니다.

그러면 하소국민학교가 개교가 되며는 그쪽으로 이동될 학생이 한 400명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350명이 남는데,

그 학생들은 의림국민학교로 다시 분산배치하며는 그 청전국민학교는 자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없어지게 되며는 결국은 시에서는 별 크게 힘안들이고, 또 학부형의 저항이 없이 잘 해결되지 않느냐, 대신 조건은 청전국민학교를 없애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3 택지개발이 있습니다, 그 3 택지개발이 '95년도 이후에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개발됐을 때 반드시 학교부지를 확보해 달라 하는 조건으로 그러한 분산배치하는 것도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의해서 '95년도까지는 도로를 내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시에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돈을 지금 찾아 가라고 했느냐, 돈은 교육청에서 얼마를 보상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에서 일방적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가 찾아가라고 얘기가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있기 때문에 찾아 가라는 얘기지 결국은 내년도로 넘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찾아 가며는 저희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언제 밤에 와서 운동장을 밀어제칠지 또는 '95년도까지 기다려서 약속대로 그때까지 해줄지,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관의 입장에서는 '95년도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돈찾아가라는 얘기는 그러한 입장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질문있으면 제가 나온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김응복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듣고 조금 의문이 나는 것이, 재적수가 800명인데, 800명중에 신설학교로 400명 떼어가고, 나머지 의림학교로 떼어 갈 것 같으면 통학거리나 기타는 무리없이 해결된다 이거죠?

●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예, 원래 신월동하고 상진, 하진, 하소리 애들이 하소국민학교가 지금 어디 생기냐면, 의림여중 옆에 바로 생깁니다.

거기에 36학급 규모의 학교가 생길 때 거기로 어차피 떨어져 나가야 할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쪽에 의림국민학교거나 이쪽에 청전국민학교 다니는데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님들은 그렇게 분산 배치해도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 안을 내어 놓았는데, 그런데 시에서 학부형하고 합의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하며는 제가 한번 학부형들이 시장한테 가서 박수쳤다 하길래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피해자 입장인데 어째서 시장한테 가서 박수치고 난리를 쳤느냐"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그러한 뜻에서 박수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뜻대로 잘 해달라는 뜻에서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보는 견지에 따라서 시장은 내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호응이 돼서 박수친 것이다 생각할 것이고, 이쪽에 부형님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 학부형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달라는 뜻에서 박수를 쳤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잘 못 돼서 시하고 학부형님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 김응복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청전학교 부지를 다시 확보한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지금 청전 제2 택지개발이 6만평에서 그 뒤에 현재 법원뒤에 그것이 개발이 됩니다.

그 때에 1,850세대가 지금 집을 짓는데요, 그 자리에 저희들이 학교를 이러한 일이 있을까봐 학교부지를 해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학교부지를 공공용지를 뭐 주차장이니, 기타 우체국이니 공공용지를 빼놓고, 학교를 주며는 일반 주택지가 없답니다, 그래 그

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하고서 그때만 해도 2,500세대 이상이어야지만이 학교부지를 설정해주겠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500세대가 안되니까 자기들이 와서 사정을 하고 우리 그럼 포기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은 또 2,500세대가 안되니까, 그냥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묵인하는 식으로 되었죠, 그 대신 제3 택지가 개발이 되며는 그때는 거기서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 그때 해주는 것은 2택지 개발하고, 3택지 개발을 합쳐서 얘기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 김응복 위원

그러면 청전국민학교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분산했던 아이들을 다시 모아서 또 청전국민학교 명의로 학교를 다시 진다는 얘기여 뭐.....

●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절진

아니 다시 제3 택지 개발이 되며는 거기 주변에 아이들만 하여도 학교가 하나 충분히 됩니다.

지금 2택지 개발에도 1,850세대가 들어오니까요, 한집에 하나만 해도 1,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학구조정을 하면 되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 이재희 위원

이게 이번 것은 교육장님이 제천제실 때 이걸 제출하신 겁니까?

●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절진

아니요.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더 물어 볼 사항이, 지금 저 과장님한테 물어 볼 사항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나머지 권혁풍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제가 의문나는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정수관리 목록별 내역을 보니까 처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쭉 나오는데 그 금액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됐으며 어떻게 처분절차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

에 처분을 하고서는 취득을 하지 않는 물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승용차라든가, 소형화물차, 윤전등사기 처분을 하고도 취득을 안해도 지장이 없는건가, 두가지 하고요, 세번째는 공유재산변경안 그 10페이지를 보며는 음성교육청에 금왕도서관 건립부지라는게 나옵니다.

그 음성군청에서 금왕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를 우리 교육청 재산으로다가 무상 사용허가를 하면서 그 도서관을 기부채납을 받는게 아닙니까, 그러며는 그 운영권은 어떻게 되는건가, 그 도서관을 운영까지도 우리가 하는 건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네번째는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것 보니까 감곡중학교 강당철거비가 4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거기가 철거한다는 처분이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래 어떻게 된건가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네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답변에 시간이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 재무과장 정헌동

재무과장 정헌동입니다.

먼저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극중학교 도서관 건립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관계, 즉 음성군청에서 금왕도서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한다,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저희가 거기 학교부지를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250평이고, 규모가 200평으로 거기서 도서관을 짓는 답니다.

처음에는 음성군청에서 저희한테 무상사용 허가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랬을 적에 저희는 그냥 형태는 그대로 두고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거기다 도서관을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에 영구시설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구시설물을 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

것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음성교육청에다 해주겠다 하는 기부채납서, 이것을 저희가 받아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기부채납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재산이 됩니다.

물론 아까 운영권을 물으셨는데, 운영권도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엄밀히 따지다보며는 땅만 있는데 타기관에서 우리 학생들을 이용하기 좋게 도서관도 지어주고 운영권도 우리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데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권혁풍 위원

글쎄 그래서 운영권도 우리가 받고 앞으로 운영예산도 우리가 배시해야 되고, 그 인원도 우리가 다 배치를 합니까?

● 재무과장 정헌동

운영예산 관계는 확실히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군청에서 운영비와 내부집기까지는 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해마다 돌아가는 예산까지 다.

● 재무과장 정헌동

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 권혁풍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영권을 맡았으니까 그러면 예산도 우리 돈으로 가지고 써야 될것 아니냐 이거지요.

● 재무과장 정헌동

운영권은 아마 얼마 지나가면 저희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 권혁풍 위원

글쎄 예산도 다 그리로 배시를 해야 되고, 운영권을 맡았으니까.

● 재무과장 정헌동

예.

● 권혁풍 위원

그러면 우리 건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 재무과장 정헌동

그렇지요.

그리고 감곡중학교 강당철거는 당초 관리계획에 반영이 된 것 입니다.

● 권혁풍 위원

그런데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 재무과장 정헌동

먼저 번에.....

● 권혁풍 위원

먼저 번에 올라 갔습니까?

● 재무과장 정헌동

예.

● 권혁풍 위원

이번엔 없고.

● 재무과장 정헌동

예.

● 권혁풍 위원

예, 그건 알았습니다.

● 재무과장 정헌동

그리고 처분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더 받을 때는 더 받더라도 장부상 구입가격입니다.

● 권혁풍 위원

장부상 가격요.

● 재무과장 정헌동

예.

더 받고 그런 것은 그때에 원매자가 있을 때에 조정이 되는 것이고 현재 저희는 장부가격으로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어떤 절차로 그것을 처분을 합니까

● 재무과장 정헌동

저희들이 처분대상 물품은 타기관으로 관리전환이나 매각 불용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글쎄 그것도 입찰을 보고 있는건가 뭐 시장, 중고차 시장에 그냥 갖다 파는 건가 물은 겁니다.

(이상일위원 위원석에서)

● 이상일 위원

감정가격여.

● 권혁풍 위원

감정가격입니까?

● 재무과장 정헌동

예, 감정가격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물건은 여기 나둔채 일괄적으로는 못하고 팔리는 대로 그냥 파는 겁니까?

● 재무과장 정헌동

아니죠, 감정가격은 그 전문가를 데려다 저희가 하지요 감정을.

● 권혁풍 위원

글쎄, 감정값이 나오며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처분이 되느냐,

● 재무과장 정헌동

원매자는 입찰대상이 되는 것은 입찰공고를 하고, 대상이 안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타자기다 하며는 타자기 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저희가 청주시내에 있는데 우리 이런 중고품이 있는데 사가실 의사가 없습니까, 몇 군데다 연락을 하면 그 분들이 와서 나는 얼마에 사겠다고 견적을 내놓고 갑니다.

그러며는 제일 비싼 사람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 권혁풍 위원

그것도 공고를 하고 합니까?

● 재무과장 정헌동

공고는 대상이 안됩니다.

금액적으로 물품공고 대상이 있고, 공고대상이 다 폐기처분물이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권혁풍 위원

대상만 공고처분 한다.

● 재무과장 정헌동

예, 그리고 이 승용차 및 윤전등사기 등을 처분할 경우에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대부분 배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승용차나 윤전등사기 같은 것은 5년 또는 지금은 승용차는 6년으로 늘어나는 데도 있고요, 지금은 5년 됐다고 해서 그전마냥 5년되면 무조건 몇 해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5년만 되면 무조건 폐차처분을 하고 승용차를 다시 샀는데, 지금은 6년도 되고 아직 사용상태가 그 물건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1년도 늦추고, 2년도 늦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과 년수가 지났어도 사용가능한 물품은 1년이고 더 써라, 2년이고 더 써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윤전등사기 같은 것도 저희가 5년인가 기간을 줬습니다.

5년내에는 일체 못 바꿔준다, 그런데 학교에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양

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그 법정기간내에 쓰고서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은 해서 반영은 해주고 있고요.

● 권혁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팔고서 안사도 괜찮습니까?

● 재무과장 정헌동

팔고서 안사는 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윤전등사기, 차량 이런 것은 전부 사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그런게 여기 있습니까, 승용차.

● 재무과장 정헌동

청주시내의 경우는 참 근자에는 승용차를 대체를 시키고 없애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윤전등사기도 그런게 있네요.

● 재무과장 정헌동

윤전등사기는 거의가 다 사지요.

● 권혁풍 위원

여기 다음 번에 그럼 올라올 겁니까 그건.

● 재무과장 정헌동

예.

● 권혁풍 위원

다음 번에 올라 올 거냐고요, 옵셉트인쇄기 같은 것.

● 재무과장 정헌동

미리 올라와 있는 것도 있겠고, 다음번에 올라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전 것은 수동식이었는데, 이번엔 자동식으로 전부해주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예, 그리고 금왕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음성군청에 가서 음성군수를 만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니까, 군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재산을 갖다가 상당한 돈을 3억씩 들여가면서 집을 지어서 왜 학교에다가 주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한 2주일전쯤 되는데, 그때도 그게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군의회 차원에서 이게 결정이 안 난 것으로 봤는데, 그럼 이게 완전히

결정이 나서 다 된겁니까?

● 재무과장 정헌동

저희는 결정이 났는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글쎄, 이게 기부채납이라고 했는데 기부채납이 확실히 된건가,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 재무과장 정헌동

음성군청에서 금왕도서관 건립 부지사용 승락요청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 권혁풍 위원

왔습니까?

● 재무과장 정헌동

예.

● 권혁풍 위원

그러면 다 통과된거군요.

● 재무과장 정헌동

예.

● 권혁풍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그럼 더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석 침묵)

그러며는 제천 청전교 관계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어떻게 할까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점심을 잡수시고서 오후 회의에 들어 갈까요, 정회를 해서 이것을 의견 조정을 해서 다시 속개를 해서 오전에 다 마칠까요?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위원석에서 김응복위원)

● 김응복 위원

오전에 다 마치는 방향으로 합시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그러면 정회를 12시 10분까지 정회선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12시 20분)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그러면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 이재희 위원

아까도 제가 정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본 안건 제8조 제천교육청 소관 처분대상 교지중 청전국민학교 도로 편입용지 4,131㎡에 대한 보상금 6억 3,465만원에 대하여는 학교 수업환경과 또 1993년 2월 12일 제천시 청전동 홍선희외 808명으로부터 기 집단민원이 제출된 사안을 고려할 때 제천시장, 제천교육장, 학부모 등의 원만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청전국민학교 관련 사항은 부결처리 삭제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또 다른 말씀계십니까?

찬성토론 말씀있습니까?

● 김응복 위원

수정동의안에 찬성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들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승인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재희위원님외 3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으므로 수

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이재희위원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사회대로 나옴)

● 이재희 위원

재가 금방 정회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제천지역 청전국민학교에 운동장 한 복판으로 도로가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도 올라와 있고 또 이번에 제천교육장이 경질이 돼서 제천교육장과 제천시장과 합의를 본 뒤에 더 좋은 안이 나온 뒤에 이것을 가결하도록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제천 청전국민학교는 삭제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질의하실 분 있으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결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 10분 거수)

예,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만장일치가 되었습니다.

표결결과는 찬성이 10, 반대는 없습니다.

이재희위원님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8.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소위원회 김사수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수위원 사회대로 나옴)

● 김사수 위원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김사수입니다.

2일간에 걸쳐서 5인의 위원이 심사한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월19일 추경예산안이 예·결소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고,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과 세부심사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 및 질의·답변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 심사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편성의 적정성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효과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합리적 예산편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5억 5,201만 7천원이 증액된 4,328억 4,491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당초예산 대비 4.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은 180억 6,360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4억 8,184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재산수입 등에 있어서는 18억 9,41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청주기계공고 토지매입 사업이 '92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명시이월로 기계상한 23억 7,600만원을 잡수입으로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금회 추경재원의 95%인 166억 9,910만 2천원을 시설비로 투자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함

을 엿볼 수 있으며, 소모적 경비를 억제하여 학교운영비 및 사학지원에 25억 3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경재원의 95%를 시설비로 집중투자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적절히 지원하므로써 원활한 학교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소모적인 경비를 억제하는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한 예산편성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예산안은 시기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져서 시설공사의 조기 발주 등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며, 총 재원의 98%를 직접 교육에 투자하여 교육현장에 활력소를 제공한 점은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또한 '93년 책의 해를 맞이하여 각급 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므로써 학생들에게 독서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은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이며 이와 같은 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부 지정 연구·시범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액이 너무 적어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93년 과학의 해 및 대전 EXPO와 관련하여 학술세미나 개최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계획이 미흡하므로 집행단계에서 세심하게 재고하여 소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의견외에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 추경예산안은 약간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아오니,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김사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사내용에 대하여는 심사위원장께서, 예산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청 관계기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없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각각 4,328억 4,491만 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5분)

9. 기타 안건처리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다음은 기타 안건처리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서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산회)

o 출석위원수 : 10명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o 출석공무원 : 12명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회,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총무과장 고일영,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송대헌,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헌동, 시설과장 박성근.

o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2.

o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3.

o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4.

o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5.

o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6.

o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 별첨 7.

o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별첨 8.

o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별첨 9.

o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 10

o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별첨 11.

o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별첨 12.

(별첨 1)

議 事 日 程(案)

第 21 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1993. 3. 19. - 3. 23.(5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3.3.19(금) 10:30 11:00	※ 간담회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개의 】 1.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4.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5.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6.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7.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8.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수관리 대상 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안 제안설명 9.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0.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제1차 본회의 산회 】	회 기 3.19 - 3.23. (5일간)

議 事 日 程(案)

第 21 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1993. 3. 19. - 3. 23.(5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 소위원회 활동 o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심의 o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의	
3. 20(토) 3. 21(일)	< 본회의 휴회 > ※ 소위원회 활동(3.20) o 제2차 조례심사 소위원회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 o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3. 22(월) 11:00	【 제2차 본회의 개의 】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제2차 본회의 산회 】	

議 事 日 程(案)

第,21 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1993. 3. 19. - 3. 23.(5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3. 23(화) 10:30	【 제3차 본회의 개의 】 1.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2.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3.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4.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5.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6.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수관리 대상 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안 의결 7.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 8.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9. 기타안건 처리 【 제3차 본회의 산회 】 ※ 폐 회	

(별첨 2)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3. 3. .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 - 1

제출기일 : 1993. 3.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이유

교육연구원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수행상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조사를 분장하는 전문부서가 선임부서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재 서무과가 선임부서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교육연구원 설치 목적에 맞도록 조사연구부, 지도보급부, 진로교육부, 교육평가부, 서무과 순으로 개정함 (안 제3조제1항)

나. 각 부서의 분장사무를 부서 서열에 따라 재조정함 (안 제4조 - 제8조)

3. 근거법령 : 해당없음

4. 조례안 : 별첨

5.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나. 예산상황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북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서무과, 조사연구부, 지도보급부, 진로교육부, 교육평가부"를 "조사연구부, 지도보급부, 진로교육부, 교육평가부, 서무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하고, 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를 "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하고,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로 한다.

제4조를 제8조로, 제5조를 제4조로, 제6조를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2조 (생략)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하부조직) ①교육연구원에 서무과, 조사연구부, 지도보급부, 진로교육부, 교육평가부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하고 각 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제3조 (하부조직) ① ------ 조사연구부, 지도보급부, 진로교육부, 교육평가부, 서무과 --------. ②각 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하고,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제4조 (서무과) 생략	제4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5조 (조사연구부) 생략	제5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6조 (지도보급부) 생략	제6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7조 (진로교육부) 생략	제7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8조 (교육평가부) 생략	제8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9조 (시행규칙) 생략	제9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생 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3)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3. 3. .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

제출기일 : 1993. 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이유

교육원의 설치 목적과 조직의 성격상 연수에 관한 계획과 조정 및 연수과정 편성 운영을 분장하는 전문부서가 선임부서가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례 명칭에 지방자치단체를 명기함. (안 제명)

나. 현재 총무부가 선임부서로 되어 있는 직제를 교육원 설치 목적에 맞도록 교학부, 연수부, 지도부, 총무부 순으로 개정함. (안 제5조제1항, 제2항)

다. 각 부서의 분장 사무를 부서 서열에 따라 재 조정함. (안 제7조 - 제10조)

3. 근거법령 : 해당없음

4. 조 례 안 : 별 첨

5.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나. 예 산 상 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참 고 자 료 : 전국 각 시·도 교원연수원 조직 현황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단재교육원설치조례"를 "충청북도단재교육원설치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총무부, 교학부, 연수부, 지도부"를 "교학부, 연수부, 지도부, 총무부"로 하고,같은 조 제2항중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학부장, 연수부장, 지도부장은 교육연구관"을 "교학부장, 연수부장, 지도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를 제10조로,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명 : 단재교육원설치조례	제 명 : 충청북도단재교육원설치조례
제1조 - 제4조 (생략)	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 5조 (하부조직) ①교육원에 총무부, 교학부, 연수부, 지도부를 둔다.	제 5조 (하부조직) ①..... 교학부, 연수부, 지도부, 총무부 .....
②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학부장, 연수부장, 지도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교학부장, 연수부장, 지도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
제 6조 (생략)	제 6조 (현행과 같음)
제 7조 (총무부) 생 략	제 7조 (현행 제 8조와 같음)
제 8조 (교학부) 생 략	제 8조 (현행 제 9조와 같음)
제 9조 (연수부) 생 략	제 9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0조 (지도부) 생 략	제10조 (현행 제 7조와 같음)
제11조 - 제14조(생략)	제11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국 각시.도 교원연수원 조직현황

연번	시도명	연수기관명	하부조직	비고
1	서울	서울교육원	총무부, 교학부, 연수부	
2	부산	부산직할시교원연수원	교수부, 운영부, 총무과	
3	대구	대구직할시교원연수원	교수부, 연구부, 총무부	
4	경주	경주직할시교원연수원	교수부, 운영부, 총무과	
5	경기	경기교원연수원	교수부, 연수부, 총무부	
6	강원	강원도교원연수원	교수부, 운영부, 총무부	
7	충남	충청남도교원연수원	총무과, 교수부, 운영부	
8	전북	전라북도교원연수원	교수부, 운영부, 총무과	
9	전남	전라남도교원연수원	총무부, 교수부, 운영부	
10	경북	경상북도교원연수원	교수부, 운영부, 총무부	
11	경남	경상남도교원연수원	교수부, 연구부, 서무과	
12	제주	탐라교육원	연수부, 지도부, 총무과	

(별첨 4)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3. 3. .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기일 : 1993. 3.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의 안 번 호	21-3

1. 개정이유

과학교육원의 설치 목적과 조직의 성격상 과학정보와 과학교육의 조사, 연구, 보급 및 연구학교 지도, 실험연수를 담당 운영하는 전문부서가 선임부서가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골자

가. 현재 서무과가 선임부서로 되어 있는 사항을 과학교육원 설치목적에 맞도록 지도부, 전시부, 자료부, 서무과 순으로 개정함 (안 제6조제1항, 제2항)

나. 각 부서의 분장사무를 부서서열에 따라 재 조정함 (안 제7조 - 제10조)

3. 근거법령 : 해당없음

4. 조례안 : 별 첨

5.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나. 예산 상황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정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서무과 , 지도부, 자료부, 전시부"를 "지도부, 전시부,자료부, 서무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하고, 각 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 연구사로 보한다"를 "각 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하고,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로 한다.

제7조를 제10조로,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5조 (생략)	제1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하부조직) ① 과학교육원에 서무과, 지도부, 자료부, 전시부를 둔다.	제6조(하부조직) ① · · 지도부, 전시부, 자료부, 서무과 · · · ·
②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하고, 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② 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하고,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제7조(서무과) 생 략	제7조(지도부) (현행 제8조와 같음)
제8조(지도부) 생 략	제8조(전시부) (현행 제9조와 같음)
제9조(전시부) 생 략	제9조(자료부)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0조(자료부) 생 략	제10조(서무과) (현행 제7조와 같음)
제11조 - 제14조 생 략	제11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5)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출 년 월 일	1993. 3. .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4

제출년월일 : 1993. 3.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이유

충북체육고등학교가 충청북도수영장과 동일부지 안에 건축이 되었고 특히, 충북수영장 2층에 충북체육고등학교 식당을 건립하였기 때문에 동일구역 동일건축물 내에 2개 기관이 있게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청북도수영장의 장장을 충북체육고등학교장이 겸임토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충청북도수영장의 장장을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던 것을 충북체육고등학교장이 겸임토록 변경함. (안 제4조제1항)

3. 개정근거 : 해당없음

4. 조례안 : 별첨

5. 기타 참고사항

o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중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를 "충북체육고등학교장이 겸임토록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3조 (생 략)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장장) ①수영장에 장장을 두되 장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제4조(장장) ① ---------- 충북체육고등학교장이 겸임토록한다.
제5조 - 제13조 (생 략)	제5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6)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출 년 월 일	1993. 3.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

제출년월일 : 1993.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이유

현행조례의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학원의 시설·설비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사회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학원시설은 동일건물 동일층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지도 및 고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2 개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함. (안 제3조제4항)

나. 학원주위의 교육환경정화지역범위를 강화함. (안 제6조)

다. 학원설립시 적용되던 동일교습과정 학원과의 거리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동일교습과정의 동일건물내 설립금지조항으로 대체함. (안 제7조제1항)

라. 학원설립요건중 적정시설규모를 강화함. (안 제7조제2항)

마.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조항을 규정함. (안 부칙제3조)

바. 일부교습과정을 신설 또는 변경하며, 교습과정별 반당 시설·설비기준을 강화함. (안 별표1, 별표2)

3. 개정근거

가.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 [교육부공문 사회01540 - 253 ('91. 6.18)]

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4. 조례안 : 별첨

5.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나.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다.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 : 별첨

라.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시·도별 비교표 : 별첨

마. 입법예고문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 별첨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강의에 적합한"을 "16.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강의에 적합한"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학원시설은 동일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개층 이상에 시설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교육환경정화 등)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장소는 학원이 위치한 건물로 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제외한다.

1. 건물의 연면적이 3,300 ㎡ 이상이고, 학원의 출입구로부터 교육환경 저해업소의 출입구가 10m 이상일 것.

2. 교육환경 저해업소의 위치가 학원으로 부터 수평거리 10 m 이내가 되는 동일층 또는 6m 이내가 되는 직상층 및 직하층이 아닐것.

3. 학원으로 부터 교육환경 저해업소의 영업행위가 보이지 않고 소음이 들리지 않을 것.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①영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또는 교습소가 위치한 동일건물 안에는 동일교습과정의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다만,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는 건물연면적 3,300㎡ 이상의 건물로서 동일층이 아닐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원칙변경 포함)"을 삭제하고, "적정규모의 시설"을 "적정 규모의 강의실 또는 열람실"로 하며, 동조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시, 검정고시 학원 : 시지역 - 연면적 330㎡ 이상 1,980㎡ 이하, 시이외 지역 - 연면적 198㎡ 이상 1,980㎡ 이하

2 . 외국어, 성인고시학원 : 연면적 198㎡ 이상 1,320㎡ 이하

3 . 독서실 : 연면적 165㎡ 이상 660㎡ 이하

4 . 기타 강의실만 필요한 학원 : 연면적 99㎡ 이상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과외교습소) 영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교습소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교육자로서의 육성을 위하여 학원 또는 교습소가 위치한 동일 건물 안에는 동일교습과정의 교습소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는 건물연면적 3,300 ㎡ 이상의 건물로서 동일층이 아닐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4호중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를 삭제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독서실의 설립, 경영자는 남자독서실은 남자생활지도사를, 여자독서실은 여자생활지도사를 각각 채용하여야 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차 및 제3차의 행정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날부터 1 년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별표1] 실험·실습·실기 등 시설·설비 및 교구 등의 반당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정원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로 보며,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 신청사항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3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춘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후 위치변경 및 정원변경에 따른 원칙변경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정한 시설·설비 기준에 의한다.

[별표 1]

실험·실습·실기 등 시설·설비 및 교구 등의 반당기준

계 열	교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기술	1. 간호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침대 대인용 2개 이상 소인용 1개 이상 (2) 인체모형 1개 이상 (3) 인체해부 및 생리괘도 각1부 이상 (4) 시력 및 색명표 각 1부 이상 (5)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6) 주사기 20종 이상 (7)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8) 혈압계, 청진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 기계	가. 설계실 66㎡ 이상 나. 실습공장 66㎡ 이상 다. 설비 (1) 선반 2대 이상 (2) 모우터 7마력 이상의 것 1대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3. 자동차운전	가. 운전교습장 6,600㎡ 이상으로 하되 2층으로 고가 교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정비장 66㎡ 이상 다. 실습시설 및 장비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각 3조 및 폭 3m 이상 길이 200m 이상의 장방형 주위코스

계 열	교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경사코스와 필요한 각종 안전표지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자동차 엔진체 및 자동차 차대 각 2대 이상 (3) 정상기능의 실습용차량을 실기장 일시 수용능력 1인에 1대 이상 (4)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적합한 도로운전 교습용 차량 1대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4. 자동차정비	가. 정비실습실 66㎡ 이상 나. 기재실 16.5㎡ 이상 다. 실습시설 및 장비 (1) 작업대 10대 이상 (2) 디이젤기관 2대 이상 (3) 가소린기관 5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대 이상 (5) 부대시설 기계 10종 이상 (6) 일반공구 20점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5. 중장비운전	가. 운전실습장 990㎡ 이상 나. 기재실 33㎡ 이상 다. 실습장비 (1) 중기 가동완전품 4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4) 밧데리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스주유기 등 부대시설 기계

계 열	교 습 과 정	반 담 시 설 · 설 비 기 준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6. 중장비정비	가. 정비실습실 66㎡ 이상 나. 기재실 33㎡ 이상 다. 실습장비 (1) 중기정비용 (불가동 분해조정용) 1대 이상 (2) 연진체 2대 이상 (3) 각 장비별 부품 3조 이상 (4) 삼각대, 체인블록, 전기용접기, 산소용접기, 야전용 유압프레스, 오일작기 각 1대 이상 (5)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8종 이상 (6)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일반공구 20점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7. 시계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선반 1대 이상 (2) 전자기계조정기 6대 이상 (3) 본지 20개 이상 (4) 스탠드 20개 이상 (5) 자동분해소제기 1대 이상 다. 기타 시계수리에 필요한 기자재
	8. 냉동(열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가. 실습실 66㎡ 이상 나. 기재실 33㎡ 이상 다. 설비 (1) 대기, 토양, 해양오염측정기 각 1대 이상 (2) 소음진동측정기 2대 이상 (3) 수질검사 시험기 2대 이상 (4) 보일러 4종 이상 (부속장치 포함)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5) 버너 4개 이상 (6) 개스분석기 1개 이상 (7) 소방 및 가스설비,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기 등 5종 이상 (8) 냉동 유니트 5종 이상 (9) 분해조립형, 개방형압축기 각 2대 이상 (10) 진공펌프, 회전식압축기 각 1대 이상 (11) 밀폐형압축기 2대 이상 (12) 증발기, 응축기 2대 이상 (13) 기타 부속기기 10종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9. (삭 제)	(삭 제)
	10. 금속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야금, 표면처리, 열처리, 용접실습기기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11. 알미늄샷시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공작대 4인용 5대 이상 (2) 제도판 및 제도기 각 20개 이상 (3) 드릴머쉰, 리벳팅머쉰, 그라인더 각 2개 이상 (4) 핸드드릴 10개, 바이스 20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12. 화공	가. 실습실 66㎡ 이상 나. 기재실 16.5㎡ 이상 다. 설비 (1) 실습대 5대 이상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2)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등 5종 이상 (3) 각종 소화기 1대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13. 전기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전기실 33㎡ 이상 다. 설비 (1) 모우터 1마력 이상의 것 2대 이상 (2) 수전, 송전배전실 (3) 테스타 10대 이상 (4) 트랜스(변압기) 5대 이상 (5) 실험대 5대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14. 전자(라디오, VTR, 텔레비젼)	가. 실습실 66㎡ 이상 나. 기재실 16.5㎡ 이상 다. 공통기재 (1) 회로시험기 2인당 1대 이상 (2) 신호발전기 3대 이상 (3) 트랜지스터체커 1대 이상 (4) 저주파발진기 2대 이상 (5) 트랜지스터 1대 이상 (6) 시그울레트시 1대 이상 (7) 정전용량계 1대 이상 (8) 임리던스브릿쉬 1대 이상 (9)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30조 이상 라. 텔레비젼 과정 (1) "다"호의 공통기재 (2) 텔레비젼, 스위트발진기 1대 이상

계 열	교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3) 음주선,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4) 고전압계 1대 이상 마. 컴퓨터 기기과정 (1) "다" "라"호의 시설·설비 (2) 컴퓨터(전산기기) 5대 이상 (3) 컴퓨터용 모니터 10대 이상 (4) 컴퓨터용 프린터 1대 이상 (5)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바. 비데오 기기과정 (1) "다" "라"호의 시설·설비 (2) V T R 2대 이상 (3) 비데오카메라 2대 이상 (4) 모니터텔레비전 3대 이상 사.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15. 컴퓨터(퍼스널, 워드프로세서 및 키펀치)	가. 실습실 99㎡ 이상 나. 퍼스널컴퓨터 과정 (1) 플로피디스크 등의 주변기기를 갖춘 퍼스널컴퓨터를 일시 수용인원 1인당 1대 (2)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다. 워드프로세서 및 키펀치 과정 (1) 입력작성을 위한 기기 1인당 1대 (2) 출력을 위한 프린터기 5대이상 (3)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16. 통신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송수신기 각 1대 이상 (2) 전건 1인당 1대 이상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3) 시계 2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17. 전화교환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모의교환대 1인당 1대 (2) 녹음기 1대 이상 (3) 헤드폰 5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18. 조선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계실 66㎡ 이상 다. 설비 (1) 선박기관 및 선체 1대 이상 (2) 일반공구 20조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19. 선원	가. 실습실 66㎡ 이상 나. 공통설비 (1) 실습선박 (30 G/T 이상) 1척 이상 (2) 환등기 1대 이상 다. 갑판과 (1) 정박계선기구(앙카 2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 (2) 로푸 및 와이야로푸 100미터 각 1대 이상 (3)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 (4)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개 이상 (5) 수리용공구 1식 이상 라. 기관과 (1) 디젤기관(30마력 이상) 1대 이상 (2) 기관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계 열	교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3) 기관수리용 공작기구 1식 이상 (4) 펌프류(원심력, 기아식) 각 1대 이상 마.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0. 항공	가. 실습실 99㎡ 이상 나. 설비(항공기 및 엔진은 임대불가) (1) 항공기 - 고정익대 1대 이상 - 회전익대 1대 이상 (2) 엔진 - 수평대향형 1대 이상 - 수직대향형 1대 이상 - 성형 1대 이상 (3) 제트엔진 - Turbo Jet 1대 이상 - Turbo Prop 1대 이상 - Turbo Shaft 1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종 이상 (5)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1. 토목.건축	가. 설계실 66㎡ 이상 나.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다. 측량기 (1) 전경의 5인당 1대 이상 (2) 수준의 5인당 1대 이상 (3) 평균의 5인당 1대 이상 (4) 수수령의 5인당 1대 이상 (5) 기타 부속기구

계 열	교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라.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22. 섬유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방사 및 방적기계 설비 2종 이상 (2) 정련표백, 염색가공 시설·설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3. 패션디자인 (남성복, 여성복, 한복)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2) 축소, 확대복사기 1대 이상 (3) VTR 1대 이상 (4) 에어브로쉬 1Set 이상 (5) 모타 미싱 10대 이상 (6) 패턴실습대 4인당 1대 (7) 스팀아이롱 5대 이상 (8) 인대 5대 이상 (9) 컴퓨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4. 광업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채광 및 탐사, 선광실습기기 3종 이상 (2) 화약 및 발파 작업 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5. 정보처리	가. 실습실 132㎡ 이상 나. 설비 (1) 300MB 이상의 자기디스크 2대, 600LPM(1,280 CPS) 이상의 프린터, 50IPS 이상의 자기테이프를 갖추고 30대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이상의 터미널을 설치 가능한 중형 이상의 계산 조직 1대 (2) 위 "(1)호"의 컴퓨터에 연결된 터미날 20대 이상 (3) 하드디스크를 갖춘 퍼스널컴퓨터 20대 이상 (4) 교육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5) 컴퓨터 회로기판 및 각종 IC류 10대 이상 (6) 입력작성을 위한 기기 5대 이상 (7)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6. 에너지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원자로계측시설, 열관리방사선 실험기기 3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7. (삭 제)	(삭 제)
	28. 수산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실습장 990㎡ 이상 다.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29. (삭 제)	(삭 제)
	30. 농업(임업, 원예)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실습장 990㎡ 이상 다.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31. 동물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사육과 (1) 사육장 330㎡ 이상 (2) 동물 5종 이상 (3) 동물 사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다. 박제과 (1) 박제표본 : 어류, 조류, 갑각류 5종 이상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2) 박재 재작기구 1인당 1조 이상 라. 모피 피혁과 (1) 화공약품 처리장 16.5제곱미터 이상 (2) 회전기, 약품침전탱크전 1대 이상 마.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32. 공예 (도자기)	가. 실습실 66㎡ 이상 나.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33. 보석감정 (금속세공)	가. 실습실 66㎡ 이상 나. 보석감정과정 (1) 현미경 10 - 40배 1인당 1대 (2) 굴절계 1인당 1대 (3) 정밀저울 3인당 1대 (4) 전자저울 3인당 1대 (5) 분광기 2인당 1대 (6) 자외선기 2대 이상 (7) 이색경 2대 이상 (8) 각종 보석류 2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20개 이상 다. 귀금속 세공과정 (1) 산소용접기 2대 이상 (2) 마모기 2대 이상 (3) 광택기 2대 이상 (4) 전기로 2대 이상 (5) 사출기 5대 이상 (6) 원심주조기 2대 이상 (7) 흡입주조기 2대 이상 (8) 고무모형 압착 2대

계 열	교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34. 사진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사진기 3종 이상 (2) 확대기 2대 이상 다. 암실 6.6㎡ 이상 라. 조명장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35. 비디오촬영	가. 실습실 66㎡ 이상 나. 녹음실 16.5㎡ 이상 다. 기재실 6.6㎡ 이상 라. 설비 (1) 회로시험기 2인당 1대 이상 (2) 신호발진기 3대 이상 (3) 트랜지스터체커 1대 이상 (4) 저주파발진기 2대 이상 (5) 트랜지스터 1대 이상 (6) 시그울레트시 1대 이상 (7) 정전용량계 1대 이상 (8) 임피던스브리쉬 1대 이상 (9) 텔레비젼스위트발진기 1대 이상 (10) 음주선,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11) 고전압계 1대 이상 (12) V T R 4인당 1대 이상 (13) 비디오카메라 4인당 1대 이상 (14) 모니터텔레비젼 4인당 1대 이상 (15) 녹음기, 턴테이블, 마이크 2대 이상 (16) 조명기기 2대 이상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17) 자막기 1대 이상 (18) 스크린 1개 이상 (19)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20소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36. 수예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재봉기, 자수과정에 있어서는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다. 손자수, 인형, 조화과정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37. 편물	가. 실습실 66㎡ 이상 나. 기계 편물인 경우에는 편물기 1인당 1대
	38. 인쇄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인쇄기 2종 이상 (2) 활자, 활자판 기타 시설·설비
	39. 피아노조율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정음작업대 2대 이상 (2) 조율튜우너, 튜링해머 각 3대 이상 (3) 스태이샤, 스프운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인지 각 2대 이상 (4) 피아노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40. 산업디자인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디자인스코프(트랜스마스터) 1대 이상 (2) 축소, 확대복사기 1대 이상 (3) 환등기 1대 이상

계 열	교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4) V T R 1대 이상 (5) 램프박스 1대 이상 (6) 제도대 1인당 1대 이상 (7) 콤퓨레셔 1대 이상 (8) 칼라이즈 1대 이상 (9) 컴퓨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41. (삭 제)	(삭 제)
	42. 미용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실습대(4인용 이상) 5대 이상 (2) 건발기, 파마기, 안면기, 노루(나이브레이타, 미용의자, 미안대) 각 10조 이상 (3) 대형거울 2개 이상 (4) 세면장 및 급시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43. 이용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이발의자 10개 이상 (2) 증기소독기 2조 이상 (3) 건발기 2대 이상 (4) 바리캉, 면도, 가위 각 10대 이상 (5) 대형거울 : 이발의자수와 상응하는 개수 다. 세면장 및 급수시설
	44. 제과, 제빵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시청각 교구 세트 (T V, V T R, 슬라이드)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2) 수직형믹스 15대 이상 (중형) (3) 오븐(LPG) 2장 용량 10대 이상 (4) 오븐(전기) 2장 용량 10대 이상 (5) 수평형반죽기(중형) 4대 이상 (6) 발효실(전기) 40장 용량 2대 이상 (7) 발효실(LPG) 40장 용량 2대 이상 (8) 추저울(5Kg) 20대 이상 (9)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계,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10) 습도계, 온도계 각 4대 이상 (11) 로라(Deught Sheeter) 1대 이상 (12) 냉장고(1,000ℓ) 1대 이상 (13) 앙금믹서(중형) 1대 이상 (14) 씽크대 : 실습실별로 2대 이상 (15)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45. 조주 (칵테일)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진열대 4대 이상 (2) 조주대 4대 이상 (3) 양주병(학과 식별용) 200종 이상 (4) 양주병(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46. 안경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컴퓨터 검안기(자동, 수동 각 1대) 이상 (2) 시력표 5개 이상 (3) 옥습기 1인당 1대 (4) 굴절검사기 1인당 1대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5) 검안세트 2대 이상 (6) 과열기 10대 이상 (7) 세척기 2대 이상 (8) 착색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예능	1. 무용	가. 실습실 66㎡ 이상 나. 탈의실 6.6㎡ 이상 다. 설비 (1) 전축, 녹음기 각 1대 이상 (2) 대형거울 (3) 기타 필요한 악기
	2. 미술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정물대 1개 이상 (2) 화판 및 이젤 일시수용인원 1인당 1개 이상 (3) 서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석고 및 석고대 10점 이상 (4) 동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벼루, 모포 등 필요한 시설·설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3. 서예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벼루 1인당 1대, 먹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2) 서법도서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4. 영화·연극	가. 실기실 66㎡ 이상 나. 영화 기술과정 (1) 현상실 9.9㎡ 이상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2) 녹음실 16.5㎡ 이상 (3) 16미리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다. 무대예술과정 또는 배우과정 (1)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성장치 1조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5. 음악	가. 음악실 99㎡ 이상 나. 감상용 전축(채널당 출력 20W 이상) 1대 이상 다. 악기과정 (1) 해당악기 5대 이상 라. 성악과정 (1)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기타 악기 (2) 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 기타 악기 마.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6. 바둑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바둑판 10조 이상 (2) 바둑해설판 1조 이상
가정	1. 조리	가. 조리실 66㎡ 이상 나. 설비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 1대 이상 (3) 환풍기 1대 이상 (4) 각 요리별로 10인당 요리에 필요한 기구1식 이상 (5) 급수시설 : 요리대수에 상응한 수 (6) 재독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2. 꽃기예(꽃꽂이, 조화)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과도 5종 이상 (2) 실습공구 20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사무	1. 관광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관광도서 30종 이상 (2) 한국지도(50만분의1), 세계지도 (3) 고적, 명승지, 안내도 반별 각 1매 (4)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반당 각 1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 주산	가. 실습실 99㎡ 이상 나. 설비 (1) 대형주판 2개 이상 (2) 속독측정시계 2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3. 타자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일시수용인원 1인당 타자기 1대
독서실		가. 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의 넓이는 가로 78Cm 이상, 세로 58Cm 이상 나. 도서 500권 이상, 정기간행물 5종 이상, 열람실이 66㎡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3.3㎡ 마다 독서 5권씩 증가한다. 다. 독서실은 남·여별로 구분 설립한다.

[별표 2]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정원

계 열	교 습 과 정	반당정원	비 고
기술	1. 간호	40	
	2. 기계	40	
	3. 자동차운전		기능교습코스 (곡선, 굴절, 방향 및 전후진) 1개당 1인이내 (1종 대형은 1조당 2인이내) 주위코스 길이 25m당 1인이내로 한다.
	4. 자동차정비	40	
	5. 중장비운전	30	운전실습장 면적의 증가에 따라 반당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6. 중장비정비	30	
	7. 시계	30	
	8. 냉동(안전관리, 환경관리, 열관리)	40	
	9. 금속	40	
	10. 알미늄샷시	30	
	11. 화공	40	
	12. 전기, 전자	40	
	13. 라디오, VTR, 텔레비젼	40	
	14. 컴퓨터, 정보처리	40	
	15. 통신, 전화교환	40	
	16. 조선	40	
	17. 선원	40	
	18. 항공	40	
	19. 토목, 건축	20	
	20. 섬유	30	

계 열	교 습 과 정	반당정원	비 고
기술	21. 패션디자인	40	
	22. 광업	40	
	23. 에너지	30	
	24. 제과, 제빵	40	
	25. 수산	30	실습장 면적의 증가에 따라 반당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26. 조주	40	
	27. 농업 (임업,원예)	40	실습지 면적의 증가에 따라 반당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28. 동물	20	사육장 면적의 증가에 따라 반당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29. 공예(도자기)	40	
	30. 보석감정	30	
	31. 사진, 비디오촬영	30	
	32. 수예	30	
	33. 편물	20	
	34. 인쇄	40	
	35. 피아노조율	30	
	36. 산업디자인	30	
	37. 안경	40	
	38. 미용	20	
	39. 이용	30	
예능	1. 무용	20	무용실 면적의 증가에 따라 반당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2. 미술	30	
	3. 서예	30	

계 열	교 습 과 정	반당정원	비 고
예능	4. 영화, 연극	30	
	5. 음악 (피아노)	20 (9)	
	6. 바둑	30	
가정	1. 조리	40	
	2. 꽃기예 (꽃꽂이, 조화)	30	
사무	1. 관광	40	
	2. 주산	80	
	3. 타자	40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1조 - 제2조(생 략)	제1조 - 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시설기준) ①영 제4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칸막이 시설을 할 때에는 강의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기준) ① ---------- ---------- 16.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강의에 적합한 ---------- .
② - ③(생 략)	② - ③(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학원 시설은 동일 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에서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 개층 이상에 시설할 수 있다.
제4조 - 제5조(생 략)	제4조 - 제5조(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환경 정화 등)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장소는 학원이 위치한 건물로 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물.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건물을 제외한다.	제6조(교육환경 정화 등) 영 제6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장소는 학원이 위치한 건물로 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제외한다.
1. 학원의 출입구로 부터 영 제6조 제3항에 의한 행위를 하는 건물로 출입구가 6m 이상일 것.	1. 건물의 연면적이 3,300 ㎡ 이상이고, 학원의 출입구로부터 교육환경 저해업소의 출입구가 10 m 이상일 것.

현 행	개 정
2. 학원이 위치한 건물에서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의 영업 행위가 보이지 않을 것.	2. 교육환경 저해업소의 위치가 학원으로 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가 되는 동일층 또는 6m 이내가 되는 직상층 및 직하층이 아닐 것.
3. 학원이 위치한 건물에서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의 영업행위의 소음이 들리지 않을 것.	3. 학원으로부터 교육환경 저해업소의 영업행위가 보이지 않고, 소음이 들리지 않을 것.
제7조(학원의 설립) ①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원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교육 기관으로의 육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거리를 유지한다.	제7조(학원의 설립) ①영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또는 교습소가 위치한 동일건물 안에는 동일교습과정의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다만,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는 건물연면적 3,300㎡ 이상의 건물로서 동일층이 아닐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학원을 설립(위치변경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동일과정 학원과의 거리를 시지역은 200m, 읍지역은 10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동일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동일계 학원을 운영하고 위치를 이전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삭 제)
②영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원칙 변경 포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정 규모의	② ---------- 학원의 설립은 -- ---------- 적정 규모

현 행	개 정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의 강의실 또는 열람실을 -----.
1. 입시, 검정고시 학원 : 강의실 연면적 330 ㎡ 이상 1,980 ㎡ 이하	1. 입시, 검정고시 학원 : 시지역 - 연면적 330 ㎡ 이상 1,980 ㎡ 이하, 시이외지역 - 연면적 198 ㎡ 이상 1,980 ㎡ 이하
2. 외국어학원 : 강의실 연면적 198 ㎡ 이상 1,320 ㎡ 이하	2. 외국어, 성인고시 학원 : 연면적 ----------
3. 독서실 : 열람실 연면적 132 ㎡ 이상 660 ㎡ 이하	3. 독서실 : 연면적 165 ㎡ 이상 660 ㎡ 이하
4. 기타 강의실만 필요한 학원 : 강의실 연면적 66㎡ 이상	4. 기타 강의실만 필요한 학원 : 연면적 99 ㎡ 이상
제8조(과외교습소) 영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교습소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교육자로서의 육성을 위하여 교습소의 신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과외교습소) 영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교습소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교육자로서의 육성을 위하여 학원 또는 교습소가 위치한 동일건물안에는 동일교습과정의 교습소 신고를할 수 없다. 다만,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건물연면적 3,300㎡ 이상의 건물로서 동일층이 아닐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학원과 동일 건물, 동일층으로서 출입문을 같이 사용할 때에는 학원과 같은 교습과정의 교습소 신고를 할 수 없다.	
제9조(설립자의 요건) 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을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설립자의 요건) ---------- ---------- ---------- ---------- ----------

현 행	개 정
1 . - 2 . (생 략)	1 . - 2 . (현행과 같음)
3 . 인가, 등록, 신고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 (삭 제)
4 . 인가, 등록, 신고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교습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 (삭 제)
5 . (생 략)	5 . (현행과 같음)
제10조(설립자의 변경)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자의 변경은 신규 설립 또는 설립자 변경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설립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설립자의 변경) ---------- ---------- ---------- ---------- ---------- ------
1 . - 3 . (생 략)	1 . - 3 . (현행과 같음)
4 . 설립자가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외국으로 이민하는 경우	4 . 설립자가 외국으로 이민하는 경우
5 . - 6 .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제11조(사회교육 전문요원, 강사, 생활지도사 등) ① - ③(생 략)	제11조(사회교육 전문요원, 강사, 생활지도사 등) ① - ③(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독서실의 설립, 경영자는 남자독서실은 남자생활지도사를, 여자독서실은 여자생활지도사를 각각 채용하여야 한다
제12조 - 제19조(생 략)	제12조 - 제19조 (현행과 같음)
제20조(행정처분 기준) ① - ③ (생 략)	제20조(행정처분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 신 설 >	④제2차 및 제3차의 행정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날부터 1년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부 칙	부 칙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로 보며,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 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3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후 위치변경 및 정원변경에 따른 원칙변경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정한 시설·설비 기준에 의한다.

[별표 1]

신·구조문대비표

(실험·실습·실기 등 시설·설비 및 교구 등의 반당 기준)

현행			개정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기술	1. - 6. (생략)	(생략)	기술	1. -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시계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설비 (생략)		7. 시계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현행과 같음)
	8. 냉동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기재실 33㎡ 이상 다. 설비 (1) 냉동기(소형) 1대 이상 (2) 냉동 유니트 5대 이상 (3) 분해조립형, 개방 압축기 10대 이상 (4) 진공펌프, 회전식압축기, 각 2대 이상 (5) 밀폐형압축기 5대 이상 (6) 증발기, 음축기 3대 이상 (7) 기타 부속기기 10종 이상 (8) 캇터 5대 이상		8. 냉동 (열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가. 실습실 66㎡ 이상 나. 기재실 33㎡ 이상 다. 설비 (1) 대기, 토양, 해양 오염 측정기 각 1대 이상 (2) 소음진동측정기 2대 이상 (3) 수질검사 시험기 2대 이상 (4) 보일러 4종 이상 (부속장치 포함) (5) 버너 4개 이상 (6) 개스분석기 1개이상 (7) 소방 및 가스설비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기 등 5종 이상

현 행			개 정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9) 바이스 12개 이상 (10) 드릴 (19㎡ 이상) 1개 이상 (11) 동관 작업후 후레어 20조 이상 (12) 벤딩 20조 이상 (13) 리버 20조 이상 라. 작업대 3조 이상 마.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8) 냉동 유니트 5종 이상 (9) 분해조립형, 개방형 압축기 각 2대 이상 (10) 진공펌프, 회전식 압축기 각1대 이상 (11) 밀폐형압축기 2대 이상 (12) 증발기, 응축기 2대 이상 (13) 기타 부속기기 10종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9. 고압가스	(생략)		9. (삭제)	(삭 제)
	10. - 11. (생략)	(생략)		10. - 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2. 화공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다. (생략)		12. 화공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다. (현행과 같음)
	13. 전기	(생략)		13. 전기	(현행과 같음)
	14. 전자 (라디오, VTR, 텔레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사. (생략)		14. 전자 (라디오, VTR, 텔레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사.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비전)			비전)	
	15. 컴퓨터(퍼스널, 키펀치)	가. 실습실 66㎡ 이상 나. 퍼스널컴퓨터 과정 (1) (생략) 다. 키펀치 과정 (1) 입력작성을 위한 기기 1인당 1대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15. 컴퓨터(퍼스널, 워드프로세서 및 키펀치)	가. 실습실 99㎡ 이상 나. 퍼스널컴퓨터 과정 (1) (현행과 같음) (2)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나. 워드프로세서 및 키펀치 과정 (1) (현행과 같음) (2) 출력을 위한 프린터기 5대 이상 (3)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16. - 19. (생략)	(생략)		16. -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 항공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비행기 엔진체 및 기체 1대 이상 (2) 시험기 및 측정기 5종 이상 (3)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0. 항공	가. 실습실 99㎡ 이상 나. 설비 (항공기 및 엔진은 임대불가) (1) 항공기 - 고정익대 1대 이상 - 회전익대 1대 이상 (2) 엔진 - 수평대향형 1대 이상

현 행			개 정		
계열	교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교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 수직대향형 1대 이상 - 성형 1대 이상 (3) 제트엔진 - Turbo Jet 1대 이상 - Turbo Prop 1대 이상 - Turbo Shaft 1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종 이상 (5)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1. - 22. (생략)	(생략)		21. - 2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3. 양재, 양복, 한복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설비 (1) 재봉기 2인당 1대 이상 (2) 전기다리미 2인당 1대 이상 (3) 재단대 4인당 1대		23. 패션디자인 (남성복, 여성복, 한복)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2) 축소, 확대복사기 1대 이상 (3) VTR 1대 이상

현 행			개 정		
계열	교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교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이상 (4) 마네킹 5개 이상 (5) 디자인 실습대 2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4) 에어브로쉬 1Set 이상 (5) 모타미싱 10대 이상 (6) 패턴실습대 4인당 1대 (7) 스팀아이롱 5대 이상 (8) 인대 5대 이상 (9) 컴퓨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4. 광업	(생략)		24. 광업	(현행과 같음)
	25. 컴퓨터 프로그래밍	가. 실습실 66㎡ 이상 나. 포트란, 코볼, 컴파일러,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라인프린터를 갖춘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교육이 가능한 중형 이상의 전자계산조직 1대. 다만, 다른 장소에 있는 전자계산 조직을 온라인 터미널을 설치하여 임차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일시		25. 정보처리	가. 실습실 132㎡ 이상 나. 설비 (1) 300MB 이상의 자기디스크 2대, 600LPM (1,280 CPS) 이상의 프린터, 50IPS 이상의 자기테이프를 갖추고 30대 이상의 터미널을 설치 가능한 중형 이상의 계산조직 1대 (2) 위 "(1)호"의 컴퓨터에 연결된 터미널

현 행			개 정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수용인원 10명당 터미널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0대 이상 (3) 하드디스크를 갖춘 퍼스널컴퓨터 20대 이상 (4) 교육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5) 컴퓨터 회로기판 및 각종 IC류 10대 이상 (6) 입력작성을 위한 기기 5대 이상 (7)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6. 에너지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다. (생략)		26. 에너지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다. (현행과 같음)
	27. 열관리	(생략)		27. (삭제)	(삭 제)
	28. 수산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다. (생략)		28. 수산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다. (현행과 같음)
	29. 안전관리	(생략)		29. (삭제)	(삭 제)
	30. 농업(임업, 원예)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실습실 990㎡ 이상 다. (생략)		30. 농업(임업, 원예)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실습장 990㎡ 이상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계열	교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교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31. 동물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마. (생략)		31. 동물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마. (현행과 같음)
	32. 공예(도자기)	(생략)		32. 공예(도자기)	(현행과 같음)
	33. 보석감정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보석감정에 필요한 기재 2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33. 보석감정(금속세공)	가. 실습실 66㎡ 이상 나. 보석감정과정 (1) 현미경 10-40배 1인당 1대 (2) 굴절계 1인당 1대 (3) 정밀저울 3인당 1대 (4) 전자저울 3인당 1대 (5) 분광기 2인당 1대 (6) 자외선기 2대 이상 (7) 이색경 2대 이상 (8) 각종 보석류 2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20개 이상 다. 귀금속세공과정 (1) 산소용접기 2대 이상 (2) 마모기 2대 이상 (3) 광택기 2대 이상 (4) 전기로 2대 이상 (5) 사출기 5대 이상 (6) 원심주조기 2대 이상

현 행			개 정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7) 흡입주조기 2대 이상 (8) 고무모형 압착 2대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34. 사진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라. (생략)		34. 사진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라. (현행과 같음)
	35. 비디오 촬영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라. (생략)		35. 비디오 촬영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라. (현행과 같음)
	36. 수예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다. (생략)		36. 수예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다. (현행과 같음)
	37. 편물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생략)		37. 편물	가. 실습실 66㎡ 이상 나. (현행과 같음)
	38. 인쇄	가. (생략)		38. 인쇄	(현행과 같음)
	39. 피아노 조율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다. (생략)		39. 피아노 조율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다. (현행과 같음)
	40. 디자인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실습대 10대 이상 (2) 제도판 1인당 1대 (3) 이젤 20개 이상 (4) 석고상 10점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40. 산업디자인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디자인스코프(트랜스마스터) 1대 이상 (2) 축소, 확대복사기 1대 이상 (3) 환등기 1대 이상 (4) VTR 1대 이상

현 행			개 정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5) 램프박스 1대 이상 (6) 제도대 1인당 1대 이상 (7) 콤퓨래셔 1대 이상 (8) 칼라이즈 1대 이상 (9) 컴퓨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41. 환경관리	(생략)		41. 삭제	(삭 제)
	42. 미용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다. (생략)		42. 미용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다. (현행과 같음)
	43. 이용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다. (생략)		43. 이용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 신 설 >		44. 제과, 제빵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시청각 고구 세트 (TV,VTR,슬라이드) (2) 수직형믹스 15대 이상 (중형) (3) 오븐(LPG) 2장 용량 10대 이상 (4) 오븐(전기) 2장 용량 10대 이상 (5) 수평형반죽기(중형)

현 행			개 정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4대 이상 (6) 발효실(전기) 40장 용량 2대 이상 (7) 발효실(LPG) 40장 용량 2대 이상 (8) 추저울(5Kg) 20대 이상 (9) 비중계, 당도계, PH 미터계,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10) 습도계, 온도계 각 4대 이상 (11) 로라(Deught Shee- ter) 1대 이상 (12) 냉장고(1,000ℓ) 1대 이상 (13) 앙금믹서(중형) 1대 이상 (14) 씽크대 : 실습실 별로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설비
	<신 설>	< 신 설 >		45. 조주 (칵테일)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현 행			개 정		
계열	교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교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1) 진열대 4대 이상 (2) 조주대 4대 이상 (3) 양주병 (학과 식별용 200종 이상 (4) 양주병(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신 설>	< 신 설 >		46. 안경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컴퓨터 검안기(자동, 수동 각 1대) 이상 (2) 시력표 5개 이상 (3) 옥습기 1인당 1대 (4) 굴절검사기 1인당 1대 (5) 검안세트 2대 이상 (6) 과열기 10대 이상 (7) 세척기 2대 이상 (8) 착색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현 행			개 정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예능	1. 무용	가. 실습실 49.5㎡ 이상 (현대무용은 66㎡ 이상) 나. 탈의실 (생략) 다. 샤워실 6.6㎡ 이상 라. 설비 (생략)	예능	1. 무용	가. 실습실 66㎡ 이상 나. 탈의실 (현행과 같음) 다. 삭제 라. 설비 (현행과 같음)
	2. 미술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다. (생략)		2. 미술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다. (현행과 같음)
	3. 서예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다. (생략)		3. 서예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다. (현행과 같음)
	4. 영화, 연극	(생략)		4. 영화, 연극	(현행과 같음)
	5. 음악	가. 음악실 49.5㎡ 이상 나. - 마. (생략)		5. 음악	가. 음악실 99㎡ 이상 나. - 마. (현행과 같음)
	6. 바둑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생략)		6. 바둑	가. 실습실 66㎡ 이상 나. (현행과 같음)
가정	1. 조리	(생략)	가정	1. 조리	(현행과 같음)
	2. 꽃기예 (꽃꽂이, 조화)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다. (생략)		2. 꽃기예 (꽃꽂이, 조화)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다. (현행과 같음)
사무	1. 관광	(생략)		1. 관광	(현행과 같음)
	2. 주산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생략		2. 주산	가. 실습실 99㎡ 이상 나. (현행과 같음)
	3. 타자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생략)		3. 타자	가. 실습실 66㎡ 이상 나. (현행과 같음)
독서실		(생 략)	독서실		(현행과 같음)

[별표 2]

신·구조문대비표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정원

현 행			개 정		
계 열	교 습 과 정	반당정원	계 열	교 습 과 정	반당정원
기술	1. - 7. (생략)	(생략)	기술	1. -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냉동, 고압가스	40		8. 냉동 (안전관리, 환경관리, 열관리)	40
	9. - 13. (생략)	(생략)		9. -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4. 컴퓨터	30		14. 컴퓨터, 정보처리	40
	15. - 20. (생략)	(생략)		15. - 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1. 양재, 양복, 한복	40		21. 패션디자인	40
	22. - 23. (생략)	(생략)		22. - 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4. 열관리 <신 설>	40		24. (삭제) 제과, 제빵	40
	25. (생략)	(생략)		2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6. 안전관리 <신 설>	30		26. (삭제) 조주	40

현 행			개 정		
계 열	교 습 과 정	반당정원	계 열	교 습 과 정	반당정원
	27. - 35. (생략)	(생략)		27. - 3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6. 디자인	30		36. 산업디자인	30
	37. 환경관리 <신 설>	40		37. (삭제) 안경	40
	38. - 39. (생략)	(생략)		38. - 3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예능	(생 략)	(생략)	예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정	▪	▪	가정	▪	▪
사무	▪	▪	사무	▪	▪

관계법령(부분) 발췌서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4268호 ; 1990.12.27)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생 략)

②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심히 해칠 염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관청은 미리 관할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청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생 략)

제11조(강사 등) ①학원의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당해 교습과목을 교습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행정처분) ① - ②(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인가취소를 받은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외교습소의 폐지명령을 받은자는 그로부터 6월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학원을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④(생 략)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3282호 ; 1991. 2. 1)

제3조(시설) ①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으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것은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 4. (생 략)

5 .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 ③(생 략)

제4조(시설기준) ①제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강의실 : 반당강의실 면적은 33제곱미터 (자동차 운전계 학원은 66제곱미터) 이상 132 제곱미터 이하 (입시 및 검정고시 과정의 종합반인 경우에는 82.5제곱미터 이하) 로 하되, 1 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5 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6.6 제곱미터 이상으로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칸막이된 강의실의 면적에 상응하여 인원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 - 9 . (생 략)

②제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시설·설비의 계열별·교습과정별 반당기준은 특별시·직할시·도 (이하 "시·도라 한다) 의 조례로 정하되, 반당 실험·실습실 면적은 49.5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한다.

제5조(정원초과교습의 금지 등)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당해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에 부제교습 횟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부제교습 횟수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독서실의 정원은 일시 수용능력 인원으로 한다.

③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료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정원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6조(교육환경정화등) ①(생 략)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학원과 같은 건물.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제외한다.

가. 건물의 연면적이 3,300 제곱미터 이상일것.

나. 학원으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가 되는 동일층 또는 6 미터 이내가 되는 직상층 및 직하층이 아닐것.

다. 건물의 구조가 강습소와 출입구를 달리할 수 있을것.

2 . 학원이 위치한 건물로부터 수평거리 6 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물로서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③ - ④(생 략)

제8조(학원의 설립) ① - ②(생 략)

③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시설기준 및 지역별 교습 수요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등록의 수리 또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교습 수요의 기준에 관하여는 동일계 학원의 분포, 예상 이용자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생 략)

제13조(과외교습) ① - ④(생 략)

⑤과외교습의 부제교습 횟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⑥시·도는 과외교습소의 분포 및 예상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지역별 교습수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강사) ①학원에는 강사를, 독서실에는 생활지도사를 둔다.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사(한문·서예·국악·꽃꽂이·인형·꽃기예·한복 및 구술비즈 교습과목의 강사를 제외한다.) 및 생활지도사의 자격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생략)

교 육 부

사회 01540-253 720-3403 1991. 6.18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감사원 이어 01540 - 919('91.5.29)의 관련입니다.

2. 감사원에서 '91.4.8부터 동년 4.18까지 우리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학원설립 등록수리 또는 인가서 "거리제한" 규정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이 있어 이를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사본 1부. 끝.

계원	계장	과장	국장	교육감

교 육 부 장

사회국제교육국장전결

관리과장

수신처 : 다 4-13, 15-18.

선결		결재(공람)	
접수일시 1991. 6. 21	번호 1870		
처리과 사회체육과			

통 보 사 항					
번호	14	소 관 청 (중앙행정기관)	교육부	관계기관	교육부 본부

제 목 : 학원 설립·운영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설강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운영함에 있어,

같은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시설기준 및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등록의 수리 또는 인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별 교습수요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함에도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및 전라북도교육청을 제외한 광주직할시 등 11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한 지역별 교습수요의 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동일 교습과정의 학원간의 설립인가거리를 두어 새로운 학원의 설립을 제한하여 기존학원만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사실이 있으므로 지역별 교습수요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학원의 자율경쟁을

통한 시설개선과 우수강사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학원설립업무의 지도.감독에 적정을 기할 것이 요망되는 사실이 있음.

주요내용에 대한 시·도별 비교표

o 학원설립시 동일과정 학원과의 거리제한

전국적으로 '91, '92년도중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동일 건물의 동일 교습과정만을 제한하고 있음. (충남은 추진중임)

o 강의실을 필요로하는 학원의 강의실 규모

(단위 : ㎡)

학원별 / 시도별	입 시	검정고시	성인고시	외국어	독서실	기타학원	비고
충 북	시지역: 330 이상 시이외지역 : 198 이상	시지역: 330 이상 시이외지역 : 198 이상	198 이상	198 이상	165 이상	99 이상	
서 울	990	660	330	330	132	99	
부 산	660	660	198	198	132	66(속셈 :99)	
대 구	330	165	165	198	198	속셈 : 82.5	
광 주	330	198	198	198	198	99 (속셈 : 82.5)	
대 전	330	165	165	165	99	99	
인 천	660	330	198	198	132	99	
경 기	20만이상시 : 660 20만미만시 : 528 기타 : 330	시지역 : 495 기타 : 264	330	198	99	시지역: 99 기타:60	

학원별 / 시도별	입 시	검정고시	성인고시	외국어	독서실	기타학원	비고
강 원	종합 : 165 단과 : 99	99	99	99	33	33	
충 남	33	33	33	33	33	33	
전 북	165	99	66	99	99	66	
전 남	종합 : 330 단과 : 198	198	198	198	66	66	
경 북	종합 시: 330 기타: 165 단과 시: 198 기타: 132	시지역 : 198 기타 : 132	시지역 : 198 기타:132	시지역 : 198 기타:132	시지역 : 132 기타:99	시지역 : 99 기타:66	
경 남	종합 시: 660 기타: 330 단과 시: 330 기타: 165	49.5	49.5	시: 165 기타: 99	132	49.6	

* 최소면적 기준임.

○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하는 학원의 실습실 규모

계열별 / 시도별	기 술	예 능	가 정	사 무	비고
충 북	132㎡ 이상 (정보처리) 99㎡ 이상 (항공, 컴퓨터) 66㎡ 이상 (기타 교습과정)	99㎡ 이상 (음악) 66㎡ 이상 (기타교습과정)	66㎡ 아상	99㎡ 이상 (주산) 66㎡ 이상 (관광, 타자	
서 울	165㎡ (정보처리) 132㎡ (냉동, 전자기기) 66㎡ (간호, 비디오촬영, 산업디자인, 안경, 조주, 제과·제빵) 99㎡ (기타 교습과정)	99㎡	99㎡	99㎡	
부 산	132㎡ (광업, 금속, 알미늄샷시, 토목·건축) 66㎡ (냉동외 8개 교습과정) 99㎡ (기타 교습과정)	66㎡ (서예 바둑) 99㎡ (기타 교습과정)	99㎡	99㎡ (관광) 66㎡ (주산 타자)	
대 구	132㎡ (컴퓨터) 66㎡ (중장비정비외 14개 교습과정) 49.5㎡ (기타 교습과정)	115.5㎡ (음악, 미술) 66㎡ (영화 연극) 49.5㎡ (무용, 서예 바둑)	66㎡ (조리) 49.5㎡ (꽃기예)	66㎡ (주산 관광) 49.5㎡ (타자)	
광 주	66㎡ (정보처리외 10개 교습과정) 99㎡ (기타 교습과정)	99㎡	99㎡	99㎡ (주산 타자) 66㎡ (관광)	
대 전	99㎡ (컴퓨터) 49.5㎡ (냉동, 환경관리, 열관리) 66㎡ (기타 교습과정)	99㎡ (음악 미술) 66㎡ (기타 교습과정)	66㎡	99㎡ (주산) 66㎡ (관광 타자)	
경 기	132㎡ (전자기기, 정보처리) 66㎡ (산업디자인외 5개 교습과정) 99㎡ (기타 교습과정)	99㎡ (시지역) 66㎡ (읍, 면지역)	99㎡ (시) 66㎡ (읍, 면)	99㎡ (시) 66㎡ (읍, 면)	
충 남	66㎡ (간호외 19과정) 49.5㎡ (냉동외 17개 교습과정)	66㎡ (무용 영화, 연극) 49.5㎡ (기타)	66㎡ (기타) 49.5㎡ (꽃기예)	66㎡ (관광 주산) 49.5㎡ (타자)	
전 북	66㎡ (간호조무사외 16개 교습과정) 49.5㎡ (냉동외 18개 교습과정)	66㎡ (영화 연극) 49.5㎡ (기타)	66㎡ (조리) 49.5㎡ (꽃기예)	66㎡ (관광, 주산) 49.5㎡ (타자)	

* 최소면적임.

o 감의실 칸막이 시설

충 북	16.5㎡ 이상
대 구	. 입시, 검정고시, 성인고시학원 : 33㎡ 이상 . 속셈학원 : 16.5㎡ 이상
대 전	33㎡ 이상
전 북	16.5㎡ 이상

o 교육환경 저해업소 설치허가 장소의 범위 (학원건물과 6M 이내 건물인 경우)

충 북	. 건물의 연면적이 3300㎡ 이상이고 출입구가 10M 이상일 것 . 학원으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가 되는 동일층 또는 6M 이내가 되는 직상층 및 직하층이 아닐 것 . 영업행위가 보이지 않고 소음이 들리지 않을 것
부 산	. 출입구 거리가 20M 이상이고 경계벽에 창문이 없으며 출입구가 반대 또는 측면 방향일 것
대 구	. 출입구가 수평거리 20M 이상이고 경계벽에 창문이 없으며 출입구가 반대 또는 측면일 것 . 수평거리 6M 이내가 되는 동일층과 그 직상층 및 직하층이 아닐 것
대 전	. 학원이 6M 이상 떨어져 있고 출입구가 20M 이상되며 내부행위가 보이지 않고 소음이 들리지 않을 것
광 주	. 수평거리 6M 이내의 건물은 모두 허가 금지
경 기	. 학원과의 거리가 6M 이상이고 출입구가 30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충 남 경 남 경 북	. 건물의 연면적이 3300㎡ 이상이고, 학원으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가 되는 동일층 또는 직상·하층이 아닐 것
전 북	. 건물의 연면적이 3300㎡ 이상이고, 수평거리 6M 이내가 되는 동일층 또는 그 직상층 및 직하층이 아니며 영업행위가 보이거나 소음이 들리지 않을것
전 남	. 연면적이 3300㎡ 이상으로 주 통행로가 다르고 영업행위가 보이지 않으며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이나 건물

◎충청북도교육청공고제1992-118호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2년 10월 2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행규정상 불합리하고 미비한점을 개선·보완하고, 시설·설비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리제한 폐지

○ 학원설립시 기존 동일과정 학원과의 거리제한(시지역 200m, 읍지역 100m이상)을 폐지하여 학원의 자율경쟁을 통한 시설·설비개선 및 우수강사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회의 변화 및 기술수준의 향상에 따라 교습과정을 신설 또는 변경함.

○ 신설교습과정 : 조주(칵테일), 제과·제빵, 안경

○ 변경교습과정

현 행	변 경	비 고
냉동, 열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냉동(열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포함)	통 합
양재, 양복, 한복	패션디자인	과정명변경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처리	〃
디자인	산업디자인	〃

다. 시설·설비기준 강화

○ 입시, 검정고시 학원의 강의실 연면적을 시지역을 330㎡이상 1,980㎡이하로, 시이외 지역은 132㎡이상 1,980㎡이하로 구분 조정하고, 성인고시 학원은 66㎡이상에서 198㎡이상 1,320㎡이하로 함.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 실습실 면적을 49.5㎡ 이상에서 66㎡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단, 항공 99㎡이상, 정보처리 132㎡이상임.)

○ 냉동, 항공, 패션디자인, 정보처리, 보석감정, 산업디자인 교습과정의 반당 설비 기준을 실질적인 실습을 하여 교육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규정함.

라. 교육환경 정화지역 범위 조정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학원이 위치한 건물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에 위치한 건물은 모두 학원과 인접한 장소로 정함. 다만, 연면적이 3,300㎡이상인 건물로서 환경저해업소의 출입구가 10m이상 떨어져 있고, 수평거리 10m이내가 되는 동일층 또는 6m이내가 되는 직상층 및 직하층이 아니며, 영업행위 및 소음이 들리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함.

마. 설립자의 요건 및 설립자 변경시의 단서 조항 중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설립자가 타시·도로 전출하는 경우"를 삭제함.

바. 부칙중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조항 신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록된 학원도 위치변경 및 정원변경에 따른 원칙변경의 경우에는 개정된 조례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함.

3.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 교육감(참조 : 사회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66-772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 민 의 견 수 렴 결 과

구 분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주민 및 학원연합회등 의견	개 정 조 례 (안)	사 유
1. 거리제한 폐지 (학원, 고습소)	1. 신규 설립시 기존 동일 고습과정과의 거리제한 시지역 200m 이상 읍지역 100m 이상	1. 거리제한 규정 삭제 (제7조제1항제1호 삭제)	o 학원연합회 : 기존 학원의 보호차원에서 존속 희망 o 주민(45명) : 폐지 여부와 실시시기 문의 (주소, 성명 기재 불가)	거리제한 규정 삭제 (제7조제1항제1호 삭제)	o 학원설립·운영의 균등기회 부여 o 학원운영의 정상화 도모 - 자유경쟁 o 감사원 감사 시정요구 사항 ('91. 6.18)
2. 단과 입시학원 신설	없 음	없 음	o 학원연합회 : 단과 입시학원 신설 132㎡ 이상 o 학원연합회 문리분과위원회 : 단과 입시학원 신설 반대	없 음	o 학원운영 부실 초래 (시설, 강사) o 현재 학원의 수강생수 정원에 상당수 미달
3. 입시, 검정고시학원 강의실 면적	o 전지역 : 330㎡ 이상, 1,980㎡ 이하	o 시지역 : 330㎡ 이상 1,980㎡ 이하 o 시이외지역 : 132㎡ 이상 1,980㎡ 이하	o 학원연합회 : 입법예고안과 같음 o 학원연합회 문리분과위원회 (입시학원장) : - 시지역 : 495㎡ 이상, 1,980㎡ 이하 - 시이외지역 : 330㎡ 이상 1,980㎡ 이하	o 시지역 : 330㎡ 이상 1,980㎡ 이하 o 시이외지역 : 198㎡이상 1,980㎡ 이하	o 시이외지역은 대형 건물 확보가 어려움. o 중학생의 학기중 학원수강 허용으로 시이외지역 학생의 학원수강 기회 부여

구 분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주민 및 학원연합회중복지회의 의견	개 정 조 례 (안)	사 유
4. 외국어, 성인고시학원 강의실 면적	o 외국어학원 : 198㎡이상 1,320㎡ 이하 o 성인고시학원: 66㎡이상	o 외국어학원 : 198㎡ 이상 1,320㎡ 이하 o 성인고시학원 : 198㎡이상 1,320㎡ 이하	o 학원연합회 - 외국어학원 : 247㎡ 이상 1,320㎡ 이하 - 성인고시학원 : 입법예고안과 같음	o 외국어, 성인고시학원 : 198㎡ 이상 1,320㎡ 이하	o 외국어학원 - 현행 면적 적정 (현재 13개학원) o 성인고시학원의 현행기준은 협소함 - 시설강화
5. 독서실의 일람실 면적	132㎡ 이상 660㎡ 이하	132㎡ 이상 660㎡ 이하	o 학원연합회 : 198㎡ 이상 660㎡ 이하	165㎡ 이상 660㎡ 이하	o 독서실 시설강화 - 점진적으로 강화
6. 기타학원(부기속기, 웅변, 속셈) 강의실 면적	66㎡ 이상	66㎡ 이상	o 학원연합회 : 99㎡ 이상	99㎡ 이상	o 시설강화
7. 과외교습소 면적제한	없 음	없 음	o 학원연합회 : 33㎡이하 최대 면적 제한	없 음	o 고습환경 악화 o 최대면적 제한 불가능
8. 컴퓨터(퍼스널 키펀치), 주산타사, 음악학원 실습실 최소 면적	o 컴퓨터(퍼스널, 키펀치) 주산 : 66㎡이상 o 타자,음악 : 49.5㎡이상	o 컴퓨터(퍼스널, 워드프로세서, 키펀치), 주산 : 66㎡ 이상 o 타자, 음악 : 66㎡ 이상	o 학원연합회 중복지회 - 컴퓨터(퍼스널, 워드프로세서, 키펀치) : 99㎡이상 - 주산, 음악 : 99㎡ 이상 - 타자 : 49.5㎡ 이상	o 컴퓨터(퍼스널, 워드프로세서, 키펀치), 주산, 음악 : 99㎡ 이상 o 타자 : 66㎡ 이상	o 시설강화 - 변동정원 . 주산 : 80명 . 음악 : 20명 (피아노 9명) . 타자 : 40명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요약

조 항	현 행	개 정	사 유
제3조제4항 (시설기준)	< 신 설 >	o 학원시설은 동일건물 동일층 원칙 (생활지도 및 고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직상·하층 연계사용 가능)	o 학원 교육여건 강화 - 강의실과 실습실 동일장소에 설치 (실습실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6조 (교육환경정화)	o 교육환경 저해업소의 인접장소 범위는 학원이 위치한 건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물로 하되 다음 요건을 갖춘 장소 제외 1. 학원으로부터 영업행위를 하는 건물의 출입구가 6m 이상일 것 2. 학원이 위치한 건물에서 영업소의 행위가 보이지 않고 소음이 들리지 않을 것	o 교육환경 저해업소의 인접장소 범위는 학원이 위치한 건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로 하되 다음 요건을 갖춘 장소 제외 1. 건물의 연면적이 3,300㎡ 이상이고 학원의 출입구로부터 교육환경저해업소의 출입구가 10m 이상일 것 2. 교육환경저해 업소의 위치가 학원으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가 되는 동일층 또는 6m 이내가 되는 직상·하층이 아닐것 3. 학원으로부터 교육환경저해업소의 영업행위가 보이지 않고 소음이 들리지 않을 것.	o 교육환경 정화 강화
제7조, 제8조 (학원 및 과외교습소 거리제한)	o 학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학원과의 거리를 제한 o 시지역 : 200m, 읍지역 : 100m	o 거리제한 규정 삭제 o 학원, 교습소가 위치한 동일건물내에는 동일교습과정의 학원, 교습소 설립불가 단, 3,300㎡이상 건물로 동일층이 아닐경우 예외	o 학원설립·운영의 균등기회 부여 o 학원운영의 정상화 도모 o 감사원 감사 시정요구사항 ('91. 6.18)

조 항	현 행	개 정	사 유
제7조제2항 (학원 강의실 또는 열람실 면적)	1. 입시, 검정고시 학원 : 330㎡ 이상 1,980㎡ 이하	1. 입시, 검정고시 학원 o 시지역 : 330㎡ 이상 1,980㎡ 이하 o 시이외지역 : 198㎡ 이상 1,980㎡ 이하	1. 입시, 검정고시 학원 o 시이외지역은 대형 건물 확보가 어려움 o 중학생의 학기중 학원수강 허용으로 시이외지역 학생의 학원수강 기회 부여
	2. 외국어학원 : 198㎡ 이상 1,320㎡ 이하	2. 외국어학원, 성인고시학원 : 198㎡ 이상 1,320㎡ 이하	2. 외국어, 성인고시학원 o 외국어학원 : 현행 면적 적정 o 성인고시학원의 현행기준 협소 (66㎡이상) - 시설강화
	3. 독서실 : 132㎡ 이상 660㎡ 이하	3. 독서실 : 165㎡ 이상 660㎡ 이하	3. 독서실 : 시설강화
	4. 기타 강의실만 필요한 학원 : 66㎡ 이상	4. 기타 강의실만 필요한 학원 : 99㎡ 이상	4. 기타 강의실만 필요한 학원 : 시설강화
제9조제3항,4항 (설립자의 요건)	1. 인가·등록·신고·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삭 제 >	1. 설립자의 거주지별(주민등록) 지역제한은 불합리
	2. 인가·등록·신고·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교습 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자	< 삭 제 >	2.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3항(행정처분)에 위배 - 등록·인가 취소후 6월 이내에 설립 불가
제10조제4항 (설립자의 변경)	설립자 변경이 신규설립 또는 설립자 변경후 1년 이내에 가능한 경우 o 설립자가 타시·도로 전출하거나 외국으로 이민하는 경우	o 설립자가 외국으로 이민하는 경우 - 타시·도 전출조항 삭제	o 주민등록의 타시·도 전출은 불합리 o 설립자의 거주지 지역제한은 불합리
제11조제4항 (생활지도사)	< 신 설 >	o 남자독서실에는 남자생활지도사를 여자독서실에는 여자생활지도사를 채용해야 한다.	o 독서실의 생활지도 충실 도모

조 항	현 행	개 정	사 유
제20조제4항 (행정처분 기준) [별표1] (실험·실습·실기 등 시설·설비 및 교구등의 반당 기준)	< 신 설 >	o 제2차 및 제3차의 행정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o 행정처분 기준의 기간을 명확히 정함.
1. 실습실 면적	1. 최소면적 : 49.5㎡ 이상 시계, 냉동, 화공, 전자, 고압가스, 양재, 양복, 한복, 에너지, 수산, 안전관리, 농업, 보석감정, 사진, 비디오촬영, 수예, 편물, 미용, 이용, 피아노조율, 음악, 무용, 미술, 서예, 타자, 바둑, 꽃기예	1. 최소면적 : 66㎡ 이상 좌동 (음악 제외)	o 시설강화
	2. 최소면적 : 66㎡ 이상 항공, 주산, 컴퓨터(퍼스널, 워드프로세서 및 키펀치), 컴퓨터 프로그래밍	2. 최소면적 : 99㎡ 이상 o 항공, 주산, 음악, 컴퓨터(퍼스널, 워드프로세서 및 키펀치) 3. 최소면적 : 132㎡ 이상 (정보처리)	o 시설강화
2. 과정신설	< 신 설 >	o 제과·제빵, 조주(칵테일), 안경	o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
3. 과정변경	1. 냉동	1. 냉동(열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1. 유사과정인 열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과정을 냉동과정에 포함
	2. 양재, 양복, 한복	2. 패션디자인	2. 패션디자인 과정에 포함
	3. 컴퓨터 프로그래밍	3. 정보처리	3. 정보처리과정에 컴퓨터프로그래밍 과정 포함

조 항	현 행	개 정	사 유
	4. 보석감정 5. 디자인	4. 보석감정 (금속세공) 5. 산업디자인	4. 보석감정 과정에 금속세공 과정 포함 5. 현행 미술 위주의 디자인을 산업디자인으로 변경
4. 설비·교구의 반당기준	o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o 일부 과정의 설비·교구 강화 및 변경 : 냉동, 컴퓨터(퍼스널, 워드프로세서 및 키펀치), 항공, 패션디자인, 정보처리, 보석감정, 산업디자인 - 설비·교구내역은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o 시설강화
5. 반당정원	o 컴퓨터 반당정원 : 30명	o 컴퓨터, 정보처리과정 반당정원 : 40명	o 교습과정 변경 및 면적상향 조정

(별첨 7)

'9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출년월일	1993. 3. .

'9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처분안

의안번호	21-6

제출년월일 1993. 3.

제 출 자 충정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정수관리 대상물품중 학생교육 및 교육행정에 필요한 물품의 취득과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된 물품을 처분하여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정수관리 대상물품중 통폐합학교 학생의 등하교에 필요한 버스와 각종 학생 교육에 소요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및 교육행정용품 46개품목 3,596개 물품을 취득하고자 함.

나. 장기간 사용하여 노후화된 차량과 실험실습 기자재등 47개 품목 1,777개 물품을 처분하고자 함.

3. 제안근거

가. 지방재정법 제95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

품 목 별 내 역

번호	품명	정수	보유량	취득			처분		
				수량	금액	취득사유	수량	금액	취득사유
1	중형승용차	19	18	3	27,500	노후차량교체및교육행정추진	2	12,685	내용연수경과및노후화
2	소형승용차	68	68				1	4,000	"
3	대형승합차	21	18	3	102,572	통폐합학교학생수송			
4	중형승합차	48	41	8	129,545	"	1	15,170	내용연수경과및노후화
5	소형화물차	8	9				4	32,891	"
6	중형화물차	4	3	3	22,764	노후차량교체및농고학생실습	2	12,511	"
7	자전거	1,039	376	119	5,674	학교업무용	57	3,712	"
8	모터싸이클(90CC이하)	502	28	7	5,870	"	1	561	"
9	윤전등사기(수동)	461	160				23	6,314	"
10	윤전등사기(전동)	1,132	550	23	102,124	학생교육용	37	41,220	"
11	제판기윤전등사기용	1,186	370	3	11,328	"	36	52,206	"
12	제판기오프셋인쇄기용	420	16	1	5,000	"	1	1,000	"
13	오프셋인쇄기	391	32				2	4,975	"
14	전자복사기	1,192	1,058	43	131,527	행정업무추진용	98	193,449	"
15	제단기,종이	434	81	13	3,109	"	7	241	"
16	냉장고	1,202	661	69	36,800	"	16	6,408	"
17	방독면,특수	1,945	599	57	2,026	학생교육용	2	60	"
18	방독면,일반	12,886	3,496	1,122	22,269	"	48	540	"
19	온풍난방기	1,200	341	26	35,664	행정업무추진용			
20	전화기,키폰	897	318	8	5,978	"	1	6,000	내용연수경과및노후화

번호	품명	정수	보유량	취득			처분		
				수량	금액	취득사유	수량	금액	취득사유
21	모사전송기	485	507	9	18,115	행정업무용	6	14,037	내용연수경과 및 노후화
22	카메라,TV	445	93	6	5,378	학생교육용	2	1,075	"
23	녹음기	1,097	810	22	6,330	"	49	4,119	"
24	녹음기(VTR)	1,066	1,992	88	33,993	"	53	27,382	"
25	오실로스코프	811	209	68	57,250	"			
26	건조기	685	119	5	1,560	"	6	1,206	내용연수경과 및 노후화
27	원심분리기	814	136				3	388	"
28	투영기	716	140	6	3,642	학생교육용	11	613	"
29	현미경	14,555	11,239	240	42,485	"	215	13,290	"
30	현미경,사진기		186	26	1,116	"	22	885	"
31	청사진기	29	19				2	3,218	"
32	동사진카메라	456	228	10	7,926	학생교육용	6	1,701	"
33	정사진카메라	942	669	32	10,727	"	23	2,546	"
34	영사기	456	173	1	27	"	4	532	"
35	환등기	791	983	9	2,834	"	36	6,139	"
36	투영기	1,114	748	19	8,868	"	21	3,803	"
37	금고	482	140	5	262	행정업무추진용	10	86	"
38	세탁기	436	31	5	2,668	학생교육용			
39	전자계산기	3,152	1,520	102	3,257	"	67	2,074	내용연수경과 및 노후화
40	타자기수동	2,334	2,144	1	200	"	99	15,064	"
41	타자기전동	1,319	222	12	5,068	"	2	912	"
42	타자기전자	1,517	812	32	12,891	"	2	732	"
43	워드프로세서	845	303	39	29,534	"	3	7,714	"

번호	품명	정수	보유량	취득			처분		
				수량	금액	취득사유	수량	금액	취득사유
44	프린터	1,739	902	156	152,965	학생교육용	11	10,131	내용연수경과 및노후화
45	컴퓨터8비트		3,070				432	101,169	"
46	컴퓨터16비트	11,563	6,846	678	429,471	학생교육용	1	700	"
47	컴퓨터32비트	91	74	90	115,766	"			
48	컴퓨터32비트 초과		2	4	18,000	"			
49	모니터		2,166	62	26,786	"	8	857	내용연수경과 및노후화
50	금액기	12	28				1	594	"
51	문서세단기	438	10	2	570	행정업무수진용			
52	카세트라디오	4,747	5,310	284	28,997	학생교육용	263	16,560	내용연수경과 및 노후화
53	탁구대	1,145	705	36	9,954	"	30	2,575	노후화
54	뜀틀	1,800	1,974	39	6,165	"	50	2,481	"
계				3,596	1,692,555		1,777	636,526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제95조 (물품관리기준의설정)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호)

제113조 (물품관리기준의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991. 12. 31. 법률제4473호)

제13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①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 8 생 략

9 기타법령과 시·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 제4호내지 제9호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한다.

(별첨 8)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3. 3. .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 안

의안 번호	2-7

제출년월일 : 1993. 3.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도유(교육)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의 취득, 처분 물량변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도유(교육)재산의 관리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상기관 : 본청 및 지역교육청

나. 변경 내역

1) 취득 (단위:㎡/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지	69,448	14,627,762	69,448	14,627,762	0	0
건물	0	0	42,608.92	15,283,406	42,608.92	15,283,406
계	69,448	14,627,762	112,056.92	29,911,168	42,608.92	15,283,406

2) 처분 (단위:㎡/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지	113,091.9	3,324,939	132,099.9	4,362,317	19,008	1,037,378
건물	21,897.3	2,053,862	23,386.57	2,084,334	1,489.27	30,472
공작물	23 식	24,787	23 식	24,787	0	0
계	134,989.2 (23)	5,403,588	155,486.47 (23)	6,471,438	20,497.27	1,067,850

3) 유상사용허가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지	529,811.16	84,487	646,772.16	91,021	116,961	6,534
건물	19,229	87,488	22,806.18	98,805	3,577.18	11,317
계	549,040.16	171,975	669,578.34	189,826	120,538.18	17,851

4) 무상사용허가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지	88,540		89,475		935	
건물	7,070.6		7,070.6		0	
계	95,610.6		96,545.6		935	

3. 제안근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4. '93.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충청북도교육청

(단위:㎡/천원)

구분	재산별	학교명	사업별	당초 물량	당초 금액	변경 물량	변경 금액	사유
취득	건물	청주농고	기금시 신축			330	70,800	시업계획
		충주농고	실습실 증축			381.22	179,173	"
		충주공고	교실 증축			180	66,000	"
		광신공고	"			174.6	66,000	"
			실습실 증축			385.95	181,395	"
		제천농고	"			135	63,450	"
		부강공고	교실 증축			306	99,000	"
		옥천공고	"			270	99,000	"
		영동농공고	"			270	99,000	"
			온실 증축			297	70,000	"
		학산상고	계단실 증축			33.75	33,000	"
		진천농고	교실 증축			321.3	115,500	"
		증평공고	"			270	99,000	"
			실습실 증축			167	78,525	"
			변소 증축			30	33,000	"

충청북도 교육청

(단위:㎡/천원)

구분	재산별	학교명	사업명	당초 물량	당초 금액	변경 물량	변경 금액	사유
취득	건물	미원공고	교실 증축			235	82,500	사업 계획
			실습실 증축			756	358,000	"
		금왕공고	"			368.1	174,391	"
		옥천상고	"			270	104,781	"
		진천상고	"			380	147,470	"
		체육고	교실 증축			288	172,000	"
		보은여고	변소 증축			45	33,000	"
		계				5,893.92	2,424,985	
처분	토지	충주농고	토지 보상			6,764	31,135	택지 편입
		한국광산공고	"			441	162	도로 편입
		청주농고	토지 매각			338	4,394	주택부지 (6기구)
		충주고	"			7	430	" (1기구)
		옥천공고	"			125	2,012	불용 토지
		계				7,675	38,133	
	건물	영동농공고	시택 철기			44.29	111	노 후(목.스.1941)
		제천고	구내매점철거			158	6,901	개 축(시.벽.스,1975)
		계				202.29	7,012	

청주 교육청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별	학 교 명	사 업 명	당 초		변 경		사 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취 득	건 물	반 송 국	교사 신축			5,598	2,198,592	신 설 학 교
		사 천 국	"			5,623	1,283,792	"
		정 남 국	교실 증축			1,125	419,500	사 업 계 획
		강 서 국	"			900	330,000	"
		금 천 국	"			459	185,000	"
		봉 정 국	"			720	264,000	"
		산 남 국	"			1,008	429,000	"
		율 량 국	"			180	66,000	"
		남 성 중	교사 신축			3,314	1,330,556	신 설 학 교
		율 량 중	"			6,683	1,268,556	"
		청주여중	교실 증축			243	102,500	사 업 계 획
		청주동중	"			1,102	396,000	"
		청 운 중	"			540	231,000	"
		주 성 중	"			180	66,000	"
		가 경 중	"			1,620	594,000	"
		계				29,295	9,164,496	
처 분	건 물	우 암 국	숙직실 철거			47.93	2,020	노 후(연와,스.1965)
		계				47.93	2,020	

충 주 교 육 청

(단위 : ㎡/전원)

구 분	재산별	학 교 명	사 업 명	당초		변경		사 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취 득	건 물	연 수 국	교사 신축			4,565	2,450,175	신 설 학 교
		중 앙 중	"			2,315	1,045,750	"
		대 림 국	교실 증축			378	132,000	사 업 계 획
		예 성 국	계단실 증축			81	33,000	"
		충주여중	"			81	33,000	"
		계				7,420	3,693,925	
처 분	토 지	교 현 국	토지 보상			271	52,168	도로 편입
		덕 신 국	"			57	507	"
		충 일 중	"			76	8,436	"
		계				404	61,111	
	건 물	삼 원 국	교실 철거			247.93	2,200	노 후(시.벽.스,1963)
			변소 철거			26.45	400	" (시.벽.스,1948)
			사택 철거			59.5	500	" (시.벽.와,1968)
		동 락 국	"			60	500	" (목.와,1968)
		노 은 국	"			49.58	400	" (목.와,1945)
		단 월 국	도서관 철거			162	1,500	" (시.벽.스,1964)
		수 상 국	변소 철거			17.68	300	" (목.스,1962)
		수 회 국	사택 철거			37.49	400	" (목.와,1948)

충 주 교 육 청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별	학 교 명	사 업 명	당초		변경		사 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계				660.63	6,200	
사 용	토 지	충 주 중	유상 사용 허가	4,787	652	10,165	458	과수원 경작
허 가		야 동 국	〃	2,853	259	77,233	824	밤나무 경작
		교 현 국	〃	271	284	0	0	주택부지로 점유자 전출
		목 행 국	〃	2,269	1,286	2,090	934	〃
		소 태 국	〃	347	126	0	0	〃
		수안보국	〃	0	0	5,029	2,679	스키장사용
		충주교육청	〃	0	0	9,736	974	폐지학교(향산본교)
		계		10,527	2,607	104,253	5,869	
	건 물	충주교육청	유상 사용 허가	0	0	621.38	2,761	폐지학교(향산본교)
		계		0	0	621.38	2,761	
	토 지	충주교육청	무상 사용 허가	270		215		문화회관 주차장
		계		270		215		

제 천 교 육 청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별	학 교 명	사 업 명	당 초		변 경		사 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처 분	토 지	제 천 중	토지 보상			1,477	155,552	도로 편입
		제천동중	"			1,020	30,600	"
		수 산 중	"			131	5,000	"
		청전국고	"			4,231	634,650	"
		계				6,859	825,802	

청 원 교 육 청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별	학 교 명	사 업 명	당 초		변 경		사 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처 분	건 물	외 천 국	변소 철거			46.28	1,232	노 후(시.벽.스,1973)
		계				46.28	1,232	

옥 천 교 육 청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별	학 교 명	사 업 명	당 초		변 경		사 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취 득	토 지	옥천교육청	토지 매입			5	4,340	테니스장 사용
			교환 취득	5	4,340	0	0	계획 변경
		계		5	4,340	5	4,340	

옥천교육청

(단위 : ㎡/천원)

구분	재산별	학교명	사업명	당초		변경		사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처분	토지	옥천교육청	토지 매각			11	9,548	도로 사용
			교환 처분	11	9,548	0	0	계획 변경
		계		11	9,548	11	9,548	
	건물	옥천중	수위실 철거			5.28	277	노 후(시.벽.스,1975)
		계				5.28	277	
사용 허가	토지	용촌분교	유상 사용 허가	50	7	100	7	
		군서국	"	473	95	467	94	
		계		523	102	567	101	

영동교육청

(단위 : ㎡/천원)

구분	재산별	학교명	사업명	당초		변경		사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사용 허가	토지	영동교육청	유상 사용 허가			7,507	1,314	폐지학교(산막분교)
			"			5,008	501	" (조동분교)
			"			2,040	190	" (삼봉분교)
			"			5,129	949	" (심원분교)
		영동국	"			3,507	319	" (화신분교)
		계				23,191	3,273	

영 동 교 육 청

(단위 : ㎡/천원)

구 분	재신별	학 교 명	사 업 명	당초		변경		사 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사 용 허 가	건 물	영동교육청	유상 사용 허가			739.3	2,688	폐지학교(신막분교)
			"			796.7	2,379	" (조동분교)
			"			254.3	760	" (심봉분교)
			"			787.8	1,569	" (심원분교)
		영 동 국	"			377.7	1,160	" (회신분교)
		계	"			2,955.8	8,556	

음 성 교 육 청

(단위 : ㎡/천원)

구 분	재신별	학 교 명	사 업 명	당초		변경		사 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사 용 허 가	토 지	음성교육청	무상 사용 허가			990		음성군청 금왕도서관 건립 부지(기부채납)
		계				990		

(단위 : ㎡/천원)

단 앙 교 육 청

구 분	재산별	학 교 명	사 업 명	당 초		변 경		사 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처 분	토 지	단앙교육청	토지 매각			4,070	112,332	구도서관 부지
		계				4,070	112,332	
	건 물	단앙교육청	건물 매각			526.86	13,761	구도서관 건물
		계				526.86	13,761	

관계법령 발췌서

o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4 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및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별첨 9)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21-2

제출년월일 : 1993. 3.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에 의거 편성한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국가부담수입 180억 6,360만 1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감 2,973만 6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감 4억 8,184만 8천원 등 총 175억 5,201만 7천원의 추가 재원으로 교육위원회 4,354만 2천원, 본청 19억 4,477만 9천원, 지역교육청 143억 1,146만 8천원, 예비비 12억 5,222만 8천원의 규모로 예산을 추가하여 총 4,328억 4,491만 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93년도 충청북도 교육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함.

3. 예 산 안 : 별 첨

4. 예산편성 참고자료

o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 별 첨

(별첨 10)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3. 3. 20.)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목 차

1. 심사경과.....299

2. 제안설명의 요지.....299

3. 질의 및 답변요지.....300

4. 토론요지.....300

5. 심사보고 요지.....300

6. 심사결과.....301

7. 소수 의견요지.....30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3년 3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 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o 제출일자 : 1993년 3월 10일

o 회부일자 : 1993년 3월 19일

다. 상정일자 :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o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93. 3. 20.) 심의·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현행조례의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학원의 시설·설비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사회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o 학원시설은 동일건물 동일층 사용을 원칙으로하되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개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안 제3조 제4항)

o 학원 주위의 교육환경 정화지역 범위 강화(안 제6조)

o 학원 설립시 적용되던 동일교습 과정 학원과의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동일교습과정의 동일건물내 설립금지 조항으로 대체(안 제7조 제1항)

o 학원 설립요건중 적정시설 규모를 강화(안 제7조 제2항)

o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안 부칙 제3조)

o 일부교습과정 신설 또는 변경과 교습과정별 반당 시설·설비기준의 강화(안 별표1, 별표2)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 의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위원장 김 응 복	○ 조례안 부칙 2조에 의하면`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사회교육 계장 안 용 균	○ 조례가 공포되기전이므로 종전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거리제한규정이 있으므로 많은 신청이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위원 홍 신 희	○ 조례안 부칙 3조에 의거 기존의 학원은 새규정에 의한 강화된 시설기준 적용을 배제하게 되고 또한 설립자 변경시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게 되어 지나치게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	사회교육 계장 안 용 균	○ 학원의 이전 또는 정원 변경에 따를 경우는 새로운 시설기준을 적용하여야하며, 다만 입법예고시 설립자 변경에 대하여 그 적용이 예고가 않되었고, 학원의 시설에 대한 인가·등록이므로, 설립자 변경시까지도 시설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위원 김 광 수	○ 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독서실 등의 경우 개정 시설기준이 40평인데,30평 규모의 건물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 2개 층이상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간사 박 병 해	○ 독서실에서는 생활지도사가 있어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데 일반 학원에서는 누가 생활지도를 하는가?	사회교육 체육과장 정 철 진	○ 원장과 강사, 직원 등이 하고 있음.

4. 토론요지

" 해 당 없 음"

5. 심사보고요지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조문별로 축조심의 한바,

가. 학원 주위의 교육환경 정화구역을 당초 6㎞에서 10㎞로 강화하여 교육환경 저해업소로부터 학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한 것은 학생 생활지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 학원 설립시 적용하던 거리규제를 폐지하고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문민시대에 맞게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자유경쟁에 의한 학원 교육 여건을 개선, 시설의 현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다. 독서실 생활지도사를 남·여별로 구분 배치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생활지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라. 다만, 일반 학원의 생활지도 강화를 위하여 일반계열 학원장들이 새로운 의식전환과 지속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강력한 행정지시를 할 것을 요구하였음.

마. 전체적으로는 각조문의 불합리하고 미비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였는 바, 앞으로의 사회교육에 내실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별첨 11)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1993. 3. 20.)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예 산 · 결 산 소 위 원 회

목 차

1. 심사경과.....305

2. 제안설명의 요지.....305

3. 질의 및 답변요지.....305

4. 토론요지.....308

5. 심사보고요지.....308

6. 수정안의 요지.....310

7. 심사결과.....310

8. 소수의견 요지.....310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ㅇ 제출일자 : 1993년 3월 10일
- ㅇ 회부일자 : 1993년 3월 19일

다. 상정일자 :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 ㅇ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93. 3. 20.) 심의·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국가부담수입 180억 6,360만 1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감 2,973만 6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감 4억 8,184만 8천원 등 총 175억 5,201만 7천원의 추가재원으로 교육위원회 4,354만 2천원, 본청 19억 4,477만 9천원, 지역교육청 143억 1,146만 8천원, 예비비 12억 5,222만 8천원의 규모로 예산을 추가하여 총 4,328억 4,491만 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 의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위 원 권 혁 풍	o 음성무극국 잡종재산 매각대금 560만원은 아직 매각전으로 아는데 수입금액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관재계장 신 건 환	o 인근지 매매실례 가격에 의함
위 원 장 김 사 수	o 업무용 교통비 지원은 어떤 사항인지?	행정과장 이 상 찬	o 학교에서 운행중인 업무용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차량을 구입치 않고 업무용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것임.
위 원 권 혁 풍	o 학교 교육비에 최우선 집중 투자한 비율은?	"	o 98%임.
	o 영동의 소송업무수행을 위한 예산 2,984전원은 어떤 사항이며 안전공제회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지 여부	"	o 대전 지방법원에 계류중인 부용국 체육장시설(우주뱅뱅이) 상고건 소송 업무수행 경비로 안전공제회가 생기기 이전의 사건으로 지원 해당이 않됨.
위 원 장 김 사 수	o 이전계획이 추진중인 청주기계공고에 공고 공동실습실 설치비로 15억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	o 청주기계공고 매각 완료후 이전이 확실시 될 경우 투자할 것임.
	o 보통교실을 125.5실 확보하게 되면 내년도 2부제 수업은 해소되는지?	관리국장 김 근 학	o 예견치 못한 상황변동이 없는한 내년도 2부제 수업은 해소됨. 청주시내 2부제 수업은 해소되었는데, 가경국민학교 1군데가 다시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음.
위 원 장 김 사 수	o 카드리더기는 무엇인지?	행정관리 담당관 이 기 수	o OMR카드를 읽어 자동으로 답안지를 채점할 수 있는 기계로 고입관리 등 각종 시험시 채점에 사용함, 현재 1대가 있으나 능률향상과 고장시를 대비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함.
위 원 권 혁 풍	o 연구 시범학교운영비 3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음.	행정과장 이 상 찬	o 당초는 도 지정이었으나 교육부 지정으로 변경되었으며, 300만원으로는 부족한 형편이며, 앞으로 증액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위 원 장 김 사 수	o 교원 연수내용 설명 요망.	과학기술 과장 정 기 우	o 농업계 고등학교 학과개편 및 감축으로 발생되는 과원교사들에게 농업기계,식품가공, 조경, 전자계산, 기술 등 부전공 자격연수를 실시하여 적소에 배치코자 하는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 의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간 사 이 재 희	o 과학기자재 확충비 3,000만원은 모든 지역교육청에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자료구입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인지?	행정과장 이 상 찬	o 교육부에서 특별교부된 것으로 각 교육청에 3,000만원씩 지원되며 지역교육청의 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구입하게 됨.
위 원 장 김 사 수	o 대전 EXPO와 관련된 학술세미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	o 과학의 해와 대전 EXPO를 맞아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창조적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교사들에게 교육자로서의 자긍심 및 사명감 고취를 위하여 추진하는 행사중 일부임.
		과학기술 과장 정 기 우	o 학술세미나는 과학교육원과 충주에서 각각 1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강사를 초빙하여 연찬을 실시할 예정임.
위 원 이 근 수	o 정소년 체육,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국고보조는 충분히 되고 있는지?	사회교육 체육과장 정 철 진	o 다소 되고 있으나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임.
위 원 권 혁 풍	o 충북예술고 육성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유는?	행정과장 이 상 찬	o 학교에서 육성회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 하는 것임.
간 사 이 재 희	o 청주기계공고 매각을 위한 감정수수료는 얼마나 되며 몇 회 실시했는지?	관재계장 신 건 환	o 현재 1회 실시하였고 1회에 2,500만원 소요됨.
위 원 권 혁 풍	o 현재 감정가를 알려줄 수 없는지?	"	o 대외비 사항임.
"	o 학교 휴게실을 새로지어 주는 대상 학교는 어떤 근거로 결정하는지?	시설과장 박 성 근	o 19학급이상 학교는 휴게실을 지어주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곳은 고등학교 5개교 국민학교 2개교임.
"	o 통폐합교 교육여건 개선비는?	행정과장 이 상 찬	o 1개교 통·폐합할 경우 3억 이상 예산이 절감되며 이중 10%를 통합교 운영비로 지원하면 3,000만원임. 그러나 학생수가 몇 명 증가 하는데 따라 운영비가 별도로 더 소요되는 것은 아니므로 10% 금액을 전액 지원은 않고 500만원씩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 의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위원 이 근 수	o 철거 대상교실을 재활용 할 경우 관리비 지원이 되는지?	행정과장 이 상 찬	o 철거 대상건물을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건물 대장에서는 제외되므로 관리비가 전액 지원되지는 않고 다만 소규모적인 관리비는 교육장 재량에 의거 지원이 가능.
간사 이 재 희	o 대제중의 경우 건물이 노후되어 민원의 소지가 있음. 설립자측에서는 시설투자를 전혀 않고 있는 바, 사학지원 차원에서 노후 교사를 다시 지어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음.	관리국장 김 근 학	o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 현황을 파악하여 검토해 본후 대책을 강구해 보겠으며, 설립자 측에도 투자를 하도록 적극 권장해 보겠음.

4. 토론요지 : 해당없음.

5. 심사보고요지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 편성 기준의 적정성,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효과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 예산편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음.

o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개요

o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4,328억 4,491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4,152억 9,290만 1천원보다 175억 5,201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당초예산대비 4.2% 증가)

o 세입에 있어서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잉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은 180억 6,360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등 자체수입은 4억 8,184만 8천원이나 감액되었음.
- 금회 추경에 국고지원금 17억 819만 6천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직업교육 확충사업비 비진학 청소년 위탁교육비 등이 17억 8,415만 7천원 증액된 반면 농어가 자녀 학자금 지원액 34억 9,235만 3천원이 지원체계 변경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자체수입이 감액된 사유는 재산수입과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18억 9,41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청주기계공고 토지매입을 위한 불용액 이월금 23억 7,600만원을 '92년도 사업 완료로 잡수입에서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임.

- 그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을 새마을 유아원의 폐원 및 운영비 조정으로 2,973만 6천원 감액하였음.

○ 세출에 있어서는

- 시설비가 166억 9,910만 2천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 학교운영비 13억 1,861만 4천원
- 사학지원비 12억 1,830만원
- 행정비 및 사업비 감액 29억 3,622만 7천원
- 예비비 12억 5,22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 학생들에게 독서하는 여건 조성을 위한 도서구입비 2억 7,813만원
- 노후교실 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비 127억 2,885만원
- 지역교육청 자료실 기자재 확충비 3억 3,250만원
- 산업·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확충비 43억 4,643만원
- 사립고 컴퓨터 구입 지원비 1억 3,540만원
- 비진학 청소년 기술계 학원 위탁교육비 2,100만원 등임

○ 삭감내역 : 없음

○ 종합평가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한 바, 금회 추경은 추경재원의 95%를 시설비로 집중투자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적절히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소모적인 경비를 억제하는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됨.

특히,

· 금회 추경예산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여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며,

· 총 재원의 98%를 직접교육에 투자하여 교육현장에 활력소를 제공한 점은 권장할 사항임.

· 또한 『'93. 책의 해』를 맞이하여, 각급 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독서하는 환경을 조성코자 한 것은 시의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이와 같은 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교육부지정 연구·시범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액이 너무 적어 소기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 '93 과학교육의 해 및 대전 EXPO와 관련하여 학술세미나 개최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단계에서 세심하게 재고하여 소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요지 : 없음

(별첨 12)

1993年度

忠淸北道敎育費特別會計

第1回 追加更正 豫算(案)槪要

忠淸北道敎育廳

Ⅰ. 豫算編成의 基本方向

1. 地方教育財政 運營의 基本方向

- o 歲入財源의 擴充
- o 歲出豫算의 節減
- o 教育費의 投資效率性 確保
- o 自治財政 確立
- o 健全財政의 堅持

2. 追加更正豫算編成의 主要原因

- o 交付金 增額
- o 補助金 및 財産收入 增額

3. 主要投資 內譯

- o 學校直接教育費에 最優先 集中投資
- o 教育環境의 改善
- o 私學財政 支援擴大
- o 高等學校 體制改革

Ⅱ. '93年度 豫算規模

1. 總規模

(單位:百萬원)

豫算額	既定豫算額	增△減	備考
432,845	415,293	17,552	

2. 歲入總括

(單位:百萬원)

區分	豫算額	既定豫算額	增△減	構成比率(%)
國家負擔收入	382,660	364,596	18,064	88.40
地方自治團體一般會計負擔收入	530	560	△ 30	0.12
教育費特別會計負擔收入	49,546	50,028	△482	11.45
住民負擔收入	109	109	0	0.03
合計	432,845	415,293	17,552	100

3. 歲出總括

(單位:百萬원)

區分		豫算額	既定豫算額	增△減	構成比率(%)
人件費		303,045	303,045	0	70.01
機關運營費	官署當經費	1,413	1,413	0	0.33
	學校機關運營費	13,584	13,547	37	3.14
	其他機關運營費	2,094	2,037	57	0.48
	計	17,091	16,997	94	3.95
教育課程運營費		14,819	13,537	1,282	3.42
經常教育事業費		31,172	32,954	△1,782	7.20
投資教育事業費		59,743	43,037	16,706	13.80
其他教育經費		20	20	0	0.01
豫備費		6,955	5,703	1,252	1.61
合計		432,845	415,293	17,552	100

Ⅲ. 歲入·歲出 主要性質別 內譯

1. 歲入

o 國家負擔 收入

(單位:百萬원)

區 分	豫算額	既定豫算額	增△減	主要說明事項
合 計	382,660	364,596	18,064	
地方教育財政交付金	304,478	285,472	19,006	o 보통교부금 18,651 o 특별교부금 355 · 과학자료실 기자재확충비 330 · 재해학생지원 25
地方教育讓與金	76,271	75,505	766	o 지방교육양여금 766
國庫補助金	1,911	3,619	△1,708	o 직업교육확충사업 1,733 o 정책종목육성지원외 4건 51 o 농어가자녀학자금 지원 △3,492

o 地方自治團體一般會計 負擔收入

(單位:百萬원)

區 分	豫算額	既定豫算額	增△減	主要說明事項
一般會計負擔收入	530	560	△30	o 새마을 유아원운영비 지원금 △30

o 教育費特別會計 負擔收入

(單位:百萬원)

區 分	豫算額	既定豫算額	增△減	主要說明事項
合 計	49,546	50,028	△482	
財産收入	2,036	148	1,888	o 재산임대수입 8 o 재산매각수입 1,880 · 광혜원고 도로편입 142 · 청주강서국 잡종재산 679 · 충주미륵분교외 2건 202 · 제천중.동중 도로편입 186 · 청원공북분교 절도편입 13 · 옥천중 잡종재산 78 · 음성 무극국 잡종재산 560 · 단양가곡국 실습지 20
使用料및手數料	326	320	6	o 양호교사 검정수수료 6
雜 收 入	1,832	4,208	△2,376	o '92 명시이월 불용액감액 - 청주기계공고토지매입 △2,376

2. 歲　出

○ 行政費 및 事業費

(單位:百萬원)

區　分		豫算額	既定豫算額	增 Δ 減	主要說明事項
合　計		13,037	15,973	Δ2,936	
教育委員會	官署當經費	38	38	0	○ 교육위원의정활동비 29,600천원 ○ 부의장실및증원분비품, 방송시설 13,942천원
	其他機關運營費	273	229	44	
本廳	計	9,504	12,819	Δ3,315	○ 농어가자녀학자금지원 Δ3,492,353천원 ○ 재해학생공납금 25,034천원 ○ 양호교사임용시험(25명 선발예정) 7,605천원 ○ 농업계교사 부전공자격 연수 6,900천원 ○ 기타사업 137,761천원
	官署當經費	622	622	0	
	其他機關運營費	818	805	13	
	經常教育事業費	4,609	7,944	Δ3,335	
	投資教育事業費	3,455	3,448	7	
教育廳	計	3,202	2,867	335	○ 과학자료실 기자재확충 332,500천원 ○ 소송업무수행 2,984천원
	官署當經費	753	753	0	
	其他機關運營費	1,003	1,003	0	
	經常教育事業費	1,405	1,070	335	
	投資教育事業費	41	41	0	
諸支出經費		20	20	0	

o 學校運營費

(單位:百萬원)

區 分	豫算額	旣定豫算額	增 Δ 減	主要說明事項
合 計	28,403	27,084	1,319	
幼 稚 園	1,622	1,609	13	o 학생도서구입 238,630천원
國民學校	16,277	15,554	723	(급당:국30천원, 중고50천원) o 통학버스도색(39대)
中 學 校	4,115	3,870	245	22,050천원
一般系高	2,043	1,968	75	o 통폐합고교육여건개선(12교) 60,000천원
實業系高	3,218	2,992	226	o 급식기구구입부족분
特殊學校	208	203	5	(2교육청) 54,560천원
其他學校	920	888	32	o 체육고 중점종목육성지원
				(보조금) 10,102천원
				o 공고생 장학금 139,380천원
				o 공고공동실습소운영
				25,095천원
				o 학교운영비 추가분
				768,797천원

o 私學支援

(單位:百萬원)

區 分	豫算額	既定豫算額	增△減	主要說明事項
合 計	25,157	23,939	1,218	
中學校	14,013	13,796	217	o 교육여건개선시설지원 930,400천원 (교무실 1실, 교실12실, 휴게실3실, 화장실1.9실, 이중창46실, 교실중수26실) o 컴퓨터구입지원(상고3교, 인고2교) 135,400천원 o 도서구입지원(급당50천원) 39,500천원 o 실고내부시설비 50,400천원 o 기타 사학지원비 62,600천원
高等學校	11,025	10,143	882	
特殊學校	119	0	119	

o 施 設 費

(單位:百萬원)

區 分	豫算額	既定豫算額	增 △ 減	主要說明事項
合 計	56,247	39,548	16,699	
國民學校	28,074	19,169	8,905	o 직업교육확충 4,156,652전원 (실습실12실, 보통교실 5실, 기자재확충 5교)
中學校	14,408	10,784	3,624	o 교육여건개선 11,798,450전원 (보통교실 125.5실, 교무실 10실, 휴게실6실, 화장실 30.8동, 이중창 568.5실, 부속시설 21동,계단실4실, 교실중수 553실)
高等學校	10,644	6,872	3,772	
特殊學校	748	671	77	
教育廳	368	119	249	
本 廳	2,005	1,933	72	o 기계공고이전부지매입 △2,341,100전원 o 강당및생활관 670,000전원 o 토지매입 673,620전원 (강서국,사직국,옥전교육청) o 급식시설추가분 373,474전원 (7교육청, 26교) o 기타시설사업 1,368,006전원

第 21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93. 3. 19.-3. 20.)

豫 算 決 算 小 委 員 會

목 차

1.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3

2.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7

※ 부 록

가)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7

나)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75

제 21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 1 호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회 의 록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의 사 국

1993년 3월 19일(금요일) 14시 00분

의 사 일 정 (제21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경과보고
2. 위원장 · 간사 선임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
2. 위원장 · 간사 선임

(14시 00분 개의)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영규

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조례심사소위원회가 장충호, 홍신회, 김광수, 박병해, 김응복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 규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사회는 최연장 교육위원이신 장충호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14시 03분)

2. 위원장 · 간사 선임

● 임시위원장 장충호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1인씩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만,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 김광수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일동 : 이의 없음.)

● 박병해 위원

김응복 위원님을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장충호

박병해위원님께서 김응복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신 거죠 ?

(위원일동 :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위원님이 찬성하시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응복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응복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응복

경험도 없고 아는 지식도 없는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면서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좋은 경험한다고 생각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충호 위원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로 박병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응복

예, 박병해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러면 박병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만 모두 찬성하십니

까 ?

(위원일동 : 찬성합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찬성하시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로 박병해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박병해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 간사 박병해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응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회의 진행이 순조로웠던 점 감사드리면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는 '93. 3.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4시11분 산회)

o 출석위원수 : 4명

위원장 김응복, 간사 박병해, 위원 김광수, 장충호.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 2 호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회 의 록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의 사 국

1993년 3월 20일 (토요일) 10시 30분

의 사 일 정(제21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 의결
3.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

부 의 된 안 건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 의결
3.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

(10시30분 개의)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위원장 김응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부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선 담당부서에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자 하는 이 조례는 1991년 3월에 이미 개정이 있었으나, 그 동안 세월이 흘러 현실에 맞지 않고, 타시·도에 비하여 너무 보수적이어서 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서는 첫째, 학원의 시설은 동일 건물의 동일 층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개층이상에 시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번째로는 학원주위의 교육환경 정화구역의 범위를 강화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현행조례에 학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동일과정 학원과의 거리를 시지역은 200m, 읍지역은 100m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폐지하므로써, 학원설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자율경쟁을 통하여 더 나은 학원시설을 유치토록 함과 아울러 훌륭한 강사를 유치토록 하여 학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원의 난립 및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자 동일 건물내에는 동일 교습과정의 학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번째로는 학원 설립시에 강의실, 열람실, 실습실 등의 인가 규모 및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교습과정 명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원

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사항은 본회의 때 중등교육국장으로부터 이미 대략적인 설명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다시 한번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자인 사회교육계 안용균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사회교육계장 안용균입니다.

(내용요약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하였기 기재 생략)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0분)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

● 위원장 김응복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중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설립 또는 변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를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개정되는 조례는 공포가 되어야만 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공포하기 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 및 변경신청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개정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응복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설립 또는 변경신청을 하려고 한꺼번에 몰려들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행규정에는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설립 또는 변경신청이 갑자기 몰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 홍신희 위원

거리제한 때문에 함부로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군요?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네, 그렇습니다.

● 홍신희 위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함은 사실은 개정조례에 비추어 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적합한 것으로 되어 기존의 학원 설립자의 기득권만을 보장하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 기존 학원으로서 개정조례에서 규정하는 기준 미달 학원은 얼마나 되는지 통계라도 내봤습니까?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현재로서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인가라는 것이 사람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기준이 적합하다 하여 합법적으로 설립된 학원을 규정이 개정되었다 하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 홍신희 위원

그렇다면 5년이라던가 일정한 경과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개정조례에 맞는 시설·설비요건을 다시 갖추도록 하여야 만이 학원이 정상화될 것 아닙니까?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저희도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지 아니한 바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경우 그 일정한 기간을 얼마 정도로 하여야 할 것인가도 의문이 되고,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시·도의 경우에 거리제한 등을 철폐하므로써 학원설립을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져서 더 좋은 시설을 갖춘 학원이 많이 설립되어 기존의 학원들이 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엔가 가서는 기준에 미달되는 학원들이 도태되어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 김광수 위원

구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을 다

른 사람에게 넘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그럴 경우에 명의이전에 있어서는 통제를 가하지 않고, 위치변경에 있어서만 개정된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신희 위원

그렇다며는 경과규정의 취지가 구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립된 학원 설립자의 기득권을 보호하자는데 있음에 비추어, 명의 이전으로 인한 승계자에게까지 기득권이 승계되도록 함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 박병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설립된 학원의 명의이전에까지 개정된 규정에 정해진 바와 같이 시설기준을 강화하도록 강제한다면, 실제적으로는 명의이전을 할 수 없어 학원을 폐쇄해야만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명의이전의 경우까지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시설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며, 위치변경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바, 대부분의 학원이 설립자 자신의 건물에 설치된 경우는 드물고 거의다 남의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임대기간이 지나 몇년마다 위치변경을 하고 있어 개정규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학원은 수년후에는 역시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응복

현재 학원의 수강료는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85년 이전에는 수강료를 통제하였으나, '86년 이후부터 '89년까지는 자율화하였다가 '90년 이후부터는 다시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정한 인상률만을 통제하고 있는 관계로 자율화 당시에 많은 폭으로 수강료를 인상 책정한 학원은 현재에도 여전히 높은 수강료를 받고 있는 반면, 소폭으로 수강료를 인상책정한 학원은 낮은 수준의

수강료를 받을 수 밖에 없어 학원마다 수강료가 서로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응복

학원의 강사가 원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이 크다 할 수 있겠는데 강사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학원의 강사자격 기준은 보수와 직결되고 있어 관련법규에 상세히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교육청에서 자격여부를 철저히 조사·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응복

가능하면 12시까지는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구대조표를 통하여 축조심의하고자 합니다.

사회교육계장님께서 신구대비표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제3조 낭독)

● 위원장 김응복

제3조에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할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개층에 시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지하실도 해당되는 겁니까?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그건 안됩니다, 지하실에는 어떤 종류의 학원도 시설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6조 낭독)

● 박병해 위원

동일 건물내에 출입구가 10m이상 떨어져 있으면 전자오락실이나 음식점 등이 들어 설 수 있다 이겁니까?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아닙니다, 동일 건물내에는 교육환경 저해업소가 들어 설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동의 건물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 위원장 김응복

계속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제7조 낭독)

● 위원장 김응복

거리제한을 철폐하였을 경우의 폐해는 고려해 봤습니까?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예, 일단 학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학원에 대한 타격이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응복

제9조 제3호내지 제4호를 그냥 모두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 할 뿐더러, 있어도 아무런 효용이 없으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등록·신고신청일로부터 3년이내"라는 사항은 법에 "6개월이내"라고 되어 있어 상위법과 상치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위원장 김응복

계속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제11조 낭독)

● 박병해 위원

독서실 생활지도사에 대한 자격기준은 없습니까?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생활지도사라고 하는 어떠한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무자격자 등을 가리고 있어 전과 사실이 없는 경우는 무자격 여부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 박병해 위원

신원조사 등을 여기에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생활지도사 고용에 따른 신원조사는 독서실 운영 절차상의 문제이며, 다른 규정에 정해져 있으므로 여기에 다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응복

다음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제20조 낭독)

이 조항은 신설된 조항으로서 여기에 두게된 취지는 제2차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휴원을 명하고 제3차에 걸쳐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폐원토록 되어 있는데, 직전 처분을 받고 그 다음 처분까지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직전 처분

과 다음 처분과의 기간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부칙 낭독)

● 위원장 김응복

학교교육은 선생님들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교육은 여러 가지면에서 제약을 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사항이 어디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 박병해 위원

독서실의 생활지도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법에 없으면 시행규칙이라든가 다른 어떤 규정으로 만들던지간에 '학원의 생활지도사의 요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강화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응복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타시·도의 것을 참고하신 적은 있습니까?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예, 있습니다.

각 시·도의 것을 모두 다 검토비교하여 놓은 것이 심의자료 57페이지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응복

그러면 타시·도의 경우에 생활지도사에 대한 규약이라던가 남·여 분리 대책 등이 있습니까?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예, 전혀 없습니다.

법에도 그렇고요, 독서실이라고만 되어 있지 남·여를 구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 도만 남학생 독서실과 여학생 독서실로 구분하여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응복

그러면 이쯤에서 원안대로.....

● 박병해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교육감 명의로 하든지 조례로 하든지 이 생활지도에 대하여는 반드시 짚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이 사항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행정지시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이 사항은 아주 회의록에 남겨 주세요.

● 위원장 김응복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수정동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초안작성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11시 55분)

3.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

● 위원장 김응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박병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하였기 기재 생략)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응복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보고드린 바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수 : 5명

위원장 김응복, 간사 박병해, 위원 김광수, 홍신희, 장충호.

○ 출석공무원 : 2명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사회교육계장 안용균.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1.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2.

(별첨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출 년 월 일	1993. 3.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4

제출년월일 : 1993.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이유

현행조례의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학원의 시설·설비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사회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학원시설은 동일건물 동일층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2 개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함. (안 제3조제4항)

나. 학원주위의 교육환경정화지역범위를 강화함. (안 제6조)

다. 학원설립시 적용되던 동일교습과정 학원과의 거리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동일교습과정의 동일건물내 설립금지조항으로 대체함. (안 제7조제1항)

라. 학원설립요건중 적정시설규모를 강화함. (안 제7조제2항)

마.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조항을 규정함. (안 부칙제3조)

바. 일부교습과정을 신설 또는 변경하며, 교습과정별 반당 시설·설비기준을 강화함. (안 별표1, 별표2)

3. 개정근거

가.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 [교육부공문 사회01540 - 253 ('91. 6.18)]

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4. 조 례 안 : 별첨

5.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나.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다.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 : 별첨

라.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시·도별 비교표 : 별첨

마. 입법예고문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 별첨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강의에 적합한"을 "16.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강의에 적합한"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학원시설은 동일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개층 이상에 시설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교육환경정화 등)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장소는 학원이 위치한 건물로 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제외한다.

1. 건물의 연면적이 3,300 ㎡ 이상이고, 학원의 출입구로부터 교육환경 저해업소의 출입구가 10m 이상일 것.

2. 교육환경 저해업소의 위치가 학원으로 부터 수평거리 10 m 이내가 되는 동일층 또는 6m 이내가 되는 직상층 및 직하층이 아닐것.

3. 학원으로 부터 교육환경 저해업소의 영업행위가 보이지 않고 소음이 들리지 않을 것.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①영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또는 교습소가 위치한 동일건물 안에는 동일교습과정의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다만,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는 건물연면적 3,300㎡ 이상의 건물로서 동일층이 아닐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원칙변경 포함)"을 삭제하고, "적정규모의 시설"을 "적정 규모의 강의실 또는 열람실"로 하며, 동조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시, 검정고시 학원 : 시지역 - 연면적 330㎡ 이상 1,980㎡ 이하, 시이외 지역 - 연면적 198㎡ 이상 1,980㎡ 이하

2 . 외국어, 성인고시학원 : 연면적 198㎡ 이상 1,320㎡ 이하

3 . 독서실 : 연면적 165㎡ 이상 660㎡ 이하

4 . 기타 강의실만 필요한 학원 : 연면적 99㎡ 이상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과외교습소) 영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교습소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교육자로서의 육성을 위하여 학원 또는 교습소가 위치한 동일 건물 안에는 동일교습과정의 교습소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는 건물연면적 3,300 ㎡ 이상의 건물로서 동일층이 아닐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4호중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를 삭제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독서실의 설립, 경영자는 남자독서실은 남자생활지도사를, 여자독서실은 여자생활지도사를 각각 채용하여야 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차 및 제3차의 행정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날부터 1 년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별표1] 실험·실습·실기 등 시설·설비 및 교구 등의 반당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정원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로 보며,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 신청사항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3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춘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후 위치변경 및 정원변경에 따른 원칙변경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정한 시설·설비 기준에 의한다.

[별표 1]

실험·실습·실기 등 시설·설비 및 교구 등의 반당기준

계 열	교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기술	1. 간호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침대 대인용 2개 이상 소인용 1개 이상 (2) 인체모형 1개 이상 (3) 인체해부 및 생리괘도 각1부 이상 (4) 시력 및 색명표 각 1부 이상 (5)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6) 주사기 20종 이상 (7)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8) 혈압계, 청진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 기계	가. 설계실 66㎡ 이상 나. 실습공장 66㎡ 이상 다. 설비 (1) 선반 2대 이상 (2) 모우터 7마력 이상의 것 1대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3. 자동차운전	가. 운전교습장 6,600㎡ 이상으로 하되 2층으로 고가 교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정비장 66㎡ 이상 다. 실습시설 및 장비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각 3조 및 폭 3m 이상 길이 200m 이상의 장방형 주위코스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경사코스와 필요한 각종 안전표지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자동차 엔진체 및 자동차 차대 각 2대 이상 (3) 정상기능의 실습용차량을 실기장 일시 수용능력 1인에 1대 이상 (4)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적합한 도로운전 교습용 차량 1대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4. 자동차정비	가. 정비실습실 66㎡ 이상 나. 기재실 16.5㎡ 이상 다. 실습시설 및 장비 (1) 작업대 10대 이상 (2) 디이젤기관 2대 이상 (3) 가소린기관 5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대 이상 (5) 부대시설 기계 10종 이상 (6) 일반공구 20점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5. 중장비운전	가. 운전실습장 990㎡ 이상 나. 기재실 33㎡ 이상 다. 실습장비 (1) 중기 가동완전품 4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4) 밧데리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스주유기 등 부대시설 기계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6. 중장비정비	가. 정비실습실 66㎡ 이상 나. 기재실 33㎡ 이상 다. 실습장비 (1) 중기정비용 (불가동 분해조정용) 1대 이상 (2) 엔진체 2대 이상 (3) 각 장비별 부품 3조 이상 (4) 삼각대, 체인블록, 전기용접기, 산소용접기, 야전용 유압프레스, 오일작기 각 1대 이상 (5)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8종 이상 (6)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일반공구 20점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7. 시계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선반 1대 이상 (2) 전자기계조정기 6대 이상 (3) 본지 20개 이상 (4) 스탠드 20개 이상 (5) 자동분해소제기 1대 이상 다. 기타 시계수리에 필요한 기자재
	8. 냉동(열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가. 실습실 66㎡ 이상 나. 기재실 33㎡ 이상 다. 설비 (1) 대기, 토양, 해양오염측정기 각 1대 이상 (2) 소음진동측정기 2대 이상 (3) 수질검사 시험기 2대 이상 (4) 보일러 4종 이상 (부속장치 포함)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담 시 설 · 설 비 기 준
		(5) 버너 4개 이상 (6) 개스분석기 1개 이상 (7) 소방 및 가스설비,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기 등 5종 이상 (8) 냉동 유니트 5종 이상 (9) 분해조립형, 개방형압축기 각 2대 이상 (10) 진공펌프, 회전식압축기 각 1대 이상 (11) 밀폐형압축기 2대 이상 (12) 증발기, 응축기 2대 이상 (13) 기타 부속기기 10종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9. (삭 제)	(삭 제)
	10. 금속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야금, 표면처리, 열처리, 용접실습기기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11. 알미늄샷시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공작대 4인용 5대 이상 (2) 제도판 및 제도기 각 20개 이상 (3) 드릴머신, 리벳팅머신, 그라인더 각 2개 이상 (4) 핸드드릴 10개, 바이스 20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12. 화공	가. 실습실 66㎡ 이상 나. 기재실 16.5㎡ 이상 다. 설비 (1) 실습대 5대 이상

계 열	교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2)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등 5종 이상 (3) 각종 소화기 1대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13. 전기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전기실 33㎡ 이상 다. 설비 (1) 모우터 1마력 이상의 것 2대 이상 (2) 수전, 송전배전실 (3) 테스타 10대 이상 (4) 트랜스(변압기) 5대 이상 (5) 실험대 5대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14. 전자(라디오, VTR, 텔레비전)	가. 실습실 66㎡ 이상 나. 기재실 16.5㎡ 이상 다. 공통기재 (1) 회로시험기 2인당 1대 이상 (2) 신호발진기 3대 이상 (3) 트랜지스터체커 1대 이상 (4) 저주파발진기 2대 이상 (5) 트랜지스터 1대 이상 (6) 시그울레트시 1대 이상 (7) 정전용량계 1대 이상 (8) 임리던스브릿쉬 1대 이상 (9)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30조 이상 라. 텔레비전 과정 (1) "다"호의 공통기재 (2) 텔레비전, 스위트발진기 1대 이상

계 열	교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3) 음주선,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4) 고전압계 1대 이상 마. 컴퓨터 기기과정 (1) "다" "라"호의 시설·설비 (2) 컴퓨터(전산기기) 5대 이상 (3) 컴퓨터용 모니터 10대 이상 (4) 컴퓨터용 프린터 1대 이상 (5)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바. 비데오 기기과정 (1) "다" "라"호의 시설·설비 (2) V T R 2대 이상 (3) 비데오카메라 2대 이상 (4) 모니터텔레비전 3대 이상 사.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15. 컴퓨터(퍼스널, 워드프로세서 및 키펀치)	가. 실습실 99㎡ 이상 나. 퍼스널컴퓨터 과정 (1) 플로피디스크 등의 주변기기를 갖춘 퍼스널컴퓨터를 일시 수용인원 1인당 1대 (2)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다. 워드프로세서 및 키펀치 과정 (1) 입력작성을 위한 기기 1인당 1대 (2) 출력을 위한 프린터기 5대이상 (3)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16. 통신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송수신기 각 1대 이상 (2) 천건 1인당 1대 이상

계 열	교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3) 시계 2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17. 전화교환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모의교환대 1인당 1대 (2) 녹음기 1대 이상 (3) 헤드폰 5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18. 조선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계실 66㎡ 이상 다. 설비 (1) 선박기관 및 선체 1대 이상 (2) 일반공구 20조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19. 선원	가. 실습실 66㎡ 이상 나. 공통설비 (1) 실습선박 (30 G/T 이상) 1척 이상 (2) 환등기 1대 이상 다. 갑판과 (1) 정박계선기구(앙카 2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 (2) 로푸 및 와이야로푸 100미터 각 1대 이상 (3)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 (4)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개 이상 (5) 수리용공구 1식 이상 라. 기관과 (1) 디젤기관(30마력 이상) 1대 이상 (2) 기관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3) 기관수리용 공작기구 1식 이상 (4) 펌프류(원심력, 기아식) 각 1대 이상 마.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0. 항공	가. 실습실 99㎡ 이상 나. 설비(항공기 및 엔진은 임대불가) (1) 항공기 - 고정익대 1대 이상 - 회전익대 1대 이상 (2) 엔진 - 수평대향형 1대 이상 - 수직대향형 1대 이상 - 성형 1대 이상 (3) 제트엔진 - Turbo Jet 1대 이상 - Turbo Prop 1대 이상 - Turbo Shaft 1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종 이상 (5)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1. 토목.건축	가. 설계실 66㎡ 이상 나.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다. 측량기 (1) 전경의 5인당 1대 이상 (2) 수준의 5인당 1대 이상 (3) 평균의 5인당 1대 이상 (4) 수수령의 5인당 1대 이상 (5) 기타 부속기구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라.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22. 섬유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방사 및 방적기계 설비 2종 이상 (2) 정련표백, 염색가공 시설·설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3. 패션디자인(남성복, 여성복, 한복)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2) 축소, 확대복사기 1대 이상 (3) VTR 1대 이상 (4) 에어브로쉬 1Set 이상 (5) 모타 미싱 10대 이상 (6) 패턴실습대 4인당 1대 (7) 스팀아이롱 5대 이상 (8) 인대 5대 이상 (9) 컴퓨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4. 광업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채광 및 탐사, 선광실습기기 3종 이상 (2) 화약 및 발파 작업 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5. 정보처리	가. 실습실 132㎡ 이상 나. 설비 (1) 300MB 이상의 자기디스크 2대, 600LPM(1,280 CPS) 이상의 프린터, 50IPS 이상의 자기테이프를 갖추고 30대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이상의 터미널을 설치 가능한 중형 이상의 계산 조직 1대 (2) 위 "(1)호"의 컴퓨터에 연결된 터미날 20대 이상 (3) 하드디스크를 갖춘 퍼스널컴퓨터 20대 이상 (4) 교육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5) 컴퓨터 회로기판 및 각종 IC류 10대 이상 (6) 입력작성을 위한 기기 5대 이상 (7)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6. 에너지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원자로계측시설, 열관리방사선 실험기기 3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7. (삭 제)	(삭 제)
	28. 수산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실습장 990㎡ 이상 다.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29. (삭 제)	(삭 제)
	30. 농업(임업, 원예)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실습장 990㎡ 이상 다.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31. 동물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사육과 (1) 사육장 330㎡ 이상 (2) 동물 5종 이상 (3) 동물 사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다. 박제과 (1) 박제표본 : 어류, 조류, 갑각류 5종 이상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2) 박제 제작기구 1인당 1조 이상 라. 모피 피혁과 (1) 화공약품 처리장 16.5제곱미터 이상 (2) 회전기, 약품침전탱크전 1대 이상 마.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32. 공예 (도자기)	가. 실습실 66㎡ 이상 나.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33. 보석감정 (금속세공)	가. 실습실 66㎡ 이상 나. 보석감정과정 (1) 현미경 10 - 40배 1인당 1대 (2) 굴절계 1인당 1대 (3) 정밀저울 3인당 1대 (4) 전자저울 3인당 1대 (5) 분광기 2인당 1대 (6) 자외선기 2대 이상 (7) 이색경 2대 이상 (8) 각종 보석류 2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20개 이상 다. 귀금속 세공과정 (1) 산소용접기 2대 이상 (2) 마모기 2대 이상 (3) 광택기 2대 이상 (4) 전기로 2대 이상 (5) 사출기 5대 이상 (6) 원심주조기 2대 이상 (7) 흡입주조기 2대 이상 (8) 고무모형 압착 2대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34. 사진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사진기 3종 이상 (2) 확대기 2대 이상 다. 암실 6.6㎡ 이상 라. 조명장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35. 비디오촬영	가. 실습실 66㎡ 이상 나. 녹음실 16.5㎡ 이상 다. 기재실 6.6㎡ 이상 라. 설비 (1) 회로시험기 2인당 1대 이상 (2) 신호발진기 3대 이상 (3) 트랜지스터체커 1대 이상 (4) 저주파발진기 2대 이상 (5) 트랜지스터 1대 이상 (6) 시그울레트시 1대 이상 (7) 정전용량계 1대 이상 (8) 임피던스브리쉬 1대 이상 (9) 텔레비전스위트발진기 1대 이상 (10) 음주선,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11) 고전압계 1대 이상 (12) V T R 4인당 1대 이상 (13) 비디오카메라 4인당 1대 이상 (14) 모니터텔레비젼 4인당 1대 이상 (15) 녹음기, 턴테이블, 마이크 2대 이상 (16) 조명기기 2대 이상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17) 자막기 1대 이상 (18) 스크린 1개 이상 (19)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20수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36. 수예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재봉기, 자수과정에 있어서는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다. 손자수, 인형, 조화과정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37. 편물	가. 실습실 66㎡ 이상 나. 기계 편물인 경우에는 편물기 1인당 1대
	38. 인쇄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인쇄기 2종 이상 (2) 활자, 활자판 기타 시설·설비
	39. 피아노조율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정음작업대 2대 이상 (2) 조율튜우너, 튜링해머 각 3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프운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인지 각 2대 이상 (4) 피아노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40. 산업디자인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디자인스코프(트랜스마스터) 1대 이상 (2) 축소, 확대복사기 1대 이상 (3) 환등기 1대 이상

계 열	교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4) V T R 1대 이상 (5) 램프박스 1대 이상 (6) 제도대 1인당 1대 이상 (7) 콤퓨레셔 1대 이상 (8) 칼라이즈 1대 이상 (9) 컴퓨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41. (삭 제)	(삭 제)
	42. 미용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실습대(4인용 이상) 5대 이상 (2) 건발기, 파마기, 안면기, 노루(나이브레이타, 미용의자, 미안대) 각 10조 이상 (3) 대형거울 2개 이상 (4) 세면장 및 급시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43. 이용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이발의자 10개 이상 (2) 증기소독기 2조 이상 (3) 건발기 2대 이상 (4) 바리캉, 면도, 가위 각 10대 이상 (5) 대형거울 : 이발의자수와 상응하는 개수 다. 세면장 및 급수시설
	44. 제과, 제빵 •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시청각 교구 세트 (T V, V T R, 슬라이드)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2) 수직형믹스 15대 이상 (중형) (3) 오븐(LPG) 2장 용량 10대 이상 (4) 오븐(전기) 2상 용량 10대 이상 (5) 수평형반죽기(중형) 4대 이상 (6) 발효실(전기) 40장 용량 2대 이상 (7) 발효실(LPG) 40장 용량 2대 이상 (8) 주저울(5Kg) 20대 이상 (9)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계,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10) 습도계, 온도계 각 4대 이상 (11) 로라(Deught Sheeter) 1대 이상 (12) 냉장고(1,000ℓ) 1대 이상 (13) 앙금믹서(중형) 1대 이상 (14) 씽크대 : 실습실별로 2대 이상 (15)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45. 조주 (칵테일)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진열대 4대 이상 (2) 조주대 4대 이상 (3) 양주병(학과 식별용) 200종 이상 (4) 양주병(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46. 안경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컴퓨터 검안기(자동, 수동 각 1대) 이상 (2) 시력표 5개 이상 (3) 옥습기 1인당 1대 (4) 굴절검사기 1인당 1대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담 시 설 · 설 비 기 준
		(5) 검안세트 2대 이상 (6) 과열기 10대 이상 (7) 세척기 2대 이상 (8) 착색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예능	1. 무용	가. 실습실 66㎡ 이상 나. 탈의실 6.6㎡ 이상 다. 설비 (1) 전축, 녹음기 각 1대 이상 (2) 대형거울 (3) 기타 필요한 악기
	2. 미술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정물대 1개 이상 (2) 화판 및 이젤 일시수용인원 1인당 1개 이상 (3) 서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석고 및 석고대 10점 이상 (4) 동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벼루, 모포 등 필요한 시설·설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3. 서예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벼루 1인당 1대, 먹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2) 서법도서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4. 영화·연극	가. 실기실 66㎡ 이상 나. 영화 기술과정 (1) 현상실 9.9㎡ 이상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2) 녹음실 16.5㎡ 이상 (3) 16미리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다. 무대예술과정 또는 배우과정 (1)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성장치 1조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5. 음악	가. 음악실 99㎡ 이상 나. 감상용 전축(채널당 출력 20W 이상) 1대 이상 다. 악기과정 (1) 해당악기 5대 이상 라. 성악과정 (1)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기타 악기 (2) 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 기타 악기 마.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6. 바둑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바둑판 10조 이상 (2) 바둑해설판 1조 이상
가정	1. 조리	가. 조리실 66㎡ 이상 나. 설비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 1대 이상 (3) 환풍기 1대 이상 (4) 각 요리별로 10인당 요리에 필요한 기구1식 이상 (5) 급수시설 : 요리대수에 상응한 수 (6) 재독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계 열	고 습 과 정	반 당 시 설 · 설 비 기 준
	2. 꽃기예(꽃꽂이, 조화)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과도 5종 이상 (2) 실습공구 20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사무	1. 관광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관광도서 30종 이상 (2) 한국지도(50만분의1), 세계지도 (3) 고적, 명승지, 안내도 반별 각 1매 (4)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반당 각 1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 주산	가. 실습실 99㎡ 이상 나. 설비 (1) 대형주판 2개 이상 (2) 속독측정시계 2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3. 타자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일시수용인원 1인당 타자기 1대
독서실		가. 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의 넓이는 가로 78Cm 이상, 세로 58Cm 이상 나. 도서 500권 이상, 정기간행물 5종 이상, 열람실이 66㎡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3.3㎡ 마다 독서 5권씩 증가한다. 다. 독서실은 남·여별로 구분 설립한다.

[별표 2]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정원

계 열	교 습 과 정	반당정원	비 고
기술	1. 간호	40	
	2. 기계	40	
	3. 자동차운전		기능교습코스 (곡선, 굴절, 방향 및 전후진) 1개당 1인이내 (1종 대형은 1조당 2인이내) 주위코스 길이 25m당 1인이내로 한다.
	4. 자동차정비	40	
	5. 중장비운전	30	운전실습장 면적의 증가에 따라 반당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6. 중장비정비	30	
	7. 시계	30	
	8. 냉동(안전관리, 환경관리, 열관리)	40	
	9. 금속	40	
	10. 알미늄샷시	30	
	11. 화공	40	
	12. 전기, 전자	40	
	13. 라디오, VTR, 텔레비젼	40	
	14. 컴퓨터, 정보처리	40	
	15. 통신, 전화교환	40	
	16. 조선	40	
	17. 선원	40	
	18. 항공	40	
	19. 토목, 건축	20	
	20. 섬유	30	

계 열	교 습 과 정	반당정원	비 고
기술	21. 패션디자인	40	
	22. 광업	40	
	23. 에너지	30	
	24. 제과, 제빵	40	
	25. 수산	30	실습장 면적의 증가에 따라 반당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26. 조주	40	
	27. 농업 (임업,원예)	40	실습지 면적의 증가에 따라 반당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28. 동물	20	사육장 면적의 증가에 따라 반당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29. 공예(도자기)	40	
	30. 보석감정	30	
	31. 사진, 비디오촬영	30	
	32. 수예	30	
	33. 편물	20	
	34. 인쇄	40	
	35. 피아노조율	30	
	36. 산업디자인	30	
	37. 안경	40	
	38. 미용	20	
	39. 이용	30	
예능	1. 무용	20	무용실 면적의 증가에 따라 반당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2. 미술	30	
	3. 서예	30	

계 열	교 습 과 정	반당정원	비 고
예능	4. 영화, 연극	30	
	5. 음악 (피아노)	20 (9)	
	6. 바둑	30	
가정	1. 조리	40	
	2. 꽃기예 (꽃꽂이, 조화)	30	
사무	1. 관광	40	
	2. 주산	80	
	3. 타자	40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1조 - 제2조(생 략)	제1조 - 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시설기준) ①영 제4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칸막이 시설을 할 때에는 강의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기준) ① ---------- ---------- 16.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강의에 적합한 ---------- .
② - ③(생 략)	② - ③(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학원 시설은 동일 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고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 개층 이상에 시설할 수 있다.
제4조 - 제5조(생 략)	제4조 - 제5조(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환경 정화 등)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장소는 학원이 위치한 건물로 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물.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건물을 제외한다.	제6조(교육환경 정화 등)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장소는 학원이 위치한 건물로 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제외한다.
1. 학원의 출입구로 부터 영 제6조 제3항에 의한 행위를 하는 건물로 출입구가 6m 이상일 것.	1. 건물의 연면적이 3,300 ㎡ 이상이고, 학원의 출입구로부터 교육환경 저해업소의 출입구가 10 m 이상일 것.

현 행	개 정
2. 학원이 위치한 건물에서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의 영업 행위가 보이지 않을 것.	2. 교육환경 저해업소의 위치가 학원으로 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가 되는 동일층 또는 6m 이내가 되는 직상층 및 직하층이 아닐 것.
3. 학원이 위치한* 건물에서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의 영업행위의 소음이 들리지 않을 것.	3. 학원으로부터 교육환경 저해업소의 영업행위가 보이지 않고, 소음이 들리지 않을 것.
제7조(학원의 설립) ①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원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교육 기관으로의 육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거리를 유지한다.	제7조(학원의 설립) ①영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또는 교습소가 위치한 동일건물 안에는 동일교습과정의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다만,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는 건물연면적 3,300㎡ 이상의 건물로서 동일층이 아닐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학원을 설립(위치변경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동일과정 학원과의 거리를 시지역은 200m, 읍지역은 10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동일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동일계 학원을 운영하고 위치를 이전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삭 제)
②영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원칙 변경 포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정 규모의	② ---------- 학원의 설립은 ---------- 적정 규모

현 행	개 정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의 강의실 또는 열람실을 -----.
1. 입시, 검정고시 학원 : 강의실 연면적 330 ㎡ 이상 1,980 ㎡ 이하	1. 입시, 검정고시 학원 : 시시역 - 연면적 330 ㎡ 이상 1,980 ㎡ 이하, 시이외지역 - 연면적 198 ㎡ 이상 1,980 ㎡ 이하
2. 외국어학원 : 강의실 연면적 198 ㎡ 이상 1,320 ㎡ 이하	2. 외국어, 성인고시 학원 : 연면적 ----------
3. 독서실 : 열람실 연면적 132 ㎡ 이상 660 ㎡ 이하	3. 독서실 : 연면적 165 ㎡ 이상 660 ㎡ 이하
4. 기타 강의실만 필요한 학원 : 강의실 연면적 66㎡ 이상	4. 기타 강의실만 필요한 학원 : 연면적 99 ㎡ 이상
제8조(과외교습소) 영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교습소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교육자로서의 육성을 위하여 교습소의 신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과외교습소) 영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교습소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교육자로서의 육성을 위하여 학원 또는 교습소가 위치한 동일 건물안에는 동일교습과정의 교습소 신고를할 수 없다. 다만,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건물 연면적 3,300㎡ 이상의 건물로서 동일층이 아닐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학원과 동일 건물, 동일층으로서 출입문을 같이 사용할 때에는 학원과 같은 교습과정의 교습소 신고를 할 수 없다.	
제9조(설립자의 요건) 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을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설립자의 요건) ---------- ---------- ---------- ---------- ----------

현 행	개 정
1 . - 2 . (생 략)	1 . - 2 . (현행과 같음)
3 . 인가, 등록, 신고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 (삭 제)
4 . 인가, 등록, 신고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고습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 (삭 ·제)
5 . (생 략)	5 . (현행과 같음)
제10조(설립자의 변경)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자의 변경은 신규 설립 또는 설립자 변경후 1 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설립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설립자의 변경) ---------- ---------- ---------- ---------- ---------- ------
1 . - 3 . (생 략)	1 . - 3 . (현행과 같음)
4 . 설립자가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외국으로 이민하는 경우	4 . 설립자가 외국으로 이민하는 경우
5 . - 6 .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제11조(사회교육 전문요원, 감사, 생활지도사 등) ① - ③(생 략)	제11조(사회교육 전문요원, 감사, 생활지도사 등) ① - ③(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독서실의 설립, 경영자는 남자독서실은 남자생활지도사를, 여자독서실은 여자생활지도사를 각각 채용하여야 한다
제12조 - 제19조(생 략)	제12조 - 제19조 (현행과 같음)
제20조(행정처분 기준) ① - ③ (생 략)	제20조(행정처분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 신 설 >	④제2차 및 제3차의 행정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날부터 1년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부 칙	부 칙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로 보며,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 신청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3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후 위치변경 및 정원변경에 따른 원칙변경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정한 시설·설비 기준에 의한다.

[별표 1]

신·구조문대비표

(실험·실습·실기 등 시설·설비 및 고구 등의 반당 기준)

현행			개정		
계열	교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교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기술	1. - 6. (생략)	(생략)	기술	1. -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시계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설비 (생략)		7. 시계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현행과 같음)
	8. 냉동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기재실 33㎡ 이상 다. 설비 (1) 냉동기(소형) 1대 이상 (2) 냉동 유니트 5대 이상 (3) 분해조립형, 개방 압축기 10대 이상 (4) 진공펌프, 회전식압축기, 각 2대 이상 (5) 밀폐형압축기 5대 이상 (6) 증발기, 응축기 3대 이상 (7) 기타 부속기기 10종 이상 (8) 캇터 5대 이상		8. 냉동 (열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가. 실습실 66㎡ 이상 나. 기재실 33㎡ 이상 다. 설비 (1) 대기, 토양, 해양 오염 측정기 각 1대 이상 (2) 소음진동측정기 2대 이상 (3) 수질검사 시험기 2대 이상 (4) 보일러 4종 이상 (부속장치 포함) (5) 버너 4개 이상 (6) 개스분석기 1개이상 (7) 소방 및 가스설비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기 등 5종 이상

현 행			개 정		
계열	교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교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9) 바이스 12개 이상 (10) 드릴 (19㎡ 이상) 1개 이상 (11) 동관 작업후 후레어 20조 이상 (12) 벤딩 20조 이상 (13) 리버 20조 이상 라. 작업대 3조 이상 마.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8) 냉동 유니트 5종 이상 (9) 분해조립형, 개방형 압축기 각 2대 이상 (10) 진공펌프, 회전식 압축기 각1대 이상 (11) 밀폐형압축기 2대 이상 (12) 증발기, 응축기 2대 이상 (13) 기타 부속기기 10종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9. 고압가스	(생략)		9. (삭제)	(삭 제)
	10. - 11. (생략)	(생략)		10. - 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2. 화공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다. (생략)		12. 화공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다. (현행과 같음)
	13. 전기	(생략)		13. 전기	(현행과 같음)
	14. 전자 (라디오, VTR, 텔레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사. (생략)		14. 전자 (라디오, VTR, 텔레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사.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비전)			비전)	
	15. 컴퓨터(퍼스널, 키펀치)	가. 실습실 66㎡ 이상 나. 퍼스널컴퓨터 과정 (1) (생략) 다. 키펀치 과정 (1) 입력작성을 위한 기기 1인당 1대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15. 컴퓨터(퍼스널, 워드프로세서 및 키펀치)	가. 실습실 99㎡ 이상 나. 퍼스널컴퓨터 과정 (1) (현행과 같음) (2)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다. 워드프로세서 및 키펀치 과정 (1) (현행과 같음) (2) 출력을 위한 프린터기 5대 이상 (3)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16. - 19. (생략)	(생략)		16. -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 항공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비행기 엔진체 및 기체 1대 이상 (2) 시험기 및 측정기 5종 이상 (3)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0. 항공	가. 실습실 99㎡ 이상 나. 설비 (항공기 및 엔진은 임대불가) (1) 항공기 - 고정익대 1대 이상 - 회전익대 1대 이상 (2) 엔진 - 수평대향형 1대 이상

현 행			개 정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 수직대향형 1대 이상 - 성형 1대 이상 (3) 제트엔진 - Turbo Jet 1대 이상 - Turbo Prop 1대 이상 - Turbo Shaft 1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종 이상 (5)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1. - 22. (생략)	(생략)		21. - 2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3. 양재, 양복, 한복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설비 (1) 재봉기 2인당 1대 이상 (2) 전기다리미 2인당 1대 이상 (3) 재단대 4인당 1대		23. 패션디자인 (남성복, 여성복, 한복)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2) 축소, 확대복사기 1대 이상 (3) VTR 1대 이상

현 행			개 정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이상 (4) 마네킹 5개 이상 (5) 디자인 실습대 2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4) 에어브로쉬 1Set 이상 (5) 모타미싱 10대 이상 (6) 패턴실습대 4인당 1대 (7) 스팀아이롱 5대 이상 (8) 인대 5대 이상 (9) 컴퓨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4. 광업	(생략)		24. 광업	(현행과 같음)
	25. 컴퓨터 프로그래밍	가. 실습실 66㎡ 이상 나. 포트란, 코볼, 컴파일러,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라인프린터를 갖춘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교육이 가능한 중형 이상의 전자계산조직 1대. 다만, 다른 장소에 있는 전자계산 조직을 온라인 터미널을 설치하여 임차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일시		25. 정보처리	가. 실습실 132㎡ 이상 나. 설비 (1) 300MB 이상의 자기디스크 2대, 600LPM (1,280 CPS) 이상의 프린터, 50IPS 이상의 자기테이프를 갖추고 30대 이상의 터미널을 설치 가능한 중형 이상의 계산조직 1대 (2) 위 "(1)호"의 컴퓨터에 연결된 터미널

현 행			개 정		
계열	교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교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수용인원 10명당 터미널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0대 이상 (3) 하드디스크를 갖춘 퍼스널컴퓨터 20대 이상 (4) 교육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5) 컴퓨터 회로기판 및 각종 IC류 10대 이상 (6) 입력작성을 위한 기기 5대 이상 (7)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26. 에너지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다. (생략)		26. 에너지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다. (현행과 같음)
	27. 열관리	(생략)		27. (삭제)	(삭 제)
	28. 수산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다. (생략)		28. 수산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다. (현행과 같음)
	29. 안전관리	(생략)		29. (삭제)	(삭 제)
	30. 농업(임업, 원예)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실습실 990㎡ 이상 다. (생략)		30. 농업(임업, 원예)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실습장 990㎡ 이상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31. 동물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마. (생략)		31. 동물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마. (현행과 같음)
	32. 공예(도자기)	(생략)		32. 공예(도자기)	(현행과 같음)
	33. 보석감정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보석감정에 필요한 기재 2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33. 보석감정(금속세공)	가. 실습실 66㎡ 이상 나. 보석감정과정 (1) 현미경 10-40배 1인당 1대 (2) 굴절계 1인당 1대 (3) 정밀저울 3인당 1대 (4) 전자저울 3인당 1대 (5) 분광기 2인당 1대 (6) 자외선기 2대 이상 (7) 이색경 2대 이상 (8) 각종 보석류 2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20개 이상 다. 귀금속세공과정 (1) 산소용접기 2대 이상 (2) 마모기 2대 이상 (3) 광택기 2대 이상 (4) 전기로 2대 이상 (5) 사출기 5대 이상 (6) 원심주조기 2대 이상

현 행			개 정		
계열	교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교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7) 흡입주조기 2대 이상 (8) 고무모형 압착 2대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34. 사진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라. (생략)		34. 사진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라. (현행과 같음)
	35. 비디오 촬영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라. (생략)		35. 비디오 촬영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라. (현행과 같음)
	36. 수예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다. (생략)		36. 수예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다. (현행과 같음)
	37. 편물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생략)		37. 편물	가. 실습실 66㎡ 이상 나. (현행과 같음)
	38. 인쇄	가. (생략)		38. 인쇄	(현행과 같음)
	39. 피아노 조율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다. (생략)		39. 피아노 조율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다. (현행과 같음)
	40. 디자인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실습대 10대 이상 (2) 제도판 1인당 1대 (3) 이젤 20개 이상 (4) 석고상 10점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40. 산업디자인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디자인스코프(트랜스마스터) 1대 이상 (2) 축소, 확대복사기 1대 이상 (3) 환등기 1대 이상 (4) VTR 1대 이상

현 행			개 정		
계열	교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교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5) 램프박스 1대 이상 (6) 제도대 1인당 1대 이상 (7) 콤퓨레서 1대 이상 (8) 칼라이즈 1대 이상 (9) 컴퓨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41. 환경관리	(생략)		41. 삭제	(삭 제)
	42. 미용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다. (생략)		42. 미용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다. (현행과 같음)
	43. 이용	가. 실습실 49.5㎡ 이상 나. - 다. (생략)		43. 이용	가. 실습실 66㎡ 이상 나.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 신 설 >		44. 제과, 제빵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시청각 교구 세트 (TV,VTR,슬라이드) (2) 수직형믹스 15대 이상 (중형) (3) 오븐(LPG) 2장 용량 10대 이상 (4) 오븐(전기) 2장 용량 10대 이상 (5) 수평형반죽기(중형)

현 행			개 정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4대 이상 (6) 발효실(전기) 40장 용량 2대 이상 (7) 발효실(LPG) 40장 용량 2대 이상 (8) 추저울(5Kg) 20대 이상 (9) 비중계, 당도계, PH 미터계,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10) 습도계, 온도계 각 4대 이상 (11) 로라(Deught Shee- ter) 1대 이상 (12) 냉장고(1,000ℓ) 1대 이상 (13) 앙금믹서(중형) 1대 이상 (14) 씽크대 : 실습실 별로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 설비
	<신 설>	<신 설>		45. 조주 (칵테일)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현 행			개 정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계열	고습과정	반당시설·설비기준
					(1) 진열대 4대 이상 (2) 조주대 4대 이상 (3) 양주병 (학과 식별용 200종 이상 (4) 양주병(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신 설>	< 신 설 >		46. 안경	가. 실습실 66㎡ 이상 나. 설비 (1) 컴퓨터 검안기(자동, 수동 각 1대) 이상 (2) 시력표 5개 이상 (3) 옥습기 1인당 1대 (4) 굴절검사기 1인당 1대 (5) 검안세트 2대 이상 (6) 과열기 10대 이상 (7) 세척기 2대 이상 (8) 착색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별표 2]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정원

현 행			개 정		
계 열	교 습 과 정	반당정원	계 열	교 습 과 정	반당정원
기술	1. - 7. (생략)	(생략)	기술	1. -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냉동, 고압가스	40		8. 냉동 (안전관리, 환경관리, 열관리)	40
	9. - 13. (생략)	(생략)		9. -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4. 컴퓨터	30		14. 컴퓨터, 정보처리	40
	15. - 20. (생략)	(생략)		15. - 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1. 양재, 양복, 한복	40		21. 패션디자인	40
	22. - 23. (생략)	(생략)		22. - 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4. 열관리 <신 설>	40		24. (삭제) 제과, 제빵	40
	25. (생략)	(생략)		2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6. 안전관리 <신 설>	30		26. (삭제) 조주	40

현 행			개 정		
계 열	교 습 과 정	반당정원	계 열	교 습 과 정	반당정원
	27. - 35. (생략)	(생략)		27. - 3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6. 디자인	30		36. 산업디자인	30
	37. 환경관리 <신 설>	40		37. (삭제) 안경	40
	38. - 39. (생략)	(생략)		38. - 3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예능	(생 략)	(생략)	예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정	"	"	가정	"	"
사무	"	"	사무	"	"

관계법령(부분) 발췌서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4268호 ; 1990.12.27)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생 략)

②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심히 해칠 염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관청은 미리 관할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생 략)

제11조(강사 등) ①학원의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당해 교습과목을 교습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행정처분) ① - ②(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인가취소를 받은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외교습소의 폐지명령을 받은자는 그로부터 6월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학원을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④(생 략)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3282호 ; 1991. 2. 1)

제3조(시설) ①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으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것은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 4. (생 략)

5 .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 ③(생 략)

제4조(시설기준) ①제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강의실 : 반당강의실 면적은 33제곱미터 (자동차 운전계 학원은 66제곱미터) 이상 132 제곱미터 이하 (입시 및 검정고시 과정의 종합반인 경우에는 82.5제곱미터 이하) 로 하되, 1 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5 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6.6 제곱미터 이상으로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칸막이된 강의실의 면적에 상응하여 인원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 - 9 . (생 략)

②제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시설·설비의 계열별·교습과정별 반당기준은 특별시·직할시·도 (이하 "시·도라 한다) 의 조례로 정하되, 반당 실험·실습실 면적은 49.5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한다.

제5조(정원초과교습의 금지 등)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당해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에 부제교습 횟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부제교습 횟수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독서실의 정원은 일시 수용능력 인원으로 한다.

③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료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정원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6조(교육환경정화등) ①(생 략)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학원과 같은 건물.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제외한다.

가. 건물의 연면적이 3,300 제곱미터 이상일것.

나. 학원으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가 되는 동일층 또는 6 미터 이내가 되는 직상층 및 직하층이 아닐것.

다. 건물의 구조가 강습소와 출입구를 달리할 수 있을것.

2 . 학원이 위치한 건물로부터 수평거리 6 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물로서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③ - ④(생 략)

제8조(학원의 설립) ① - ②(생 략)

③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시설기준 및 지역별 교습 수요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등록의 수리 또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교습 수요의 기준에 관하여는 동일계 학원의 분포, 예상 이용자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생 략)

제13조(과외교습) ① - ④(생 략)

⑤과외교습의 부제교습 횟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⑥시·도는 과외교습소의 분포 및 예상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지역별 교습수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강사) ①학원에는 강사를, 독서실에는 생활지도사를 둔다.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사(한문·서예·국악·꽃꽂이·인형·꽃가예·한복 및 구술비즈 교습과목의 강사를 제외한다.) 및 생활지도사의 자격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생략)

교 육 부

사회 01540-253 720-3403 1991. 6.18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감사원 이어 01540 - 919('91.5.29)의 관련입니다.

2. 감사원에서 '91.4.8부터 동년 4.18까지 우리부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학원설립 등록수리 또는 인가시 "거리제한" 규정에 대한 처분 요구사항이 있어 이를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사본 1부. 끝.

서기원	계장	과장	국장	교육감

교 육 부 장

관리번호

사회국제교육국장전결

수신처 : 다 4-13, 15-18.

선결			결재(공람)	
접수일시	1991. 6. 21	문호	180	
처리과	사회체육과			

통 보 사 항					
번호	14	소 관 청 (중앙행정기관)	교육부	관계기관	교육브 브부

제 목 : 학원 설립 · 은영업루 지드감륵 부적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설강슴소의 건전한 발전을 드므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은영에관한법줄을 제정.운영함에 있어,

같은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시설기준 및 지역별 교슴수요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등록의 수리 드는 인가를 하드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별 교슴수요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은영하드록 지도 감독하여야 함에드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및 전라북드교육청을 제외한 광주직할시 등 11개 시.드 교육청에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한 지역별 교슴수요의 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즈레르 규정하지 아니하고 동일 교슴과정의 학원간의 설립인가거리를 두어 새르은 학원의 설립을 제한하여 기즌학원만 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사실이 있으므로 자역별 교슴수요 기준을 합리적으르 마련하여 학원의 자율경쟁을

특한 시설개선과 우수강사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학원설립업무의 지도.감독에 적정을 기할 것이 요망되는 사실이 있음.

주요내용에 대한 시·도별 비교표

o 학원설립시 동일과정 학원과의 거리제한

전국적으로 '91, '92년도중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동일 건물의 동일 교습과정만을 제한하고 있음. (충남은 추진중임)

o 감의실을 필요로하는 학원의 강의실 규모

(단위 : ㎡)

학원별 / 시도별	입 시	검정고시	성인고시	외국어	독서실	기타학원	비고
충 북	시지역: 330 이상 시이외지역 : 198 이상	시지역: 330 이상 시이외지역 : 198 이상	198 이상	198 이상	165 이상	99 이상	
서 울	990	660	330	330	132	99	
부 산	660	660	198	198	132	66(속셈 :99)	
대 구	330	165	165	198	198	속셈 : 82.5	
광 주	330	198	198	198	198	99 (속셈 : 82.5)	
대 전	330	165	165	165	99	99	
인 천	660	330	198	198	132	99	
경 기	20만이상시 : 660 20만미만시 : 528 기타 : 330	시지역 : 495 기타 : 264	330	198	99	시지역: 99 기타:60	

학원별 / 시도별	입 시	검정고시	성인고시	외국어	독서실	기타학원	비고
강 원	종합 : 165 단과 : 99	99	99	99	33	33	
충 남	33	33	33	33	33	33	
전 북	165	99	66	99	99	66	
전 남	종합 : 330 단과 : 198	198	198	198	66	66	
경 북	종합 시: 330 기타: 165 단과 시: 198 기타: 132	시지역 : 198 기타 : 132	시지역 : 198 기타 : 132	시지역 : 198 기타 : 132	시지역 : 132 기타 : 99	시지역 : 99 기타 : 66	
경 남	종합 시: 660 기타: 330 단과 시: 330 기타: 165	49.5	49.5	시: 165 기타: 99	132	49.6	

* 최소면적 기준임.

o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하는 학원의 실습실 규모

계열별 시도별	기 술	예 능	가 정	사 무	비고
충 북	132㎡ 이상 (정보처리) 99㎡ 이상 (항공,컴퓨터) 66㎡ 이상 (기타 교습과정)	99㎡ 이상 (음악) 66㎡ 이상 (기타교습과정)	66㎡ 아상	99㎡ 이상 (주산) 66㎡ 이상 (관광,타자)	
서 울	165㎡ (정보처리) 132㎡ (냉동,전자기기) 66㎡ (간호,비디오촬영,산업디자인,안경,조주,제과·제빵) 99㎡ (기타 교습과정)	99㎡	99㎡	99㎡	
부 산	132㎡ (광업,금속,알미늄샷시,토목·건축) 66㎡ (냉동외 8개 교습과정) 99㎡ (기타 교습과정)	66㎡ (서예바둑) 99㎡ (기타 교습과정)	99㎡	99㎡(관광) 66㎡ (주산타자)	
대 구	132㎡ (컴퓨터) 66㎡ (중장비정비외 14개 교습과정) 49.5㎡ (기타 교습과정)	115.5㎡(음악,미술) 66㎡ (영화연극) 49.5㎡ (무용,서예바둑)	66㎡(조리) 49.5㎡ (꽃기예)	66㎡ (주산관광) 49.5㎡ (타자)	
광 주	66㎡ (정보처리외 10개 교습과정) 99㎡ (기타 교습과정)	99㎡	99㎡	99㎡ (주산타자) 66㎡(관광)	
대 전	99㎡ (컴퓨터) 49.5㎡(냉동,환경관리,열관리) 66㎡ (기타 교습과정)	99㎡ (음악미술) 66㎡ (기타교습과정)	66㎡	99㎡(주산) 66㎡ (관광타자)	
경 기	132㎡ (전자기기,정보처리) 66㎡ (산업디자인외 5개 교습과정) 99㎡ (기타 교습과정)	99㎡ (시지역) 66㎡ (읍, 면지역)	99㎡ (시) 66㎡ (읍, 면)	99㎡ (시) 66㎡ (읍, 면)	
충 남	66㎡ (간호외 19과정) 49.5㎡(냉동외 17개 교습과정)	66㎡ (무용영화,연극) 49.5㎡ (기타)	66㎡(기타) 49.5㎡ (꽃기예)	66㎡ (관광주산) 49.5㎡ (타자)	
전 북	66㎡ (간호조무사외 16개 교습과정) 49.5㎡(냉동외 18개 교습과정)	66㎡ (영화연극) 49.5㎡ (기타)	66㎡(조리) 49.5㎡ (꽃기예)	66㎡(관광,주산) 49.5㎡ (타자)	

* 최소면적임.

o 강의실 칸막이 시설

충 북	16.5㎡ 이상
대 구	. 입시, 검정고시, 성인고시학원 : 33㎡ 이상 . 속셈학원 : 16.5㎡ 이상
대 전	33㎡ 이상
전 북	16.5㎡ 이상

o 교육환경 저해업소 설치허가 장소의 범위 (학원건물과 6M 이내 건물인 경우)

충 북	. 건물의 연면적이 3300㎡ 이상이고 출입구가 10M 이상일 것 . 학원으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가 되는 동일층 또는 6M 이내가 되는 직상층 및 직하층이 아닐 것 . 영업행위가 보이지 않고 소음이 들리지 않을 것
부 산	. 출입구 거리가 20M 이상이고 경계벽에 창문이 없으며 출입구가 반대 또는 측면 방향일 것
대 구	. 출입구가 수평거리 20M 이상이고 경계벽에 창문이 없으며 출입구가 반대 또는 측면일 것 . 수평거리 6M 이내가 되는 동일층과 그 직상층 및 직하층이 아닐 것
대 전	. 학원이 6M 이상 떨어져 있고 출입구가 20M 이상되며 내부행위가 보이지 않고 소음이 들리지 않을 것
광 주	. 수평거리 6M 이내의 건물은 모두 허가 금지
경 기	. 학원과의 거리가 6M 이상이고 출입구가 30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충 남 경 남 경 북	. 건물의 연면적이 3300㎡ 이상이고, 학원으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가 되는 동일층 또는 직상·하층이 아닐 것
전 북	. 건물의 연면적이 3300㎡ 이상이고, 수평거리 6M 이내가 되는 동일층 또는 그 직상층 및 직하층이 아니며 영업행위가 보이거나 소음이 들리지 않을것
전 남	. 연면적이 3300㎡ 이상으로 주 통행로가 다르고 영업행위가 보이지 않으며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이나 건물

◎충청북도교육청공고제1992-118호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2년 10월 2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행규정상 불합리하고 미비한점을 개선·보완하고, 시설·설비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리제한 폐지

○ 학원설립시 기존 동일과정 학원과의 거리제한(시지역 200m, 읍지역 100m이상)을 폐지하여 학원의 자율경쟁을 통한 시설·설비개선 및 우수강사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회의 변화 및 기술수준의 향상에 따라 교습과정을 신설 또는 변경함.

○ 신설교습과정 : 조주(칵테일), 제과·제빵, 안경

○ 변경교습과정

현 행	변 경	비 고
냉동, 열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냉동(열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포함)	통 합
양재, 양복, 한복	패션디자인	과정명변경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처리	〃
디자인	산업디자인	〃

다. 시설·설비기준 강화

○ 입시, 검정고시 학원의 강의실 연면적을 시지역을 330㎡이상 1,980㎡ 이하로, 시이외 지역은 132㎡이상 1,980㎡이하로 구분 조정하고, 성인 고시 학원은 66㎡이상에서 198㎡이상 1,320㎡이하로 함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 실습실 면적을 49.5㎡ 이상에서 66㎡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단, 항공 99㎡이상, 정보처리 132㎡이상임.)

○ 냉동, 항공, 패션디자인, 정보처리, 보석감정, 산업디자인 교습과정의 반당 설비 기준을 실질적인 실습을 하여 교육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규정함.

라. 교육환경 정화지역 범위 조정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학원이 위치한 건물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에 위치한 건물은 모두 학원과 인접한 장소로 정함. 다만, 연면적이 3,300㎡이상인 건물로서 환경저해업소의 출입구가 10m이상 떨어져 있고, 수평거리 10m이내가 되는 동일층 또는 6m이내가 되는 직상층 및 직하층이 아니며, 영업행위 및 소음이 들리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함.

마. 설립자의 요건 및 설립자 변경시의 단서 조항 중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설립자가 타시·도로 전출하는 경우"를 삭제함.

바. 부칙중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조항 신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록된 학원도 위치변경 및 정원변경에 따른 원칙변경의 경우에는 개정된 조례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함.

3.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 교육감(참조 : 사회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66-772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별첨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3. 3. 20.)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목 차

1. 심사경과.....77

2. 제안설명의 요지.....77

3. 질의 및 답변요지.....78

4. 토론요지.....78

5. 심사보고 요지.....78

6. 심사결과.....79

7. 소수 의견요지.....79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3년 3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 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ㅇ 제출일자 : 1993년 3월 10일
- ㅇ 회부일자 : 1993년 3월 19일

다. 상정일자 :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 ㅇ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93. 3. 20.) 심의·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현행조례의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학원의 시설·설비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사회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ㅇ 학원시설은 동일건물 동일층 사용을 원칙으로하되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개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안 제3조 제4항)
- ㅇ 학원 주위의 교육환경 정화지역 범위 강화(안 제6조)
- ㅇ 학원 설립시 적용되던 동일교습 과정 학원과의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동일 교습과정의 동일건물내 설립금지 조항으로 대체(안 제7조 제1항)
- ㅇ 학원 설립요건중 적정시설 규모를 강화(안 제7조 제2항)
- ㅇ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안 부칙 제3조)
- ㅇ 일부교습과정 신설 또는 변경과 교습과정별 반당 시설·설비기준의 강화(안 별표1, 별표2)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 의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위원장 김 응 복	○ 조례안 부칙 2조에 의하면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사회교육계장 안 용 균	○ 조례가 공포되기전이므로 종전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거리제한규정이 있으므로 많은 신청이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위원 홍 신 희	○ 조례안 부칙 3조에 의거 기존의 학원은 새규정에 의한 강화된 시설기준 적용을 배제하게 되고 또한 설립자 변경시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게 되어 지나치게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	사회교육계장 안 용 균	○ 학원의 이전 또는 정원 변경에 따를 경우는 새로운 시설 기준을 적용하여야하며, 다만 입법예고시 설립자 변경에 대하여 그 적용이 예고가 않되었고, 학원의 시설에 대한 인가·등록이므로, 설립자 변경시까지도 시설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위원 김 광 수	○ 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독서실 등의 경우 개정 시설기준이 40평인데, 30평 규모의 건물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 2개 층이상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간사 박 병 해	○ 독서실에서는 생활지도사가 있어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데 일반 학원에서는 누가 생활지도를 하는가?	사회교육 체육과장 정 철 진	○ 원장과 강사, 직원 등이 하고 있음.

4. 토론요지

" 해 당 없 음"

5. 심사보고요지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조문별로 축조심의 한바,

가. 학원 주위의 교육환경 정화구역을 당초 6m에서 10m로 강화하여 교육환경 저해업소로부터 학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한 것은 학생 생활지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 학원 설립시 적용하던 거리규제를 폐지하고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문민시대에 맞게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자유경쟁에 의한 학원 교육 여건을 개선, 시설의 현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다. 독서실 생활지도사를 남·여별로 구분 배치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생활지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라. 다만, 일반 학원의 생활지도 강화를 위하여 일반계열 학원장들이 새로운 의식전환과 지속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강력한 행정지시를 할 것을 요구하였음.

마. 전체적으로는 각조문의 불합리하고 미비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였는 바, 앞으로의 사회교육에 내실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第2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93. 3. 19.-3. 20.)

豫 算 決 算 小 委 員 會

목 차

1.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3

2.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7

※ 부 록

가)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23

나)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33

※ 별 책 부 록

o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서안

o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 1 호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3년 3월 19일 (금요일) 14시 05분

의사일정(제2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경과보고
2. 위원장, 간사 선임

부의된 안건

1. 경과보고
2. 위원장, 간사 선임

(14시05분 개의)

1. 경과보고

● 의안담당관 김용환

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사회는 최연장 교육위원이신 김사수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4시 07분)

2. 위원장, 간사 선임

● 임시위원장 김사수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는 교육위원회회의 규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1인씩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권혁풍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을 추천하겠습니다.

개원이후 계속해서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아 수고해 주신 김사수위원님께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살려 이번에도 위원장직을 맡아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사수위원님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사수

위원장에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이상일 위원

제 생각도 권혁풍위원님과 같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사수

저를 위원장으로 또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모두 찬성하시는 겁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김사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습니다.

중요한 책임을 맡겨 주셨는데 소임을 잘 수행할지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사수

다음은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수 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장직은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김사수위원장님을 선임하였습니다만 간사는 위원 모두가 경험을 쌓는다는 의미에서 한번씩은 맡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사는 이재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사수

예, 이재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에 이재희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이재희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시지요.

● 간사 이재희

저를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력하나마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사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예산을 심사할 때 최우선적으로 일선 교단을 지원한다는 생각과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인다는 생각을 갖고 심사해 주셔서 정말 새정부가 내걸고 있는 신한국 창조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는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4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수 : 5명

위원장 김사수, 간사 이재희, 위원 이상일, 이근수, 권혁풍.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 2 호

예산 · 결산소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3년 3월 20일 (토요일) 10시 00분

의 사 일 정(제2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
2. 과별, 교육청별 심사
3.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
4.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
2. 과별, 교육청별 심사
3.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
4.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10시 00분 개의)	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	설명

● 위원장 김사수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미리 검토해 본 결과 주로 목적교부금으로 목적사업에 계상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투자액이 전체예산의 95%이상 되는 바, 문제점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시기가 적절하여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실무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토요일이고, 추경내용도 간단하므로 늦어도 13시까지는 심사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우선 행정과장님께서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상찬

지금부터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의거 설명)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재산 매각수입 1,880만원은 이미 매각된 내용인지 앞으로 매각이 될 것도 포함된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 행정과장 이상찬

기매각된 것도 있고 아직 매각은 안되었으나 매각될 것으로 확정적인 것입니다.

● 권혁풍 위원

음성 무극국교 잡종 재산은 아직 매각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산에 계상한 56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한 금액입니까?

● 관재계장 신건환

인근지 매매 실례가격에 의거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 간사 이재희

급식기구 구입비 부족분 5,456만원

은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급식학교에 일률적으로 추가 투자하는 것인가요?

● 행정과장 이상찬

급식학교별 여건에 따라 추가투자하는 것으로 총 26개교가 됩니다.

● 간사 이재희

얼마전 신문에 보니까, 급식후원을 위한 찬조금은 허용이 된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어떤 건지요?

● 관리국장 김근학

급식 후원회에서 급식시설하는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은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업무용 교통비 지원은 어떤 사항인지요?

● 행정과장 이상찬

학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을 폐차한 경우 차량구입을 해주지 않고 대신 업무용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권혁풍 위원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에 보면 학교교육비에 최우선 집중 투자한다고 했는데, 몇 %나 투자된 것인지요?

그리고 양호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이 25명 밖에 안되는데 760만 1천원이나 소요됩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학교 교육비에 최우선 집중투자한 것은 98%입니다.

그리고 양호교사 임용예정 인원은 25명이지만 그 선발을 위한 각종 관리비용 등은 어느 임용고시나 같습니다.

또한 선발인원은 25명이지만 응시인원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권혁풍 위원

영동의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298만 4천원 계상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이것은 안전공제회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지요?

● 행정과장 이상찬

대전지방법원에 계류중인 부용국교 체육장 시설(우주 뱅뱅이) 사고건 소송업무 수행경비입니다.

그리고 이 건은 안전공제회가 생기기 이전의 사건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학생 도서구입비는 국민학교의 경우 급당 3만원, 중·고의 경우 급당 5만원으로, 학급당 10권정도가 될텐데 적은 액수가 아닙니까?

● 관리국장 김근학

이미 계상된 학교비에 도서구입비가 포함된 것이며, 이번에 추가로 도서구입비를 계상한 목적은 책의 해를 맞아 학생들에게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 주고, 독서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이상찬

적은 액수이지만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더 많은 도서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목적을 달아 지원하는 것이니까 우량 도서를 필히 구입하여 독서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권혁풍 위원

무극중학교 생활관 및 도서실 시설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위치에 짓는 겁니까?

● 관재계장 신건환

군에서 도서관을 짓는데 거기에 붙여서 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무극중 강당겸 체육관 시설로 5억 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꼭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무극국교 잡종재산이 매각되어야만 강당겸 체육관 시설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사수

청주기계공고는 현재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내부시설 투자비로 15억씩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청주기계공고 이전사업은 공고매각 추진이 어려워 늦어지고 있는 바, 이전이 되어야만 내부시설에 투자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전 포기등 다른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시의회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체육고 건축에 임대된 시유지 3,500평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한답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현재 이전계획은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이전부지 매입은 27,900평을 매입하여 완료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시설비에 보면 보통교실 125실을 확보하게 되는데 내년도 2부제 수업은 없게 됩니까?

올해는 2부제 수업교가 없는지요?

● 관리국장 김근학

예견치 못한 다른 상황변동이 없는 한 내년도 2부제 수업은 해소됩니다.

청주시내 2부제 수업은 해소되었다가 가경국민학교 한군데가 다시 2부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시 55분)

2. 추경예산에 대한 과별 심사

● 위원장 김사수

예, 그러면 전체적인 질의는 마치고 과별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과별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 간사 이재희

교육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면서 의정활동비로 월 30만원씩 1인당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혹시 도의회에서 이 사항을 갖고 문제제기를 할 경우 그 필요성 같은 것을 충분히 답변 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의사국장 이근수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 위원장 김사수

카드리더기는 무엇인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O.M.R카드를 읽어 자동으로 채점을 하는 기계로 고입관리, 각종 임용시험 답안지 채점 등에 사용하는 기계로 현재 1대가 있으나 만약 고장시를 대비하고 업무의 신속을 기하고자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각종 사무자동화 기기라든가 행정장비는 값도 고가이고 요즘은 구입물량도 많은데 구입된 행정장비가 사장되는 일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각과에 행정장비를 거의 하루종일 운행하여도 별사이 없이 바쁘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행정전산망용 다기능 사무기기란 어떤 것인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전산실의 주컴퓨터내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를 각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 권혁풍 위원

카드리더기는 모든 시험채점시 이용됩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예.

● 위원장 김사수

행정관리담당관실 사항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중등장학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등장학과》

● 행정과장 이상찬

충주에서 발생한 학생 교통사고 현장에 중등장학과에서 모두 출장가서 답변할 분이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혁풍 위원

연구 시범학교 운영비 300만원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이는 당초 도지정이었으나 교육부 지정 연구시범 학교로 변경된 것이며 300만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중등장학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 위원장 김사수

교원연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농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 및 감축으로 발생되는 과원교사들에게 농

업기계, 식품가공, 조경, 전자계산, 기술 등 부전공 자격연수를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케 한 후 그들을 적소에 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 간사 이재희

과학기자재 확충비로 각 교육청마다 계상한 3,000만원은 모든 교육청에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그리고 자료 확충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인지요?

● 행정과장 이상찬

교육부에서 특별교부된 사항으로 집행은 각 교육청의 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기자재를 구입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사수

대전 EXPO와 관련된 학술세미나는 어떤 사항인지요?

● 행정과장 이상찬

과학의 해와 대전 EXPO를 맞이하여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창조적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교사에게 과학교육자로서의 자긍심 및 사명감 고취를 위하여 행사추진비로 629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학술세미나는 과학교육원에서 1회, 충주에서 1회 등 총 2회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과학고등학교 기숙사 확충사업 내용은?

● 행정과장 이상찬

특수목적고인 과학고 재학생 전원을 학교 기숙사에 수용코자 하는 것으로 실당 4명씩 7실 28명 분이 부족하여 단재교육원 강의동 3층을 기숙사 시설로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과 소관사항 더 질의 없으시면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교육체육과 소관 질의하시지요

《사회교육체육과》

● 권혁풍 위원

충북체육고 학생들중 상급생에 의한 기압이나 구타 등으로 중간 탈락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중학교에서의 훈련은 강도가 약하였다가 고등학교로 오면서 훈련강도를 높이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여 중간 탈락하는 경우의 학생이 있습니다

다만 상급생에 의한 구타 등은 앞으로 인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이근수 위원

청소년체육이나,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국고보조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다소되고 있으나 미흡하여 자체적으로 더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심사하시죠.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 위원장 김사수

당직근무제도 개선은 당직보완 시설을 하는 것으로 시설후 시설보존이 잘 되어 그 효과를 최대한 높여야 될텐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일영

당직근무제도 개선전에는 교사와 기능직이 같이 당직근무하던 것을 개선후 기능직만 당직을 하고 있는 바, 근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지역은 당직보완 시설후 그 용역비를 지급하고, 기타 지역은 도난방지 시설을 설치 하는 것입니다.

시지역 같은 경우는 당직보완 시설을 해놓으면 도둑이 침입했을 때 24시간 차량대기하는 용역회사에 경보가 접수되어 3분정도면 출동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출동이 늦어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2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면으로 보며는 얼마전 중앙고등학교에 도둑이 4명 침입하였었는데, 경보장치 작동으로 용역회사의 출동으로 당직자와 같이 도둑을 검거하여 경찰에 인계한 실례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오랜 시간 수고들 하셨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15분간 정회후 행정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행정과》

● 위원장 김사수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심사하시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재희

도서구입비 지원비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대개 도서는 정가와 실금액이 차이가 많은 경우가 종종 있고, 특히 아동도서의 경우는 구입시 40%까지 할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 바, 도서구입에 따른 부조리 요인 등을 없애기 위하여 도서구입시 할인하여 구입토록 그 어떤 기준시달 같은 것을 할 수 없을까요?

● 행정과장 이상찬

도서구입은 학교장의 의지여하에 따라 구입도서량이 가감될 수 있는 사항이며, 얼마씩 할인하여 구입하라는 기준을 만들어 시달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권혁풍 위원

컴퓨터 1대 가격이 500만원인 바 어떤 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32비트짜리 최신형 486으로 용량이 큰것으로 예산 작업도 모두 할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또한 컴퓨터 가격은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 권혁풍 위원

충북예술고 육성회 인건비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학교에서 육성회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북예술고외 청풍고, 단산고가 해당됩니다.

● 위원장 김사수

행정과 소관 더 질의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 간사 이재희

청주기계공고 매각을 위한 감정수수료는 얼마나 되며 몇회 실시했습니까?

● 관재계장 신건환

1회 실시하였고, 1회 실시에 2,500만원 소요됩니다.

● 권혁풍 위원

기계공고 감정가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 관재계장 신건환

현재나와는 있으나 대외비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 간사 이재희

현재 감정가와 실제 매매가격과 차이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정헌동

거의 같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재무과도 내역이 간단합니다.

더 질의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면 시설과 소관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시설과》

● 위원장 김사수

노후교사 수선 1개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 시설과장 박성근

충북고등학교로 도색과 방수수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광혜원고 시설지원 4실은 어떤 내용입니까?

● 시설과장 박성근

3층으로 마무리 하여 다목적 교실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이월사업 지수조정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금액 산정을 한 것입니까?

● 시설과장 박성근

전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물가인상 및 임금인상분을 지수조정하는 것으

로 매년 인상된 비율에 의거 평균 10 %정도로 하였으며, 실제 조정시엔 다시 조사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권혁풍 위원

학교 휴게실을 새로지어 주는 대상 학교는 어떤 근거에 의거 결정하는지요?

● 시설과장 박성근

19학급이상 학교는 휴게실을 지어 주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학교로 광혜원고, 미원공고, 영동상고, 대성여상, 매괴여상 등 5개교가 있고 국민학교는 만승국, 중앙국민학교 등 2개교입니다.

● 간사 이재희

이중창 설치는 언제 끝납니까?

● 시설과장 박성근

이중창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 실수는 2,116이며, 이중 금년까지 580개를 설치 완료케 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치할 것이며, 소음공해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시설과 사항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 간사 이재희

학교의 자체방범 시설의 경우 시지역은 90만원, 기타 지역은 300만원인데, 야영장자체 방범시스템은 500만원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학교는 주요시설에만 설치하는 것이지만 야영장은 시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간사 이재희

지역교육청에 보유되는 과학자료는 과학관이 설립되면 이관이 됩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과학관이 지역교육청에 설립되면 과학관으로 자료가 이관되어야 될 것으로 보며, 이 사항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권혁풍 위원

통·폐합교 교육여건 개선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 행정과장 이상찬

1개교를 통·폐합 할 경우 인건비 등 3억이상 예산절감이 되며, 이중 10%를 통·폐합교에 운영비로 지원한다 해도 3,000만원입니다만 통·폐합되어 학생수가 다소 증가되어도 기존 시설등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운영비가 더 소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간사 이재희

통·폐합교 학생에 대한 통학버스 운영에 대하여 노선이 해당 안되는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지역 학생 학부모에 의한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대책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통학버스 지원차량 신청시 그 지역에서 학교에 통학하는 해당 학생외 중·고생까지도 통학토록 대형버스 신청을 중앙에 했었으나, 폐교 학생수에 의거 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통학버스 차량도색을 일제히 실시하는 것은 우리 도가 처음이며, 세계적으로 노란색은 주의표시색이라서 노란색으로 하고자 합니다.

모든 차량이 도색완료되며는 학생 안전수송에 더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간사 이재희

대제중의 경우 설립자가 시설투자를 전혀 않고 있어 노후된 건물때문에 민원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립자가 대제중을 매각하여 교육청 땅을 빌려 그 곳으로 학교를 이전하려고 교육청에 여러번 요청하였었으나 교육장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자측에서 시설에 투자를 계속 않을 경우 사학지원 차원에서 낡은 교사를 다시 지어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바랍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 그 실상을 파악하여 검토해 본후 대책을 세워 보겠으며, 재단에서 전액투자되도록 유도해 보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지요.

● 권혁풍 위원

감곡중학교 강당 철거에 대한 철거 후의 대책이 있는지요, 그쪽 주민들

의 여론에 의하면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여 주며는 주민들의 힘을 합하여 다시지어 보겠다고 합니다만.....

● 행정과장 이상찬

감곡중학교 강당을 철거하고자 철거 비용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볼 때 음성교육장의 나름대로의 사정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과 같이 충분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 권혁풍 위원

노후교실 개축 4실은 어느 학교며, 증수 28실은 어느 학교인지요?

● 행정과장 이상찬

노후교실 개축 4실은 삼성중학교이고, 증수 28실은 음성중외 2개교입니다.

● 권혁풍 위원

개축교실 철거 10실과 자체방범 시설 4개교는 어디인가요?

● 행정과장 이상찬

부윤국교외 3개교입니다.

● 이근수 위원

철거 대상교실을 재활용할 경우 관리비를 지원해 줍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철거대상 건물을 대장에서는 제외하고 재활용코자 신청할 경우 재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되는 건물은 대장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전액 지원되지 않고 다만 소규모적인 관리비는 교육장 재량에 의거 지원이 가능한 형편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과별 및 지역교육청별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그리고 행정과장님 이하 모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끼리 예산의 삭감 여부와 시정 및 권장 사항 등 협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하고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 00분)

(13시 05분)

3. 1993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

(안) 의결

● 위원장 김사수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을 간사께서 발표하신 후 위원님들의 동의·찬성을 얻어 의결하고자 합니다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 간사 이재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은 대개가 국고보조금으로 목적사업에 투자한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어 수정은 않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잘된 사항입니다.

첫째, 금회 추경예산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여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둘째, 총재원의 98%를 직접 교육에 투자하여 교육현장에 활력소를 제공한 점입니다.

셋째, 또한 책의 해를 맞아 학생들에게 독서습관을 길러주고자 각급 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한 점은 시의 적절한 예산편성이며, 이와 같은 지원은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상 세가지 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심사보고서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사항입니다.

첫째, 중등장학과의 연구·시범학교운영비가 교당 300만원은 너무 적어 소기의 목표달성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염려되고,

둘째, '93. 과학교육의 해 및 엑스포 관계 학술세미나 개최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계획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니 집행단계에서 세심하게 재고하여 소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권혁풍 위원

저희 모든 위원들이 참여하여 결정한 내용이므로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

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사수

간사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권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잘된 사항과 시정사항을 포함하여,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 15분)

(13시 30분)

4.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작성

● 위원장 김사수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재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하였기 기재생략)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같이 동참하셔서 작성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내용중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나 수정할 사항이 없으시므로 무수정 원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

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때 다시 뵙기로 하고 건강하실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4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수 : 5명

위원장 김사수, 간사 이재회, 위원 이상일, 이근수, 권혁풍.

● 출석공무원 : 11명

관리국장 김근학, 의사국장 이근수,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헌동, 시설과장 박성근, 관재계장 신건환, 세입계장 임종복, 시설기획계장 연회지.

o 1993년도 충정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별첨1.

o 1993년도 충정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별첨 2.

(별첨 1)

1993年度

忠淸北道敎育費特別會計

第1回 追加更正 豫算(案)槪要

忠淸北道敎育廳

Ⅰ. 豫算編成의 基本方向

1. 地方教育財政 運營의 基本方向

- o 歲入財源의 擴充
- o 歲出豫算의 節減
- o 教育費의 投資效率性 確保
- o 自治財政 確立
- o 健全財政의 堅持

2. 追加更正豫算編成의 主要原因

- o 交付金 增額
- o 補助金 및 財産收入 增額

3. 主要投資 內譯

- o 學校直接教育費에 最優先 集中投資
- o 教育環境의 改善
- o 私學財政 支援擴大
- o 高等學校 體制改革

Ⅱ. '93年度 豫算規模

1. 總規模

(單位:百萬원)

豫算額	既定豫算額	增△減	備考
432,845	415,293	17,552	

2. 歲入總括

(單位:百萬원)

區分	豫算額	既定豫算額	增△減	構成比率(%)
國家負擔收入	382,660	364,596	18,064	88.40
地方自治團體一般會計負擔收入	530	560	△ 30	0.12
教育費特別會計負擔收入	49,546	50,028	△482	11.45
住民負擔收入	109	109	0	0.03
合計	432,845	415,293	17,552	100

3. 歲出總括

(單位:百萬원)

區分		豫算額	既定豫算額	增△減	構成比率(%)
人件費		303,045	303,045	0	70.01
機關運營費	官署當經費	1,413	1,413	0	0.33
	學校機關運營費	13,584	13,547	37	3.14
	其他機關運營費	2,094	2,037	57	0.48
	計	17,091	16,997	94	3.95
教育課程運營費		14,819	13,537	1,282	3.42
經常教育事業費		31,172	32,954	△1,782	7.20
投資教育事業費		59,743	43,037	16,706	13.80
其他教育經費		20	20	0	0.01
豫備費		6,955	5,703	1,252	1.61
合計		432,845	415,293	17,552	100

Ⅲ. 歲入·歲出 主要性質別 內譯

1. 歲入

o 國家負擔 收入

(單位:百萬원)

區 分	豫算額	既定豫算額	增△減	主要說明事項
合 計	382,660	364,596	18,064	
地方教育財政交付金	304,478	285,472	19,006	o 보통교부금 18,651 o 특별교부금 355 · 과학자료실 기자재확충비 330 · 재해학생지원 25
地方教育讓與金	76,271	75,505	766	o 지방교육양여금 766
國庫補助金	1,911	3,619	△1,708	o 직업교육확충사업 1,733 o 정책종목육성지원외 4건 51 o 농어가자녀학자금 지원 △3,492

o 地方自治團體一般會計 負擔收入

(單位:百萬원)

區 分	豫算額	既定豫算額	增△減	主要說明事項
一般會計負擔收入	530	560	△ 30	o 새마을 유아원운영비 지원금 △30

o 教育費特別會計 負擔收入

(單位:百萬원)

區 分	豫算額	旣定豫算額	增△減	主要說明事項
合 計	49,546	50,028	△482	
財産收入	2,036	148	1,888	o 재산임대수입 8 o 재산매각수입 1,880 · 광혜원고 도로편입 142 · 청주잠사국 잡종재산 679 · 충주미륵분교외 2건 202 · 제천중.동중 도로편입 186 · 청원공북분교 절도편입 13 · 옥천중 잡종재산 78 · 음성 무극국 잡종재산 560 · 단양가곡국 실습지 20
使用料및手數料	326	320	6	o 양호교사 검정수수료 6
雜收入	1,832	4,208	△2,376	o '92 명시이월 불용액감액 - 청주기계공고토지매입 △2,376

2. 歲　出

○ 行政費 및 事業費

(單位: 百萬원)

區　分		豫算額	既定豫算額	增△減	主要說明事項
合　計		13,037	15,973	△2,935	
教育委員會	官署當經費	38	38	0	○ 교육위원의정활동비 29,600천원 ○ 부의장실및증원분비품, 방송시설 13,942천원
	其他機關運營費	273	229	44	
本廳	計	9,504	12,819	△3,315	○ 농어가자녀학자금지원 △3,492,353천원 ○ 재해학생공납금 25,034천원 ○ 양호교사임용시험(25명 선발예정) 7,605천원 ○ 농업계교사 부전공자격연수 6,900천원 ○ 기타사업 137,761천원
	官署當經費	622	622	0	
	其他機關運營費	818	805	13	
	經常教育事業費	4,609	7,944	△3,335	
	投資教育事業費	3,455	3,448	7	
教育廳	計	3,202	2,867	335	○ 과학자료실 기자재확충 332,500천원 ○ 소송업무수행 2,984천원
	官署當經費	753	753	0	
	其他機關運營費	1,003	1,003	0	
	經常教育事業費	1,405	1,070	335	
	投資教育事業費	41	41	0	
諸支出經費		20	20	0	

o 學校運營費

(單位:百萬원)

區 分	豫算額	既定豫算額	增△減	主要說明事項
合 計	28,403	27,084	1,319	
幼 稚 園	1,622	1,609	13	o 학생도서구입 238,630전원
國民學校	16,277	15,554	723	(급당:국30전원,중고50전원) o 통학버스도색(39대)
中 學 校	4,115	3,870	245	22,050전원
一般系高	2,043	1,968	75	o 통폐합교교육여건개선(12교) 60,000전원
實業系高	3,218	2,992	226	o 급식기구구입부족분
特殊學校	208	203	5	(2교육청) 54,560전원
其他學校	920	888	32	o 체육고 중점종목육성지원 (보조금) 10,102전원 o 공고생 장학금 139,380전원 o 공고공동실습소운영 25,095전원 o 학교운영비 추가분 768,797전원

o 私學支援

(單位:百萬원)

區 分	豫算額	既定豫算額	增△減	主要說明事項
合 計	25,157	23,939	1,218	
中學校	14,013	13,796	217	o 교육여건개선시설지원 930,400천원
高等學校	11,025	10,143	882	(교무실 1실, 교실12실,
特殊學校	119	0	119	휴게실3실, 화장실1.9실, 이중창46실, 교실중수26실)
				o 컴퓨터구입지원(상고3교, 인고2교) 135,400천원
				o 도서구입지원(급당50천원) 39,500천원
				o 실고내부시설비 50,400천원
				o 기타 사학지원비 62,600천원

o 施 設 費

(單位:百萬원)

區 分	豫算額	既定豫算額	增 △ 減	主要說明事項
合 計	56,247	39,548	16,699	
國民學校	28,074	19,169	8,905	o 직업교육확충 4,156,652전원 (실습실12실, 보통교실 5실, 기자재확충 5교)
中 學 校	14,408	10,784	3,624	o 교육여건개선 11,798,450전원 (보통교실 125.5실, 교무실 10실, 휴게실6실, 화장실 30.8동, 이중창 568.5실, 부속시설 21동, 계단실4실, 교실증수 553실)
高等學校	10,644	6,872	3,772	
特殊學校	748	671	77	
教 育 廳	368	119	249	
本 廳	2,005	1,933	72	o 기계공고이전부지매입 △2,341,100전원
				o 강당및생활관 670,000전원
				o 토지매입 673,620전원 (강서국,사직국,옥천교육청)
				o 급식시설추가분 373,474전원 (7교육정, 26교)
				o 기타시설사업 1,368,006전원

(별첨 2)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1993. 3. 20.)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예 산 · 결 산 소 위 원 회

목 차

1. 심사경과.....35

2. 제안설명의 요지.....35

3. 질의 및 답변요지.....35

4. 토론요지.....38

5. 심사보고요지.....38

6. 수정안의 요지.....40

7. 심사결과.....40

8. 소수의견 요지.....40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ㅇ 제출일자 : 1993년 3월 10일
- ㅇ 회부일자 : 1993년 3월 19일

다. 상정일자 : 제2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 ㅇ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93. 3. 20.) 심의·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국가부담수입 180억 6,360만 1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감 2,973만 6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감 4억 8,184만 8천원 등 총 175억 5,201만 7천원의 추가재원으로 교육위원회 4,354만 2천원, 본청 19억 4,477만 9천원, 지역교육청 143억 1,146만 8천원, 예비비 12억 5,222만 8천원의 규모로 예산을 추가하여 총 4,328억 4,491만 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 의 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위원 이 근 수	o 철거 대상교실을 재활용 할 경우 관리비 지원이 되는지?	행정과장 이 상 찬	o 철거 대상건물을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건물 대장에서는 제외되므로 관리비가 전액 지원되지는 않고 다만 소규모적인 관리비는 교육장 재량에 의거 지원이 가능.
간사 이 재 희	o 대제중의 경우 건물이 노후되어 민원의 소지가 있음. 설립자측에서는 시설투자를 전혀 않고 있는 바, 사학지원 차원에서 노후 교사를 다시 지어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음.	관리국장 김 근 학	o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 현황을 파악하여 검토해 본후 대책을 강구해 보겠으며, 설립자 측에도 투자를 하도록 적극 권장해 보겠음.

4. 토론요지 : 해당없음.

5. 심사보고요지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 편성 기준의 적정성,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효과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 예산편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음.

o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개요

o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4,328억 4,491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4,152억 9,290만 1천원보다 175억 5,201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당초예산대비 4.2% 증가)

o 세입에 있어서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잉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은 180억 6,360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등 자체수입은 4억 8,184만 8천원이나 감액되었음.
- 금회 추경에 국고지원금 17억 819만 6천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직업교육 확충사업비 비진학 청소년 위탁교육비 등이 17억 8,415만 7천원 증액된 반면 농어가 자녀 학자금 지원액 34억 9,235만 3천원이 지원체계 변경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자체수입이 감액된 사유는 재산수입과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18억 9,41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청주기계공고 토지매입을 위한 불용액 이월금 23억 7,600만원을 '92년도 사업 완료로 잡수입에서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임.

- 그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을 새마을 유아원의 폐원 및 운영비 조정으로 2,973만 6천원 감액하였음.

o 세출에 있어서는

- 시설비가 166억 9,910만 2천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 학교운영비 13억 1,861만 4천원
- 사학지원비 12억 1,830만원
- 행정비 및 사업비 감액 29억 3,622만 7천원
- 예비비 12억 5,22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음.

o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 학생들에게 독서하는 여건 조성을 위한 도서구입비 2억 7,813만원
- 노후교실 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비 127억 2,885만원
- 지역교육청 자료실 기자재 확충비 3억 3,250만원
- 산업·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확충비 43억 4,643만원
- 사립고 컴퓨터 구입 지원비 1억 3,540만원
- 비진학 청소년 기술계 학원 위탁교육비 2,100만원 등임

o 삭감내역 : 없음

o 종합평가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한 바, 금회 추경은 추경재원의 95%를 시설비로 집중투자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적절히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소모적인 경비를 억제하는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됨.

특히,

· 금회 추경예산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여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며,

· 총 재원의 98%를 직접교육에 투자하여 교육현장에 활력소를 제공한 점은 권장할 사항임.

· 또한 『'93. 책의 해』를 맞이하여, 각급 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독서하는 환경을 조성코자 한 것은 시의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이와 같은 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교육부지정 연구·시범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액이 너무 적어 소기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 '93 과학교육의 해 및 대전 EXPO와 관련하여 학술세미나 개최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단계에서 세심하게 재고하여 소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요지 : 없음